

월간  
**재정포럼**

2018. January\_Vol.259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01

**권두칼럼**

잃어버린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혁신의 DNA로 재무장해야 | 박형수

**현안분석**

노동시장에서의 격차와 개선방안에 관한 일 고찰 | 원종학

근로소득 비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 안종석

**공공정책포럼**

공공기관 채용비리 유형 및 대응방안 모색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2018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 최종 통과 외

## CONTENTS

### 권두칼럼

잃어버린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혁신의 DNA로 재무장해야

· 박형수 ..... 02

### 현안분석

노동시장에서의 격차와 개선방안에 관한 일 고찰 · 원중학 ..... 06

근로소득 비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 안종석 ..... 28

### 공공정책포럼

공공기관 채용비리 유형 및 대응방안 모색 ..... 61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2018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 최종 통과 외 ..... 69

### 조세·재정 정책 및 연구 동향

세미나 & 정책 및 연구 ..... 99

### 정책흐름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104

2018년 경제정책방향 ..... 120



# 잃어버린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혁신의 DNA로 재무장해야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당면한 경제 · 사회적 문제

향후 세계경제와 우리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황금기보다는 못하겠지만 1980년대 이후의 평균 성장률을 크게 하회하지 않는 수준의 불안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악화되는 소득분배 문제도 세계화 추세가 다소 후퇴한다고 하더라도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발전과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보다 긴 시계에서 보더라도 선진국과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저성장과 소득분배 악화라는 이중고가 갈수록 심화되고 재정악화 등으로 정책적 대응 여력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경제는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와 추격형 성장전략 덕택으로 가능했던 한강의 기적이 끝난 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이 여의치 않은 상태다. 이에 경제 시스템을 개조해, 점점 꺼져가는 성장엔진의 출력을 다시 높여야 한다.

먼저 경제 여러 분야에서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 과실을 보다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성장동력과 소득분배 개선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저성장, 소득분배 악화, 인구 위기로 누적된 여러 경제 · 사회 문제와 개인 · 가족의 삶의 질 저하 등 우리 앞에 놓인 융복합적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인구위기와 국가재정 문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우리에게 혁신의 DNA가 있다!

미클 스웨이트와 올드리지가 쓴 『제4의 혁명』이란 책을 보면 지금 지구촌의 정부들은 자신들이 처한 경제문제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혁

은 물론이고 정부 ‘자체’를 혁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나라들은 스웨덴이나 싱가포르를 롤 모델 삼아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부가 되기 위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새로운 국가의 탄생이야말로 경제적 선택을 제약하는 제도적 환경을 바꿈으로써 경제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경제사학자 김재호 교수의 책 『대체로 무해한 한국사』에 따르면 조선왕조 개창을 주도한 ‘신흥사대부’는 고려왕조 지배층인 ‘문벌귀족’과 경제적 기반이나 정치적·사상적 지향이 크게 달랐다. 이들은 경제적 변화를 중심으로 조선왕조가 518년이나 지속될 기틀을 닦았다. 과전법에 의한 대토지 소유 개혁, 귀족 타파 및 양천제(良賤制)로의 신분제 개편, 능력본위의 관리 선발 제도인 과거제 강화, 농본주의 및 3년마다의 호구조사 등이 바로 그것이다. 삼국이 통일된 7세기경, 200만 명이던 인구가 2배가 되는 데 600년 이상 걸렸는데, 조선은 1392년 555만명에서 1600년 1,172만명으로 건국 이후 불과 200여년 만에 인구가 2배 증가했다. 경지면적도 1392년 80만결에서 1432년 171만결로 40년 만에 2배로 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4대 사화와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경제·사회가 피해를 겪었지만 성리학(유교) 교조주의에 빠져서 1750년대 대분기(The Great Divergence)의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 급기야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는 자력에 의한 산업화와 근대화에 실패해 일제 식민지로 전락했다. 그러나 1876년에 개항한 후 86년이나 지난 1962년에야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했음에도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1980년대 초에는 높은 물가를 잡고 안정성장 기조로 경제체질을 변경시키는 데도 성공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0월에 발간된 부즈 앨런 해밀턴의 보고서 『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재도약』에서 한국경제의 문제에 대해 놀랄 만한 연구와 제안이 많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아 ‘행동은 없고 말만 무성(words without deeds)’했다고 비판했음에도 우리는 금융·기업·노동·정부의 4대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해내는 저력을 발휘했다.

최근에도 정부의 혁신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4~2016년)」과 노동·공공·교육·금융의 4대 개혁을 추진했다. 변양근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철학의 전환』을 통해 노동의 자유, 토지의 자유, 투자의 자유, 왕래의 자유라는 4가지 구조개혁을 ‘패키지 딜’로 추진하는 ‘숨페터식’ 성장정책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신정부도 경제정


.....  
**새로운 국가의  
 탄생이야말로  
 경제적 선택을 제약하는  
 제도적 환경을 바꿈으로써  
 경제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

.....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가시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만 있다면  
 혁신 성장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면서 수출주도 성장의 대안적인 성장모델로 소득주도 성장론에 이어 ‘혁신’ 성장론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었고, 민간 주도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시장과 소통할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켰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2012년, 2015년에 이어 미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한 우리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개혁 방향 제시를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통상환경 변화, 양극화·사회갈등 심화 등에 대응한 4대 전략과제가 그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 국가 거버넌스, 리더십과 혁신 성장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는 국가전략과 이를 뒷받침 할 분야별 정책을 만들 능력은 충분하고도 넘치지만, 이를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전략, 비전, 구체적인 정책, 실천방안을 만들 능력은 충분한데,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해낼 국가 거버넌스와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재편을 포함한 정치개혁, 관료제와 정부조직 재구조화를 포함한 정부개혁을 통해 정치인과 관료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고 협조와 균형을 이끌어내는 ‘협치’의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로써 성장동력과 분배개선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해 한국 경제를 희생시키고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잃어버린 역동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필자는 선조로부터 미래를 대비하고 필요한 혁신을 이뤄낼 DNA를 ‘이미’ 물려받은 우리가 이제 이념적 갈등과 논쟁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가시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만 있다면 혁신 성장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현안분석 |

- 노동시장에서의 격차와 개선방안에 관한 일 고찰  
원종학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근로소득 비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안종석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노동시장에서의 격차와 개선방안에 관한 일고찰

## I. 서론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weon@kipf.re.kr)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 후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양적 확장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질적 차이를 없애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기울이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질적 차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 취임 후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한 것을 들 수 있다.<sup>1)</sup>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장의 양적인 개선만이 아니라 질적인 개선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명시적인 정책 의지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작성하는 등 빠른 속도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7년 7월 이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sup>2)</sup>

이렇듯 노동시장에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정규직이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이며 비정규직은 여러 의미에서 ‘좋지 못한 일자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규직은 안정적 고용, 높은 임금, 충분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한다.

적지 않은 선행연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근로조건은 어

는 정도라는 형태의 비교분석이며, 정작 정규직 자체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다. 이에 본고는 정규직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정규직의 처우나 대우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정규직은 모든 개인이나 기업의 속성에 관계없이 모두 좋은 일자리인지 등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II. 정규직 근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는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 사전에 의하면 정규직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를 말한다.<sup>3)</sup> 그런데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사전적 정의대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근로자만을 정규직 근로자로 규정하게 될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나눌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일반 기업에서 정년까지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고용형태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고 이를 연장하는 형태를 띤다. 따라서 사전적 정의를 따른다면 우리나라에서 정규직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럼 고용계약은 차치하고라도 전일제로 일하면 정규직 근로자가 되는 것일까? 하루 8시간 근무를 전일제라고 한다면, 단기간 동안만 전일제로 일하는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포함되어야 하므로 노동시간만으로도 정규직인지 비정규직 인지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렇듯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것이 예상외로 쉽지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사전적 정의에 따라 분류하기가 어려우므로, 법률에서 양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주요 노동관련 법률에는 정규직에 대한 정의가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 명확한 법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률은 없으며, 단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sup>4)</sup> (이하 「기간제법」)에서 통상 비정규직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을 뿐이다.

「기간제법」 제1조에 “이 법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합

**본고는 정규직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정규직의 처우나 대우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정규직은 모든 개인이나 기업의 속성에 관계없이 모두 좋은 일자리인지 등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2/020000000AKR20170512060200001.HTML>(접속일자: 2017.10.30.)
- 2) 인천공항공사는 7월 14개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2,000여 명을 연말까지 정규직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직원 7,900여명도 연내 정규직화한다는 기본적인 계획은 변함이 없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d7555dce9d6a416-396f99e871ac35008>, 접속일자: 2017.10.30.)
- 3)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접속일자: 2017.10.30.)
- 4) <http://www.law.go.kr/lslnioP.do?lsiSeq=152050&efYd=20140919#0000>(접속일자: 2017.10.30.)

**법률에서는 명시적으로  
비정규직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는 명시적으로 비정규직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동법 제2조에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sup>5)</sup>를 말한다. 또한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가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차별적 처우의 예로서 임금, 상여금, 성과급 및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을 예시하고 있다(「기간제법」 제2조 제3항).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역시 정규직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sup>6)</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편하게 사용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엄밀히 정의하는 것은 의외로 쉽지 않으며, 법률적 개념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노동경제학계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 정형-비정형(standard vs non-standard), 전형-비전형(typical vs atypical), 정규-비정규(regular vs non-regular) 등 다양한 개념과 유형을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의, 범주, 성격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sup>7)</sup>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정규직-비정규직의 분류이기도 한,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분류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실시하는 본조사와 3월에 실시하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가 있다. 근로형태별 조사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율을 구하고 있는데, 우선 본조사에서 현재 취업한 사람 가운데 직장(일)에서의 지위가 상용 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 근로자라고 응답한 사람에 한정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한다.<sup>8)</sup>

5)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E92D62256A43416291523FB494DE593B10IK](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E92D62256A43416291523FB494DE593B10IK)(접속일자: 2017.10.30.)

6)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정규직 가운데 ‘무기계약직’ 역시 비정규직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보는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에 한하고 있다.

7)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의, 개념, 측정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관심이 있는 독자는 참고문헌에 제시된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8)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 30번 문항은 ‘직장(일)에서의 지위’에 대해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나누고, 임금 근로자는 다시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는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다.

여기서 상용직 근로자(regular employee)는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으로서 ① 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② 퇴직금·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임시직 근로자(temporary employee)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의 비수혜자를 말한다. 일용직 근로자는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가운데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류하는 방법은 <표 1>과 같다. 여기서 우선 주목할 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비정규직을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은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어떤 형태로든 먼저 정규직을 정의하고,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많은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정규직에 대해 정의하고, 그 정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하는 경우와, 반대로 비정규직을 먼저 정의하고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정의하는 경우는 포함되는 대상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구나 자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수나 비율이 서로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정규직에 대해 정의하고, 그 정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정의하는 경우와, 반대로 비정규직을 먼저 정의하고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정의하는 경우는 포함되는 대상이 다를 수 있다.**

〈표 1〉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념정의 및 집계방법

용어	개념정의	집계방법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이외의 근로자	비정규직이 아닌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 근로자 ② 시간제 근로자 ③ 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	한시적 or 시간제 or 파견근로 or 용역 or 특수고용 or 가정내 or 일일(단기)
①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문항32① or (문항32② and 문항43의1②) or (문항32② and 문항43② and 문항43_3의 ①~⑥)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 해당됨	문항32①
② 시간제 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문항44②
③ 비전형 근로자	파견 근로자 · 용역 근로자 · 특수고용 종사자 · 가정내 근로자(재택, 가내) · 일일 근로자	파견 or 용역 or 특수고용 or 가정내 or 일일(단기)
• 파견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문항45②
• 용역 근로자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문항45③
• 특수고용 근로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 · 판매 · 배달 · 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예 :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문항47①
• 가정내 근로자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문항48①
• 일일 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문항42①

출처: 통계청, 「2014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념정의 및 집계방법」

### Ⅲ. 정규직과 비정규직 분포 및 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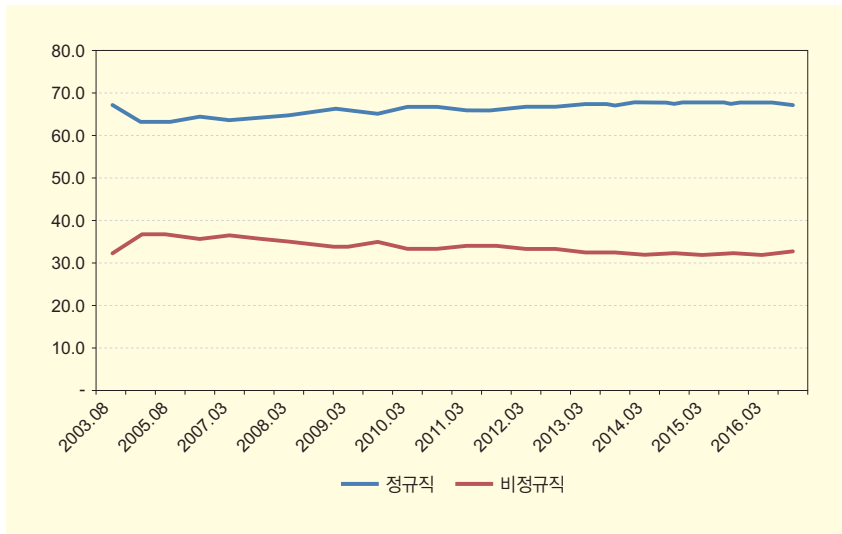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복지 수준 등에 대한 비교를 위해 우선 본고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한다. 그중, 고용형태에 대해 부가조사를 하는 3월과 8월의 원데이터를 사용하여 집계하였다.

먼저, [그림 1]에서는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공식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지난 10여 년간 7:3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지난 10여 년간 7:3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그림 1] 정규직·비정규직 추이(2003~2016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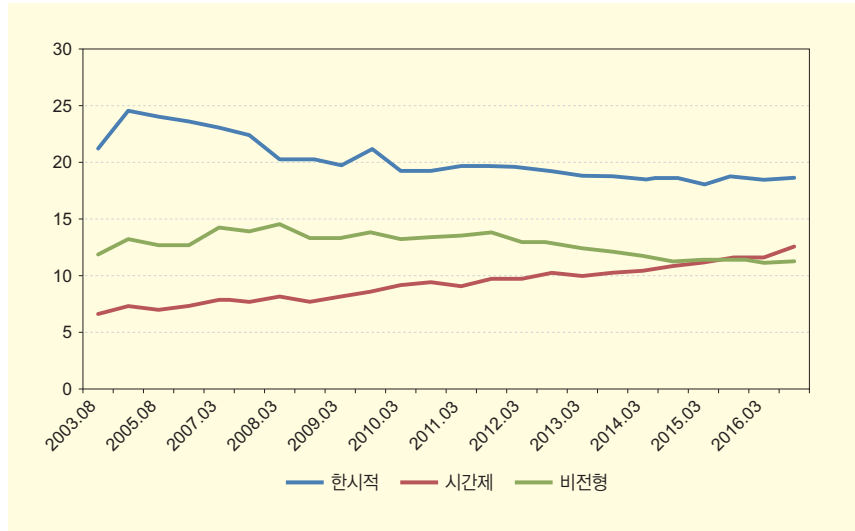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도(3월, 8월)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비정규직을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기타 비전형 근로자로 나누어 각각의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 한시적, 비전형 근로자는 2003년 이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비전형 근로자 수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정리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8~9%p 높다.

[그림 2] 종류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추이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도(3월, 8월)

〈표 2〉에서는 학력이나 성에 따라 정규직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성별 정규직-비정규직의 분포 추이를 살펴보았다. 2009년과 2014년을 비교할 때 2009년 남성 근로자의 74.23%는 정규직이었는데 이 비율이 2014년에는 75.98%로 1.65%p 상승한 반면, 여성은 66.29%에서 66.02%로 0.27%p 감소하였다. 한편 정규직 내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2009년과 2014년 모두 58.4:41.6로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8~9%p 높는데, 2009년에 비해 2014년에 차이가 약간 증가했으나 그 정도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유사한 추이를 정규직, 비정규직 내의 성별 구성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추이

(단위: %)

	2009			2014		
	정규직	비정규직	total	정규직	비정규직	계
남성	74.23	25.77	100	75.98	24.02	100
	58.33	48.86	55.56	58.36	46.26	54.91
여성	66.29	33.71	100	66.02	33.98	100
	41.67	51.14	44.44	41.64	53.74	45.09
계	70.7	29.3	100	71.49	28.5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9, 2014 원자료에서 저자 계산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으면 정규직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표 3〉에서는 학력별 정규직·비정규직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표 3〉 학력별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분포 추이

(단위: %)

	2009			2014		
	정규직	비정규직	총계	정규직	비정규직	총계
무학	47.48	52.52	100	41.85	58.15	100
초등학교	50.96	49.04	100	50.79	49.21	100
중학교	57.3	42.7	100	56.75	43.25	100
고등학교	68.88	31.12	100	68.55	31.45	100
전문대	75.69	24.31	100	77.1	22.9	100
대학	77.84	22.16	100	78.49	21.51	100
대학원(석사)	81.84	18.16	100	78.25	21.75	100
대학원(박사)	73.8	26.2	100	70.62	29.38	100
총계	70.7	29.3	100	71.49	28.51	10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9, 2014 원자료에서 저자 계산

학력별 정규직 분포를 보면, 박사 이상의 학력을 제외하고는, 예상대로 학력이 증가할수록 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9년에 비해 2014년도에도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정규직·비정규직의 분포를 보았을 때, 전문대와 대졸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규직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에는 석사 이상의 대학원 졸업자의 정규직 비율이 무학

학력별 정규직 분포를 보면, 박사 이상의 학력을 제외하고는, 예상대로 학력이 증가할수록 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9년과 2014년을 비교할 때 남성은 30~39인 규모를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정규직의 비중이 상승한 데 비해, 여성의 경우 10~29인, 30~39인, 300인 이상의 규모에 한하여 상승하고 그 폭도 남성에 비해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을 제외한 다른 학력에 비해 급속히 줄어들었다. 고등학교 이하에서 정규직 비율이 감소한 것은,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이 많아, 2009~2014년 사이에 은퇴하고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더 좋은 임금과 근로조건으로 대표되는 정규직은 당연히 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는 기업규모별로 정규직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추이는 어떠한지를 살펴본 것이다.

<표 4> 기업규모별·성별 정규직 분포의 추이

(단위: %)

	2009			2014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1~4인	64.39	65.06	63.94	62.24	63.65	61.18
5~9인	67.33	65.18	69.74	68.86	70.60	66.95
10~29인	67.03	70.38	62.51	69.73	74.76	63.41
30~99인	73.24	79.25	65.00	73.49	78.48	67.48
100~299인	79.25	82.07	73.68	80.94	84.71	73.51
300인 이상	83.94	87.83	74.05	85.52	88.33	78.5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9, 2014 원자료에서 저자 계산

2009년, 2014년 모두 예상대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정규직의 비중은 더 높아졌다. 2009년의 경우 1~4인의 영세규모에서는 남성이 65%, 여성은 64%인데 비해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남성 88%, 여성은 74%였다. 2009년과 2014년을 비교할 때, 남성은 30~39인 규모를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정규직의 비중이 상승한 데 비해, 여성의 경우 10~29인, 30~39인, 300인 이상의 규모에 한하여 상승하고 그 폭도 남성에 비해 크지 않았다.

정규직 비중은 산업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현재 서비스 산업에서 주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확인하고 산업별로 정규직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표 5>를 통해 알아보았다.

〈표 5〉 산업별·성별 정규직 근로자 분포 및 추이

(단위: %)

산업	2009			2014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농업, 임업 및 어업	54.28	60.85	50.89	64.91	68.89	62.8
광업	90.04	89.57	100	82.72	88.49	49.6
제조업	85.14	87.83	79.79	86.65	89.18	81.15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94.11	95.89	84.91	86.89	89.21	75.1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9.02	79.11	78.42	87.45	85.67	94.26
건설업	52.14	50.37	68.17	56.01	54.78	67.86
도매 및 소매업	71.94	79.91	64.65	75.16	81.2	69.22
운수업	78.8	80.47	66.03	81.84	82.61	76.76
숙박 및 음식점업	70.52	76.77	68.32	70.69	76.74	67.7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7.4	77.97	76.05	82.13	84.94	75.48
금융 및 보험업	60.34	73	48.95	60.39	70.24	51.79
부동산업 및 임대업	61.92	59.25	65.65	60.24	63.91	54.8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3.66	84.87	81.6	83.9	86.04	79.6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3.1	35.63	29.96	34.42	35.04	33.6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5.37	83.4	60.39	73.44	82.32	59.32
교육 서비스업	69.49	76.18	66.17	66.92	73.28	63.8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5.24	81.86	73.74	68.32	72.66	67.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2.36	75.86	67.28	69.29	74.58	62.0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5.25	74.62	76.13	71.49	76.5	65.7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46.16	53	45.82	49.69	44.66	49.85
국제 및 외국기관	96.38	94.84	100	100	100	100
계	70.7	74.23	66.29	71.49	75.98	66.02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9, 2014 원자료에서 저자 계산

정규직의 분포를 산업별로 보면, ‘국제 및 외국기관’의 경우 직원 중 정규직 비율이 2009년에는 96%, 2014년에는 100%로 가장 높은 정규직 비율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광업, 제조업에서 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이 각각 33%, 46%로 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한편 2009년과 2014년을 비교할 때 남성의 정규직 비율은 약간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은 반대로 감소하였다.

2009년과 2014년을 비교할 때 남성의 정규직 비율은 약간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은 반대로 감소하였다.

앞으로 그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2009년에 비해 2014년의 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산업별로 정규직 비율의 추세를 증가한 정도를 보면, '농업·임업·광업'과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남녀를 불문하고 증가하였으며,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그리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을 위시한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에서는 남녀 모두 감소하였다.

산업별 정규직 비율을 보면 서비스업이라고 반드시 정규직 비율이 여타의 산업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없으나, 앞으로 그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2009년에 비해 2014년의 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IV. 임금 및 근로조건의 추이

정규직 근로자의 분포가 성이나 학력과 같은 개인적 속성만이 아니라, 기업 규모나 산업과 같은 노동시장의 제도적 속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하에서는 비정규직과 비교할 때 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어떠한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표 6>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시간을 정리하였다.

<표 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간과 평균임금

(단위: 시간, 만원)

	2009		2014	
	노동시간	평균임금	노동시간	평균임금
정규직	37.6	174.70	36.6	217.23
비정규직	40.6	117.96	36.3	140.69
한시적근로자	43.1	133.08	38.5	155.46
시간제근로자	21.3	54.24	20.0	64.17
비전형근로자	42.7	109.88	40.0	142.19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9, 2014 원자료에서 저자 계산

<표 6>의 노동시간은 평소 1주간 근무한 시간이며,<sup>9)</sup> 임금은 최근 3개월간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 (세금공제 전)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sup>10)</sup>다. 정규직과 비

9)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표 46번 문항

10)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표 57번 문항

정규직의 노동시간과 평균임금을 보면, 2009년 정규직은 1주일 평균 37.6시간 일하고 175만원의 임금을 받는 데 비해 비정규직은 41시간을 일하고 118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정규직 노동시간이 36.6시간으로 2009년에 비해 1시간 정도 줄어들었으나, 임금은 217만원으로 상승하였다.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은 36.3시간으로 2009년에 비해 4시간 이상 감소하였으며, 임금도 141만원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비율은 2009년에 1.48이었던 데 비해 2014년에는 1.54로 확대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근로시간보다 임금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유형별 노동시간과 평균임금의 변화를 보면,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에 비해 시간제 근로자의 노동시간 감소분과 임금 상승폭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의 임금 개선을 위해서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 연령별 임금 추이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9년에 비해 2014년에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정규직 내에서 임금은 어떠한 형태로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3]은 2009년과 2014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령별·성별 임금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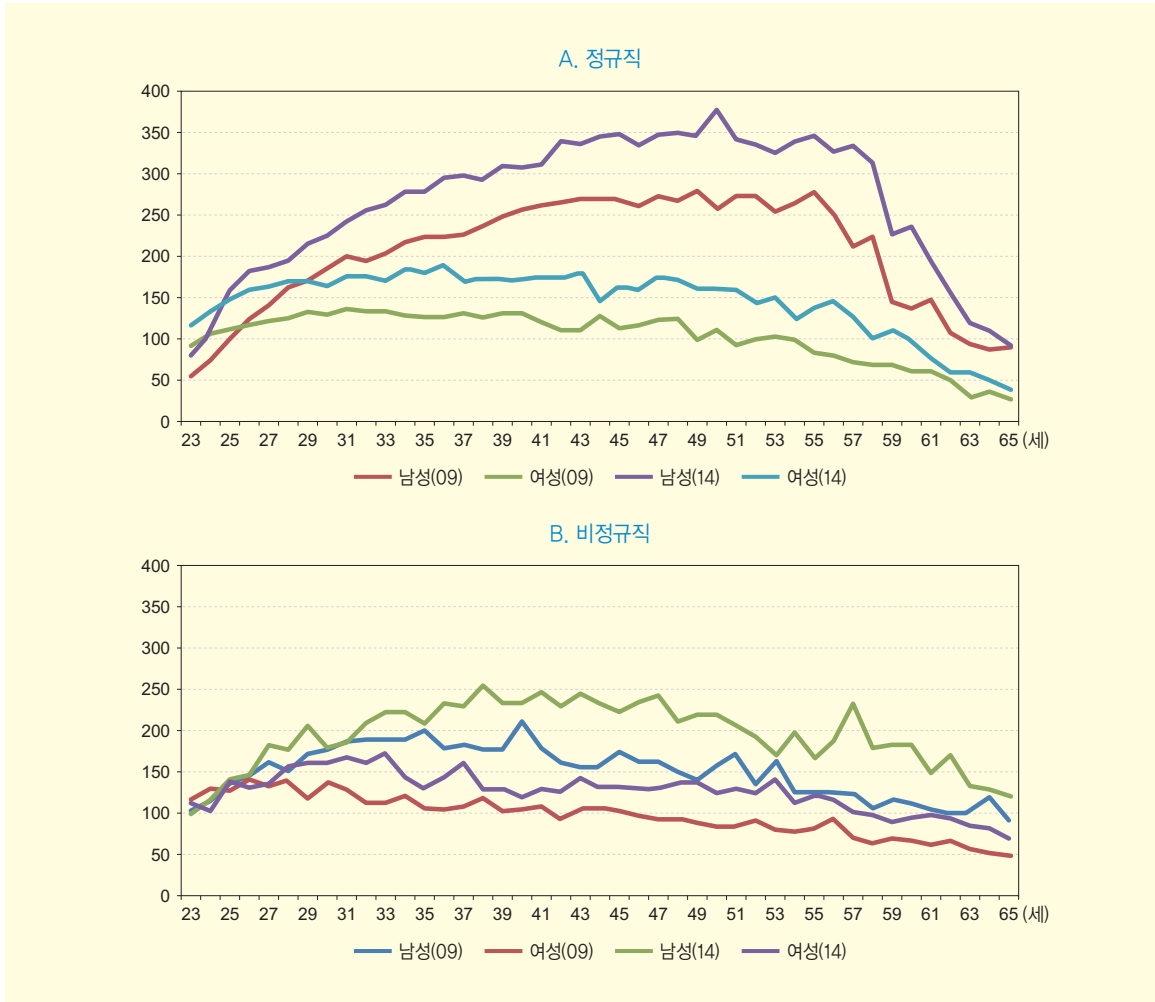
[그림 3]의 'A. 정규직'을 보면, 2009년, 2014년 모두 남성은 50세 초반을 정점으로 하는 전형적인 연공적 임금곡선인데 반해,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형태의 임금곡선을 알 수 있다. 같은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임금곡선의 형태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금 상승 폭을 보면 여성의 상승 폭보다 남성의 상승폭이 더 컸다. 즉, 정규직 내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규직의 임금곡선의 특징은 'B. 비정규직'과 확연하게 구분된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과 같은 확연한 연공적 임금이 아니라, 남녀 모두 30대 중반 이후 임금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우하향하는 평평한 형태로 나타난다.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존재하기는 하나 정규직처럼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임금격차가 존재

**비정규직 유형별  
노동시간과 평균임금의  
변화를 보면,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에 비해  
시간제 근로자의 노동시간  
감소분과 임금 상승 폭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성별·연령별 임금곡선(정규직)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9, 2014 원자료에서 저자 계산

하나, 정규직 내에서도 성별에 따른 큰 격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림 3]은 보여준다.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표 7>은 기업규모별·성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 7〉 기업규모별·성별 임금격차 추이

(단위: 만원)

A. 정규직								
	남성				여성			
	2009	2014	규모별 차이(1~4인=1)		2009	2014	규모별 차이(1~4인=1)	
			2009	2014			2009	2014
1~4인	116.4	144.8	1.00	1.00	69.2	87.2	1.00	1.00
5~9인	158.1	202.5	1.36	1.40	91.9	117.7	1.33	1.35
10~29인	215.9	251.1	1.85	1.73	116.5	145.6	1.68	1.67
30~99인	241.7	291.7	2.08	2.01	156.6	197.3	2.26	2.26
100~299인	259.2	305.1	2.23	2.11	148.6	186.0	2.15	2.13
300인 이상	332.8	403.9	2.86	2.79	197.7	268.1	2.86	3.07
계	224.6	269.0			114.8	149.1		

B. 비정규직								
	남성				여성			
	2009	2014	규모별 차이(1~4인=1)		2009	2014	규모별 차이(1~4인=1)	
			2009	2014			2009	2014
1~4인	103.0	124.6	1.00	1.00	68.4	81.0	1.00	1.00
5~9인	122.4	151.1	1.19	1.21	84.9	95.2	1.24	1.39
10~29인	149.4	185.1	1.45	1.49	103.5	121.2	1.51	1.77
30~99인	176.5	225.4	1.71	1.81	125.5	150.0	1.84	2.19
100~299인	207.7	237.8	2.02	1.91	134.5	160.7	1.97	2.35
300인 이상	257.2	314.2	2.50	2.52	147.0	189.0	2.15	2.76
계	149.7	182.4			98.0	114.5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9, 2014 원자료에서 저자 계산

〈표 8〉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금가입 비율

(단위: %)

〈정규직〉	남성		여성	
	2009	2014	2009	2014
무응답	11.66	11.06	25.61	22.34
가입안함	10.10	9.62	19.42	15.09
직장	74.54	76.02	51.43	59.23
지역	3.69	3.29	3.54	3.34
〈비정규직〉	남성		여성	
	2009	2014	2009	2014
가입안함	43.75	45.47	55.63	50.22
직장	40.63	40.48	34.61	39.05
지역	15.62	14.05	9.76	10.73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9, 2014 원자료에서 저자 계산

**비정규직이라도  
300인 이상 규모에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300인 이하의  
규모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임금 수준이 높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는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크다.**

〈표 7〉의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 추이를 보면, 정규직 남성이 비정규직 남성에 비해 2009년에 1.50배(=224.5/149.7), 2014년에는 1.47배(=269/182.4)로 약간 줄어들고 있는 데 비해 여성은 1.17배(=114.8/98)에서 1.30배(=149.1/114.5)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임금과 관련하여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도 중요하나 임금격차에 성별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7〉은 성별 외에도 사업체 규모별 평균임금 및 1~4인 규모의 사업체 임금을 기준으로 여타 규모 사업체의 평균임금 비율을 비교한 값이 제시되어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분포 및 추이의 특징을 보면, 1) 사업체 규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는 남성-여성, 정규직-비정규직을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존재하며, 2) 비정규직이라도 300인 이상 규모에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300인 이하의 규모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임금 수준이 높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는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크다. 3) 2009년과 2014년 사이 규모별 격차의 추이를 보면, 고용형태 및 성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정규직 남성은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나, 여성은 격차가 확대된 경우도 있으며 줄어든 곳도 있다. 비정규직은 남성, 여성 모두 전체적으로 규모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임금 분포 및 추이에 대한 이상의 사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에 의한 차이도 있으나, 성별이나 기업규모에 의한 차이가 더 크고 명확하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였다.

### 연금가입 비율

이제 임금 이외에 근로조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추이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8〉에서는 먼저 연금가입 비율을 살펴보았다.

〈표 8〉의 연금가입 비율을 보면 정규직 남성의 경우 약 80%, 여성은 약 60% 수준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남성이 약 55%, 여성은 45~50% 정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1)</sup> 예상대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남성이 여성보다 가입률이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정규직은 직장 가입비율이 대부분이고 지역 가입비율은 5% 미만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남성이 약 15%, 여성이 약 10% 정도로 정규직의 2~3배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기업규모별

11)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에는 정규직에 한해 '무응답'인 경우가 남성은 약 10%, 여성은 약 22~26%로 나타났다. '무응답'을 전부 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응답한 정규직의 가입과 미가입의 비율 정도로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지, 혹은 미가입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으나, 본고에서는 무응답을 전원 미가입으로 간주하여 해석을 하였다.

정규직의 연금가입 비율 분포를 보면, 2009년 2014년 모두 미가입자의 75% 정도는 10인 이하의 영세규모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경우 대부분이 지역 가입자였다. 아울러 정규직의 연금가입 비율은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고용보험 가입률

〈표 9〉와 〈표 10〉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 및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 추이를 기업규모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 9〉 고용보험 가입률 추이

(단위: %)

(A) 정규직·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비율				
	2009		2014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무응답	17.48	0.00	24.81	1.09
예	55.55	39.14	61.29	43.48
아니오	26.98	60.86	13.90	55.42

(B) 고용보험 가입 응답 유형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2009		2014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무응답	100.00	0.00	98.28	1.72
예	77.40	22.60	77.95	22.05
아니오	51.68	48.32	38.60	61.4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9, 2014 원자료에서 저자 계산

〈표 9〉의 (A)는 정규직과 비정규직별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것이며, (B)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A)에서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을 보면 2009년 정규직은 약 27%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약 61%였으나, 2014년에는 각각 약 14%, 55%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B)의 표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중을 보면 2009년에는 정규직이 52%, 비정규직이 48%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과반수가 정규직임을 알 수 있다. 이 비율은 2014년에는 정규직 39%, 비정규직 61%로 정규직의 비중이 감소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중을 보면 2009년에는 정규직이 52%, 비정규직이 48%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과반수가 정규직임을 알 수 있다.**

**2014년도에 정규직으로 분류된 근로자 중 14%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비가입자의 약 40% 정도가 정규직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였으나 여전히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약 40%는 정규직이었다.<sup>12)</sup>

예상대로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비정규직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5년 사이에 상당 수준 개선되고 있으나 정규직의 개선 정도가 비정규직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이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2014년도에 정규직으로 분류된 근로자 중 14%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비가입자의 약 40% 정도가 정규직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10〉 기업규모별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여부

(단위: %)

	2009			2014		
	무응답	예	아니오	무응답	예	아니오
1~4인	32.93	21.27	45.80	31.65	29.29	39.07
5~9인	23.69	48.82	27.78	22.13	57.27	20.60
10~29인	15.82	63.82	20.36	20.15	70.00	9.85
30~99인	10.60	64.60	24.80	22.72	68.50	3.78
100~299인	10.12	71.97	17.91	19.38	78.52	2.10
300인 이상	5.72	74.88	19.40	26.35	72.88	0.77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9, 2014 원자료에서 저자 계산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나 해당자 전부가 가입하고 있지는 않다.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1~4인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2009년에는 46%, 2014년도 39%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0〉). 30인 이상의 규모에서는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2009년에는 25% 정도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2014년에는 5% 미만이었는 데, 특히 100인 이상의 규모에서는 1~2% 수준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미가입자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용보험에 관한 한 정규직의 처우는 2009에서 2014년 사이에 급속히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우 개선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한하며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12)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근로자의 약 70% 정도가 정규직 근로자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정규직 근로자 수가 비정규직에 비해 많으므로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근로자 중에서도 정규직이 많을 수 있다.

**유급휴일 및 휴가**

유급휴일 및 휴가 이용 여부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정규직은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9년 27%, 2014년 22%인 데 반해 비정규직은 72%, 67%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유급휴일 및 휴가의 이용 여부는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2009년에 비해 2014년에 5~6%p 정도 개선되었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2009년, 2014년 모두 3배 정도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표 11〉 유급휴일 및 휴가 이용 정도

(단위: %)

	2009		2014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무응답	17.48	0.00	15.76	0.00
예	55.61	27.64	61.84	32.66
아니오	26.91	72.36	22.40	67.34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9, 2014 원자료에서 저자 계산

한편, 정규직에 한정하여 규모별로 유급휴일 및 휴가 이용 정도를 살펴보면(〈표 12〉), 30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는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9년에는 4%, 2014년에는 2%로 100% 가까이 유급휴일 및 휴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유급휴일 및 휴가를 이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9년에는 51%, 2014년에도 46%로 기업규모에 따라 매우 큰 격차가 있었다. 2014년 유급휴일 및 휴가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99인 기업의 경우 12%, 100~299인 경우는 7%로 30인 이상의 사업체는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율은 2009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정규직에 한정하여 규모별로 유급휴일 및 휴가 이용 정도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는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9년에는 4%, 2014년에는 2%로 100% 가까이 유급휴일 및 휴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소위 「기간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2〉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유급휴일 및 휴가 이용 정도

(단위: %)

	2009			2014		
	무응답	예	아니오	무응답	예	아니오
1~4인	32.93	16.19	50.89	31.14	22.77	46.09
5~9인	23.69	34.82	41.49	20.71	44.34	34.95
10~29인	15.82	57.35	26.84	14.63	63.51	21.87
30~99인	10.60	73.62	15.78	9.89	78.44	11.67
100~299인	10.12	80.17	9.71	7.50	85.94	6.56
300인 이상	5.72	90.56	3.72	4.87	93.00	2.14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9, 2014 원자료에서 저자 계산

## V. 결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실업’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1997년 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업률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며, 청년층 실업을 제외하고는 ‘실업’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다. 실업률이 노동시장의 양적 문제라고 한다면, 질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2000년 중반 이후 대두되었다. 이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 질적인 변화로 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한 것이 하나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소위 「기간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요구도 강해지고 있다.

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정작 정규직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았다. 과연 정규직은 높은 임금, 안정된 고용, 좋은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는가? 본고에서는 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주된 결과를 소개하면, 먼저 정규직은 여성보다는 남성, 저학력보다는 고학력이, 그리고 소규모 기업보다는 대규모 기업에서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규직 비율이 낮다고

할 수 없으나, 앞으로 그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있었다.

둘째, 임금 역시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높았으나, 정규직 내에서도 성별, 학력별, 사업체 규모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남녀 모두 비정규직이라도 30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라면 그렇지 않은 규모의 정규직보다 임금 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임금이 고용형태보다 사업체 규모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연금, 고용보험, 유급휴가 사용 여부 등으로 측정된 근로조건 역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좋은 상황임에는 틀림 없으나, 양자 간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으며, 소규모 기업, 여성의 경우는 정규직이라 해도 반드시 좋은 처우를 받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성별, 학력, 사업체 규모에 따른 격차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격차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에 관해서는 일찍이 19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네덜란드에서 실시된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greement)과 그 이후의 조치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1980년대 전반 네덜란드는 실업률이 14%까지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대불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82년 11월 24일에 정부의 지원으로 고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사이에 임금삭감과 고용 확보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합의했다.<sup>13)</sup>

바세나르 협약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관한 정책이 계속적으로 실시되어, 1996년의 노동법 개정으로 풀타임 노동자와 파트타임 노동자 사이에 시급, 사회보장제도 가입, 고용기간, 승진 등의 노동조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고, 2000년의 노동시간조정법 제정에 의해 노동자가 풀타임에서 파트타임, 혹은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이행하는 권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주당 노동시간을 노동자 자신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파트타임은 주 3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 풀타임은 주 3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를 말하며, 양자 사이에는 노동시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권리·의무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이러한 개혁 결과, 임금이 삭감됨에 따라 노동분배율이 저하하고,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됨과 동시에 기업 수익도 개선되고 투자도 촉진되었다.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수입에 근거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파트타임 노

**1980년대  
전반 네덜란드는  
실업률이 14%까지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대불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으로  
고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사이에 임금삭감과  
고용 확보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합의했다.**

13) 이 협약이 바세나르 협약이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람.  
<https://ja.wikipedia.org/wiki/%E3%83%AF%E3%83%83%E3%82%BB%E3%83%8A%E3%83%BC%E5%90%88%E6%84%8F> (접속일자: 2017.11.24.)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가 누리고 있는 정도의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격차를 줄이는 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동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실업률도 감소하였다. 파트타임 노동자 비율은 1983년 18.5%에서 2001년에는 33.0%로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1983년의 14%에서 2001년에는 2.4%까지 감소하였다. 경제성장률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섬과 동시에 1999년에는 재정 흑자도 달성하였다. 네덜란드에서는 시간제 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유럽 국가 가운데서는 가장 높으나<sup>14)</sup> 현재 수행하는 업무나 사내 근로 분위기 등에 약 90% 이상의 근로자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5)</sup>

네덜란드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처해 있는 상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네덜란드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가 누리고 있는 정도의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격차를 줄이는 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현재 존재하는 법 규정을 엄정히 적용하는 것도 격차를 감소시키는 실질적인 중요한 수단일 것이다. 

14) 정희정(2007), p. 64. [그림 2] 참조

15) 정희정(2007), p. 73.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 7. 20.
- 박인상,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2000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00.
- 유경준, 『비정규직 문제 종합연구』, KDI, 2009.
- 이병훈·윤정향, 「비정규 노동의 개념정의와 유형화에 관한 연구」, 『산업노동연구』, 제7권, 제2호, 2001, pp. 1-33.
- 이병희·은수미, 『비정규직법의 고용 영향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1.
- 이영면, 「미국의 비전형근로(Nonstandard Work)와 법적 보호」, 『임금연구』, 봄호, 한국경영자총협회, 2007.
- 정이환, 「비정규노동의 개념정의 및 규정추모에 대한 하나의 접근」, 『산업노동연구』, 제9권, 제1호, 2003, pp. 71-105.
- 정희정, 「유연안정성의 나라,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실태」, 『국제노동브리프』, Vol 5, No.9, 한국노동연구원, 2007, pp. 61-75.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2014.
- Lee, Byung-Hee, and Sangheon Lee, “Minding the gaps: Non-regular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egment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ILO, Series No. 19, 2007.

# 근로소득 비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 I. 서론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san@kipt.re.kr)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는 근로소득 중에서 비과세되는 소득이 열거되어 있다. 비과세 소득이란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한다. 같은 법 제20조와 시행령 제38조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단서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항목들은 아예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들이다.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된 항목들은 근로소득으로 보기는 하지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세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이나 근로소득이지만 비과세하는 소득 모두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 결과는 같다고 볼 수 있다.

법 제12조 제3호에 열거된 비과세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비과세 항목이 상당히 많고 복잡하다. 법 제12조 제3호에 열거된 항목이 가목부터 어목까지 총 22개 항목이다.<sup>1)</sup> 그리고 개별 항목 중 일부는 시행령에 위임하여 훨씬 더 많은 항목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목에 규정된 실비변상적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데, 서로 다른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둘째, 일부 비과세 항목은 비과세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 규정의 제13호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등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셋째, 도입된 지 오래되어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항목들도 있

다. 법 제12조 제3호에 열거된 22개 항목 중 14개 항목은 1970년대 또는 그 이전에 도입되었으며, 2000년대에 도입된 것은 4개 항목뿐이다. 1970년대에 도입된 비과세 항목들이 4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규정과 비과세 소득 규정의 정합성 문제가 있다. 법 제20조와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과 제12조에서 규정한 비과세 소득을 비교해 보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의 성격이 비과세 소득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규정되어 세법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세 비과세 규정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규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개편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의 내용과 비과세 규모 등을 검토한 후, 비과세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비과세 항목을 개편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비과세 항목이 매우 다양하고, 항목별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개별 항목별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면에 제약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항목별 검토보다는 전체적으로 비과세 항목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항목별 검토 시 고려하여야 할 비과세 규정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II. 근로소득 비과세제도 현황

### 1. 근로소득 범위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거의 모두 포괄한다. 통상적인 상여금은 물론 그 외에 주주총회 등의 의결로 일시적으로 받는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 직무상의 발명 등에 따른 보상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도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의 규정을 보완하여 근로

**본고에서는  
항목별 검토보다는  
전체적으로 비과세 항목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항목별 검토 시  
고려하여야 할 비과세  
규정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1) 비과세 근로소득의 각 항목과 항목별 도입연도는 <부표 1>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의 규정을 보완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근로의 반대급부로 또는 근로 제공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다양한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다.**

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근로의 반대급부로 또는 근로 제공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다양한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물론이고,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도 근로소득이 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 중 두 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받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종업원,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무료 또는 저가로 주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15조의2). 둘째, 사용자가 종업원이나 종업원의 배우자, 기타 가족을 계약자나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부담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 업무상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위험에 대비한 일부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제12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3호에 따르면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퇴직소득은 법 제22조와 시행령 제42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에 규정된 소득을 말한다. 대통령령에 규정된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소득'은 퇴직급여를 목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에 사용자가 적립하는 금액,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퇴직소득의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퇴직 시 특정 종업원이 개별 협의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위에서 열거한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이 된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구분하여 별도의 과세체계가 적용된다.

정리하면, 근로 제공의 대가 또는 근로 제공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그 형태에 불문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중 명시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은 퇴직급여 외에 저가의 사택 제공에 따른 이익,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장성보험료의 일부뿐이다.

## 2. 근로소득 비과세 제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열거되어 있는데, 다음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 첫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둘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 셋째,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 넷째,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 가. 실비변상적 급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항목의 내용을 법에 규정된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
- 「선원법」에 의해 받은 식료
- 일·숙직료,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근로 제공의 대가 또는 근로 제공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그 형태에 불문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중 명시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은 퇴직급여 외에 저가의 사택 제공에 따른 이익,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장성보험료의 일부뿐이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포함
- 법령·조례에 의해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군인, 경찰 등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 등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교원 및 연구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이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유치원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기자의 취재수당 월 20만원 이내
- 근로자의 벽지근무수당 월 20만원 이내
-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지원금 월 20만원

이 중 일부 항목은 좀 더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군인, 경찰 등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 등은 다음의 항목들을 말한다. ①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과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항공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그리고 ②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가 비과세되는 연구자는 ① 유아·초·중·고등교육기관의 교원,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연구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③ 법률에 의해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를 의미하며, 유치원교사 인건비는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를 말한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보조수

당은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을 뜻한다.

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이 비과세되는 기사는 방송, 뉴스통신, 신문(일반 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포함)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사를 말한다.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급여 중 월 20만원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위에서 열거한 항목들은 법 제12조 제3호와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항목을 정리한 것인데, 이 항목들이 모두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이들 항목 외의 다른 비과세 항목 중에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두 가지 의문 중 후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른 비과세 소득을 설명하면서 다루고, 다음에서는 전자의 의문에 대해 살펴본다.

조금 자의적이긴 하지만 저자의 판단에 따르면, 위에서 열거한 실비변상적 급여는 크게 세 가지 성격의 급여로 구성된다. 첫째, 소액의 급여로 실제 근로 제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보전, 둘째, 특정한 위험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당, 셋째, 위험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정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소액 급여로서 실제 근로 제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보전에 해당하는 급여에는 작업장에서 착용해야 하는 제복, 제모, 작업복 등의 지급,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 등이 포함되며, 위험수당에는 군인·경찰 등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 광산근로자의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이 포함된다. 벽지근무수당은 특별한 위험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벽지근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범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는 연구자의 연구활동비, 취재기자의 취재비,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유치원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등이 있다.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것이 실비변상적 급여의 기본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항목들은 실비변상적 성격과 특정 직종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의 성격이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급여는 근로활동에 필요한 '실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특정 직종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의 성격이

**열거된 항목들이 모두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이들 항목 외의 다른 비과세 항목 중에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법에 규정된  
비과세 한도가 실제로  
국외근무에 따른  
실비를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공무원 등의  
한도에는 비과세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실비를 초과하여  
비과세한다면 그 부분은  
국외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등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는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국외 등은 국외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을 말한다.

둘째,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셋째,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비과세한다.

공무원의 국외근무수당 비과세에 대한 설명에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라는 규정은 이 비과세 항목이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비과세 한도가 실제로 국외근무에 따른 실비를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공무원 등의 한도에는 비과세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실비를 초과하여 비과세한다면 그 부분은 국외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다.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직 근로자란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생산 및 관련 종사자의 구체적인 직종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 ②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선장은 제외), ③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운전원 및 운반종사자의 구체적인 직종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이다. 다만,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이 비과세된다.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이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도 비과세된다.

이 항목은 실비변상적 급여라기보다는 생산직의 야간 근무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기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앞에서 설명한 것 외에도 다양한 비과세 소득이 있는데, 다음에서는 그 비과세 소득을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눠서 정리한다.

첫째,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받는 급여

둘째, 질병, 부상, 사망, 실업, 휴직 등에 따른 보상이나 급여

셋째, 직무관련 교육에 따른 학자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등

넷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섯째, 그 외 사용자가 지불하는 사회보험료와 식사대 등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으로, ①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데, 복무 중인 병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②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와 ③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도 비과세된다.

둘째, 질병, 부상, 사망, 실업, 휴직 등에 따른 보상이나 급여도 비과세된다. 이 범주에 속하는 비과세 급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산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이다. 다만,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이 비과세된다.**

**질병, 부상, 사망, 실업, 휴직 등에 따른 보상이나 급여, 직무관련 교육에 따른 학자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등도 비과세된다.**

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籍)의 성질이 있는 급여, ②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③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재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④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보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⑥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그리고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셋째, 직무관련 교육에 따른 학자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등도 비과세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초·중·고등교육기관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특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이 비과세된다. 특정한 요건은 학자금이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자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그 외에 ②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도 비과세된다.

넷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도 비과세된다.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비과세

가 허용된다. 국제기관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하며,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가 비과세된다.

마지막으로, 그 외 사용자가 지불하는 사회보험료와 식사대 등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비과세된다. ②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도 비과세된다. 여기서 식사는 사내 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말하며, 사내 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한다. ③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도 비과세된다. 그리고 ④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으로서,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과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된다.

이상에서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비과세 근로소득의 내용을 모두 열거하였는데, 이는 규정의 복잡성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에서 다섯 가지로 분류한 비과세 항목의 그룹 중에서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이 강한 항목은 셋째와 다섯째이다. 셋째 항목의 직무관련 교육에 따른 학자금은 명백하게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른 국가에서도 대부분 비과세로 하거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허용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명백하게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볼 수는 없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항목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종업원 식사대도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과 직무관련 보상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라기보다는 출산 및 장려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 가지로 분류된 비과세 항목 중 둘째 질병, 부상, 사망, 실업, 휴직 등에 따른 보상이나 급여는 근로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변상하는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실비변상적 성격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대체로 급여의 규모가 적고, 질병이나 부상 등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지급하는 소액의 지급으로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명백하게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볼 수는 없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과 직무관련 보상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라기보다는 출산 및 장려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첫째 그룹으로 분류된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받는 급여는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의 소득지원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넷째의 경우 외국이나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는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국제적인 관계에 따른 것이다.

### Ⅲ. 주요 외국의 비과세 근로소득

#### 1. 미국

미국의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sup>2)</sup> 근로자가 해당 경비를 고용주로부터 보전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허용되며, ‘적격한 규정(qualified accountable plan)’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비용을 보전한 경우에 그 보전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관련 비용도 공제되지 않는다.

업무수행에 필요하고 통상적인 비용으로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sup>3)</sup> ① 개인 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 ② 업무와 관련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여비, 교통비 및 출장비, ③ 업무와 관련 있는 고객을 위한 식비, 유흥비 등의 접대비, ④ 자택근무시의 홈 오피스 운영유지비용, ⑤ 노동조합이나 기타 근로소득자 조직 단체에 납부하는 비용, ⑥ 기술향상, 고용계약 유지, 연봉인상 등을 위한 교육비용, ⑦ 새로운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⑧ 영업 배상 책임보험 보험료, ⑨ 그리고 고용계약의 위반에 대해 전 고용주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고용주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이른바 부가급부(fringe benefits)는 세법에서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부가급부는 다음과 같다.<sup>4)</sup> ① 복리후생적 성격의 것으로서 소액의 금전적 혜택 또는 현물지원, ② 추가 비용 없는 서비스, 직원 할인, 소액의 혜택, 포상금, 사내운동시설지원, ③ 근로와 관련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④ 근무 조건상의 혜택, 출퇴근용 교통관련 혜택, 이사비용, 일정한 식비 및 숙박비, ⑤ 퇴직, 상해 등에 대한 보험료, 또는 관련 서비스, ⑥ 퇴직연금 플랜 서비스, 재해 및 건강관련 혜택, 각종 보험료, 건강저축계정 납입금, ⑦ 업무 관

2) 김재진·박수진·이형민(2014) p. 52.

3)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9/ar02.html>(검색일자: 2017.4.18.); 김재진·박수진·이형민(2014), pp. 52-53.

4)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lications/p15b/ar02.html#en\\_US\\_2017\\_publink-1000193627](https://www.irs.gov/publications/p15b/ar02.html#en_US_2017_publink-1000193627)(검색일자: 2017.4.17.), IRC § 132; Reg. §§ 1.132-1 to-9

련 교육비, ⑧ 포상금 등, ⑨ 자녀돌봄 및 입양 지원 서비스, 그리고 ⑩ 자녀돌봄지원, 입양지원.

## 2. 영국

영국에서도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필요경비로서 실제로 발생한 경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sup>5)</sup>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지출한 제복 세탁비, 근로자가 개인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였으나 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관련 지출액, 홈 오피스 비용(1주일에 4파운드 이내) 등이 공제가 허용되는 지출항목이다.

그 외에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그 명목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법에서 비과세 급여로 열거하고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주요 비과세 급여는 다음과 같다. ① 복리후생적 성격의 것으로서 소액의 금전적 혜택 또는 현물지원, ② 적격대출 등, 사업장 내의 체력단련시설, ③ 근로와 관련된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급여, ④ 근로자 개인 소유 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 ⑤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제공하거나 보조하는 식사 등, ⑥ 주거시설 지원, 핸드폰 지원비용,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 서비스 등, 이사 또는 재배치 비용 지원금, 사업장 내의 주차장 사용,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숙식 제공, 제복 및 작업복,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지급받는 소액의 개인용품, ⑦ 퇴직, 상해 등에 대한 보험료, 또는 관련 서비스, ⑧ 부당해고, 부상 등에 의한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 사망 또는 퇴직에 대한 보상 일시금, 특정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예. 스트레스, 직장 내 문제 등), 임원진에 대한 업무 관련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료, ⑨ 업무 관련 교육비, ⑩ 제안포상금 등, ⑪ 자녀돌봄 및 입양 지원 서비스, 그리고 ⑫ 사업주가 제공하는 일정한 직장 탁아시설.

**영국에서는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그 명목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법에서 비과세 급여로 열거하고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5) IBFD-United Kingdom-Individual Taxation-Country Analyses-1, Individual Income Tax-1.3.1.4.(검색일자: 2017.4.19.);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tax-relief-for-employees/overview>(검색일자: 2017.4.20.)

**일본은 근로자가 지출한 업무 관련 특정 비용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공제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3. 일본

일본은 근로자가 지출한 업무 관련 특정 비용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공제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sup>6)</sup> 이때 공제가 허용되는 업무 관련 특정비용은 통근비용, 전근비용,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자격취득비용(업무수행과 관련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업무수행관련 도서·의복구입비, 업무관련 접대 등을 위한 지출액(단, 총합계 기준 65만엔 한도)을 말한다.

비과세 소득은 일본의 「소득세법」 제9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근로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모두 급여로 과세된다.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주요 비과세 부가급부는 다음과 같다. ① 복리후생적 성격의 것으로서 소액의 금전적 혜택 또는 현물지원, ② 창립기념 기념품, 직원 야유회 경비, 특정한 경우의 금전적 대여, ③ 근로와 관련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④ 직무목적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비, 통근수당, 식사, 사택(법정 기준임대료 이상을 받은 경우), 국외근무자의 해외근무수당, 업무수행상 필요한 유니폼 등, ⑤ 업무 관련 교육훈련비, ⑥ 포상금 등, ⑦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등, 그리고 ⑧ 외국정부 등에 근무하는 자의 급여.

### 4. 호주

호주에서도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업무비용은 필요경비로 보아 총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sup>7)</sup> 공제 가능한 비용은 납세자인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으로서, 고용주가 관련 비용을 보전한 경우 또는 제3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총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특정 업무비용의 내용을 보면, 업무관련 차량비용(work-related car expenses)이 발생한 경우에 그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업무관련 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항공, 택시요금 등 대중교통비용, 통행료, 주차료, 식대, 숙박비 등 출장과 관련된 비용, 기타 차량 관련 비용, 주유대, 수선비 등도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있다. 업무관련 유니폼, 작업복(occupation-specific clothing), 보호장비(protective clothing)등 구입비용과 세탁비, 수선 유지비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

6) IBFD-Japan-Individual Taxation-Country Analyses-1. Individual Income Tax-1.3.1. (검색일자: 2017.4.19.); 김재진·박수진·이형민(2014), p. 91.

7) ATO(2016), p. 24.

적 연관이 있는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으며, 기타 시간외근무 식대, 협회비, 업무관련 전문 세미나 강좌 참석비, 홈 오피스 비용 등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고용주가 지급하는 부가급여(fringe benefits)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과세되지 않고,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s Tax)라는 명목으로 고용주에게 과세된다.<sup>8)</sup> 예를 들면 자동차 관련 지원, 저리대출, 휴가 시 급여지급, 주거비용 등의 지급 등이 부가급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업무와 관련된 급여 중 다음의 항목들은 부가급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sup>9)</sup> ① 소액의 부가급여(300호주달러 이하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빈도 등에 비춰볼 때 부가급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② 휴대용 전자기기(예, 휴대폰, 노트북 등), 컴퓨터소프트웨어, ③ 보호장비, 서류가방, 영업을 위한 장비, ④ 출장 택시비, ⑤ 소규모사업자가 제공하는 특정 주차비용, 그리고 ⑥ 전근비용 등이다. 호주의 부가급여세 비과세는 다른 국가의 근로소득세 비과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 5. 요약

이상에서 미국, 영국, 일본, 호주 4개국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근로소득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실비변상적인 항목 등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세법에 비과세 급여에 해당되는 지급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성격의 것들이다.

- 첫째, 복리후생적 성격의 지급으로서 소액의 금전적 혜택 또는 현물지원
- 둘째, 근로와 관련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 셋째, 퇴직, 상해 등에 대한 보험료, 또는 관련 서비스
- 넷째, 업무 관련 교육비
- 다섯째, 포상금 등
- 여섯째, 자녀돌봄 및 입양 지원 서비스

비과세 소득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본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혜택에 대한 비과세가 상당히 제한적이며, 퇴직·상해 등에 대한 보험료, 또는 관련 서비스에 해당하는 지원, 자녀돌봄서비스 등은 비과세 소

**호주는 고용주가 지급하는 부가급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과세되지 않고, 부가급여세라는 명목으로 고용주에게 과세된다.**

8)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Income-you-must-declare/Employment-income/#Reportablefringebenefitsandsupercontrib1>, (검색일자: 2017.4.20.)

9)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General/fringe-benefits-tax-\(fbt\)/fbt-exemptions-and-concessions/](https://www.ato.gov.au/General/fringe-benefits-tax-(fbt)/fbt-exemptions-and-concessions/)(검색일자: 2017.4.20.)

**미국, 영국, 일본은  
실비변상적 급여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해  
자신이 지급한  
필요경비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득으로 열거하지 않았다. 업무 관련 교육훈련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과세되며, 세 국가 모두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에 대해 제한적으로 비과세하고 있다. 실비변상적 급여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해 자신이 지급한 필요경비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경비를 고용주로부터 보전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전액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관련 비용도 공제되지 않는다. 바로 이 부분이 비과세 소득이 된다. 그러므로 필요경비 공제와 비과세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진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도 국가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소액의 출퇴근 관련 경비, 업무 관련 여비, 업무상 필요한 제복 관련 경비, 소액의 식사비 또는 현물로 지급된 식사, 사택이나 사내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다.

호주에서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부가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고용주에게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 Tax)를 과세한다. 그런데 소액의 부가급여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중 일부에 대해서는 부가급여세가 비과세된다. 300호주달러 이하이며 빈도가 낮아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휴대용 전자기기(예. 휴대폰, 노트북 등),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장비, 서류가방, 영업을 위한 장비, 출장 택시비, 소규모사업자가 제공하는 특정 주차비용, 전근비용 등의 지급도 부가급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이것이 다른 국가의 비과세 소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IV. 비과세 근로소득 규모 및 분포

다음에서는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사용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의 규모와 분포를 살펴본다. 『국세통계연보』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연구활동비와 국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그 밖의 비과세 소득(기타비과세)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그 밖의 비과세 소득은 국세청에서 집계하는 비과세 소득 중 연구활동비와 국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의 합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과세 소득 중에는 국세청이 집계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국세통계연보』 자료가 비과세 소득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세청은 법 제12조의 제3호에 규정된 총 22개 항목 중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으며, 자목의 실비변상적 급여의 경우에도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 조세지출항목으로서 규모가 가장 큰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국세청 집계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기타비과세에 대해 항목별로 구분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국세통계연보』 자료만으로는 비과세 항목별로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의 검토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개략적인 윤곽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집계하는 비과세 소득 신고자는 2015년 192만명으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1,733만명의 11.1%를 차지하였으며, 2010년 17.1%였던 것에 비해 계속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연구활동비와 국외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신청자가 납세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신청자는 2010년 근로소득 신고자의 5.4%에서 2015년 2.9%로 줄어들었으며, 기타비과세 신청자는 2010년 근로소득 신고자의 7.0%에서 2015년 1.7%로 비중이 5.3%p나 낮아졌다(〈표 1〉 참조).

국세청에서 집계하는  
비과세 소득 신고자는  
2015년 192만명으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1,733만명의 11.1%를  
차지하였으며,  
2010년 17.1%였던 것에  
비해 계속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국세청에서 집계한  
비과세 소득 신고자는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1%이고, 비과세 급여를  
신청한 자 중에서 총급여  
상위 10%인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별 신고인원

(단위: 천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 상위10%
신고 인원	근로소득	15,177	15,540	15,768	16,360	16,687	17,333	1,733
	비과세 소득	2,594	2,386	1,894	2,114	2,120	1,923	378
	연구활동비	388	380	419	436	441	646	221
	국외근로수당	87	96	104	113	118	115	47
	야간근로수당	825	753	407	573	564	510	1
	출산보육수당	416	420	473	484	481	479	75
	기타비과세	1,068	899	671	690	695	301	56
비중	근로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과세 소득	17.1	15.4	12.0	12.9	12.7	11.1	21.8
	연구활동비	2.6	2.4	2.7	2.7	2.6	3.7	12.7
	국외근로수당	0.6	0.6	0.7	0.7	0.7	0.7	2.7
	야간근로수당	5.4	4.8	2.6	3.5	3.4	2.9	0.1
	출산보육수당	2.7	2.7	3.0	3.0	2.9	2.8	4.3
	기타비과세	7.0	5.8	4.3	4.2	4.2	1.7	3.2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1

비과세 근로소득의 규모는 4조 2,200억원으로 근로자 총급여 566조 7,290억원의 0.7%를 차지하였다. 항목별로 보면, 비과세 국외근로수당이 1조 8,820억원으로 총비과세 소득의 44.5%를 차지하였다. 그다음은 야간근로수당 7,780억원(비과세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18.4%), 연구활동비 6,710억원(15.9%), 기타비과세 6,090억원(14.4%), 출산보육수당 2,790억원(6.6%)의 순이다(〈표 2〉 참조).

국세청에서 집계한 비과세 소득 신고자는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1%이고, 비과세 급여를 신청한 자 중에서 총급여 상위 10%인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 중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자가 많음을 시사한다. 비과세 항목별로 보면,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부분의 비과세 혜택이 귀속되지만 다른 항목은 각 항목의 비과세 소득 신고자 중에서 총급여 상위 10% 집단에 속하는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5.6(출산보육수당)~41(국외근로수당)%로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근로수당과 연구활동비의

경우 이 비율이 34.2%와 41%로 고소득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표 2〉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별 신고현황(2015년)

(단위: 천명, 십억원, %)

구분	신고자 전체				총급여 상위 10%			
	신고현황(A)		비중		신고현황(B)		비중(B/A)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전체(근로소득)	17,333	566,729	100.0	100.0	1,733	183,573	10.0	32.4
비과세 소득	1,923	4,220	11.1	0.7	378	1,526	19.7	36.2
연구활동비	646	671	3.7	0.1	221	273	34.2	40.7
국외근로수당	115	1,882	0.7	0.3	47	1,022	41.0	54.3
야간근로수당	510	778	2.9	0.1	1	1	0.3	0.2
출산보육수당	479	279	2.8	0.0	75	53	15.6	19.1
기타비과세	301	609	1.7	0.1	56	176	18.7	28.9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 표 4-2-1

**비과세 소득 신고자를 보면,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비과세 소득 신고자의 93.1%가 총급여 2천만원 이하로서 저소득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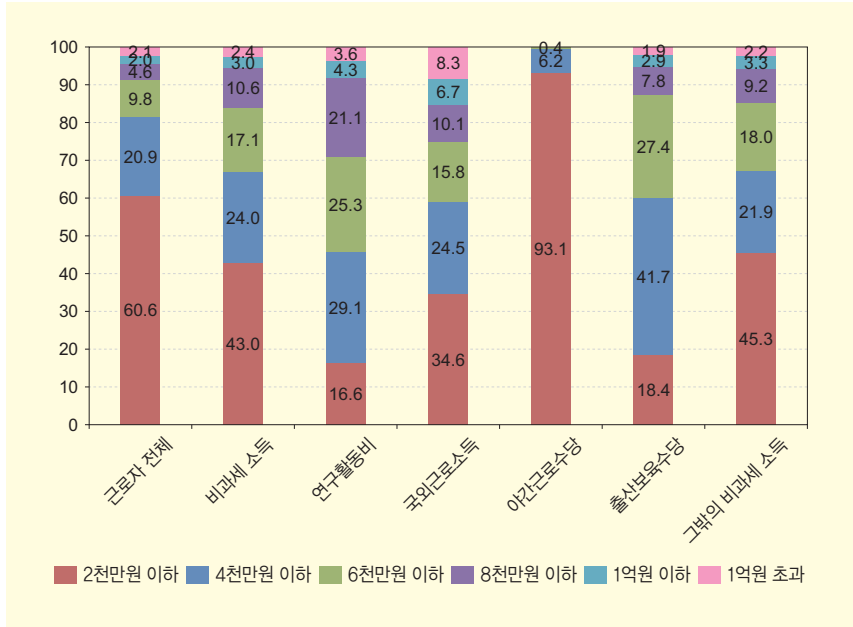
2015년에 근로소득세 신고를 한 전체 인원의 총급여 수준별 분포를 보면, 총급여 2천만원 이하가 60.6%, 2천만~4천만원이 20.9%, 4천만~6천만원이 9.8%를 차지하여, 6천만원 이하의 비중이 91.3%였다. 그리고 비과세 소득 신고자를 보면,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비과세 소득 신고자의 93.1%가 총급여 2천만원 이하로서 저소득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 외의 비과세 항목을 보면, 연구활동비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신고자 중에서 총급여가 2천만원 이하인 자는 각각 16.6%와 18.4%로 전체 근로자 중 총급여 2천만원 이하인 자의 비중(60.6%)에 비해 상당히 낮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신고자 중 총급여 2천만원 이하인 자의 비중은 34.6%이며, 그 밖의 비과세 소득은 이 비중이 45.3%이다([그림 1] 참조).

총급여 6천만원 이하인 자(4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의 비중을 보면, 근로자 전체가 91.3%,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신고자가 99.7%이다. 한편 연구활동비 비과세 신고자 중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인 자의 비중은 71%로 표에 나타난 비과세 항목 중 가장 작고, 그다음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신고자 74.9%, 기타 비과세 소득 신고자 85.2%, 출산보육수당 신고자 87.5%의 순이다.

비과세 소득 신고자  
1인당 평균  
비과세 소득 규모는  
21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 평균 급여  
3,270만원의 6.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림 1] 비과세 소득 항목별 신청자의 총급여 수준별 분포(2015년)

(단위: %)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 표 4-2-5

비과세 소득 신고자 1인당 평균 비과세 소득 규모는 21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 평균 급여 3,270만원의 6.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항목별로 보면,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규모가 신청자 1인당 평균 1,635만원으로 전체 평균치에 비해 상당히 크다. 이는 근로자 평균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 다음으로 기타비과세가 신청자 1인당 202만원으로 비과세 소득 규모가 큰 편이고, 야간근로수당 152만원, 연구활동비 104만원의 순이다(〈표 3〉 참조).

소득수준별로 보면, 비과세 신청자 1인당 비과세 소득의 규모가 평균 219만원인 데 비해, 상위 10%인 근로자 중 비과세 소득을 신고한 자의 비과세 소득 규모는 평균 403만원으로 고소득자의 1인당 비과세 소득 규모가 큰 편이다.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도 대체로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국외근로수당 비과세의 경우, 전체 비과세 신청자의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규모는 1,635만원인 데 비해 총급여 상위 10%에 해당하는 자 중 국외근로수당 비과세를 신청한 자의 평균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규모는 2,162만원으로 그 격차가 크다.

〈표 3〉 비과세 항목별 1인당 비과세 소득 규모(2015년)<sup>1)</sup>

(단위: 만원, %)

	전체		상위 10%	
	1인당 평균	평균급여 대비 비율	1인당 평균	평균급여 대비 비율
총급여	3,270	100.0	10,591	100.0
비과세 소득	219	6.7	403	3.8
연구활동비	104	3.2	124	1.2
국외근로수당	1,635	50.0	2,162	20.4
야간근로수당	152	4.7	93	0.9
출산보육수당	58	1.8	72	0.7
기타비과세	202	6.2	313	3.0

주: 1) 비과세 소득은 「국세통계연보」 분류에 따른 비과세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등의 사용자부담금과 현물급식 등 현물급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등의 사용자부담금을 의미함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 표 4-2-1

이상에서 살펴본 근로소득 비과세 실적 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범위의 측면에서 보면, 2015년 총근로소득세 신고자의 11.1%가 비과세 소득을 신고하여 포괄범위는 넓은 편인 것으로 판단된다. 총급여 상위 10%만 보면 21.8%가 비과세 소득을 신고하였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집계하지 않은 비과세 항목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과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비과세 소득의 규모를 보면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2015년의 비과세 소득 규모가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근로자 총급여의 0.7% 수준으로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큰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비과세 급여가 정책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세표준과 비교해 보면, 비과세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가 되는데, 이는 근로소득세 수입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과세는 과세의 수평적 형평성과 과세의 공정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항목을 비과세하는 경우 과세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셋째, 비과세 항목이 매우 많은데, 대부분은 그 규모가 상당히 작으며, 소수의 항목이 비과세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국세청 집계자료에 따

과세표준과 비교해 보면, 비과세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가 되는데, 이는 근로소득세 수입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면, 항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고소득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근로수당의 경우 역진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르면 2015년에 비과세 근로소득은 총 4조 2,200억원이었는데, 그 중 44.5%가 국외근로수당 비과세(1조 8,820억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가 18.4%(7,780억원), 15.9%가 연구활동비 비과세(6,710억원)로 이 세 개의 항목이 78.8%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면, 항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고소득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전체 근로자 중에서 비과세 소득을 신청한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1.1%인데, 비과세 소득을 신청한 자 가운데 총급여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는 19.7%를 차지하였다. 금액으로 보면, 비과세 소득을 신고한 자의 1인당 평균 비과세 소득은 219만원인데 비해 총급여 상위 10%에 해당하는 비과세 신청자의 1인당 평균 비과세 소득 규모는 403만원이었다. 특히 국외근로수당의 경우 역진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신청자 중 총급여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1%였다. 1인당 평균 비과세 급여 규모는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신청자 전체 평균 1,635만원, 총급여 상위 10%인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신청자 평균 2,162만원이었다. 한편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비과세 신청자 중 총급여 2,000만원 이하인 자가 93.1%로 주로 저소득자가 혜택을 받았다.

## V.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 1.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의 문제점

본고의 서두에서 근로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다음에서는 이 문제점들과 앞서 검토한 비과세 현황 분석 및 외국제도 검토를 통해 추가로 파악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비과세 항목이 상당히 많고 복잡하다는 점이다. 법 제12조 제3호에 열거된 비과세 항목이 가목부터 어목까지 총 22개 항목이며, 개별 항목 중 일부는 시행령에 위임하여 훨씬 더 많은 항목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목에 규정된 실비변상적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데, 서로 다른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과도한 비과세 항목 규정은 소득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조세제도가 복잡해지면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주어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도 생기게 되며, 복잡한 제도를 남용하여 세부담을 회피할 가능성도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과세결과는 불공평해진다. 특히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수평적 형평성이 훼손되면 경제의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여 단순화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비과세의 취지에 맞지 않는 항목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한 항목들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난다. 예를 들면,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 규정의 제13호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등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항목들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실비변상적 급여라기보다는 이들 직종에 대한 급여지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자의 연구활동비 및 기자의 취재수당도 각각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하며, 이 항목도 실비변상적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자나 취재기자가 다른 직종에 비해 특별히 더 많은 활동비가 필요한 직종인가에 대해 의문이 들며, 이 급여가 실제로 연구활동이나 취재활동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세법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구활동비 및 취재수당의 비과세도 실비변상적 급여라기보다는 연구자와 기자에 대한 급여 지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소득지원의 관점에서 이들 비과세 항목이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도입된 지 오래되어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항목들도 있다. 예를 들면 국외근로수당 비과세의 경우 1975년에 도입되었는데, 이 시기는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해외건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해외건설의 성장 기초를 유지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촉진하며, 해외건설 현장의 우리나라 근로자 비중 제고를 통해 외화가득률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 목적이 아직도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16)에서는 일몰규정 없이 운영되는 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제환경의 변화 등에 따

**과다한 비과세 항목 규정은 소득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특히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수평적 형평성이 훼손되면 경제의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여 단순화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국외근로수당  
비과세의 경우,  
해외건설의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촉진하며,  
해외건설 현장의  
우리나라 근로자 비중  
제고를 통해 외화가득률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  
목적이 아직도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 제도 시행의 정책적 필요성이 크게 낮아진 경우나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항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예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 법인세 등의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를 지적하였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비과세제도는 1990년에 도입되었으며,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생산직 업종의 인력난을 개선하는 것이 도입 목적이었다. 도입 당시에는 이러한 목적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년실업과 과도한 근로시간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2014년 연간 근로시간이 2,124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sup>10)</sup>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sup>11)</sup> 정부는 최대 주 68시간인 현행 근로시간 규정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비과세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는 저소득층의 근로를 지원하는 다른 제도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저소득층의 근로를 지원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제도라고 인식되는 근로장려세제가 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무수당 비과세는 생산직에 적용되며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근로장려세제는 보편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홑벌이의 경우 소득 2,1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 및 제도의 변화를 고려할 때,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직 업종의 인력난을 개선한다는 당초의 비과세 목적이 타당한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 비과세제도의 혜택이 역진적이라는 점도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이 집계하는 비과세 소득 신고자는 2015년에 192만명으로 근로소득세 신고자 1,733만명의 11.1%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총급여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만 보면, 21.8%가 비과세 소득을 신고하였다. 특히 국외근로수당 비과세의 경우, 이 항목 비과세 신고자 중 총급여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1%였으며, 연 구활동비 비과세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34.2%였다. 이러한 수치들은 일부 비과세 항목의 혜택이 상당히 역진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역진성 자체만으로 비과세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소득의 특성상 비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면, 그 결과가 역진적이라도 비과세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

10) OECD(2016), p. 131.

11) 『조선일보』, 「법 개정 않고 정부, 근로시간 단축하나」, 2017. 5. 12.

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득세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 중의 하나가 소득재분배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항목 중 역진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항목은 비과세의 논리를 다시 확인하여 정당성을 점검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당성이 다소 약한데 역진적인 성격이 강한 비과세 항목은 과세로 전환하거나 비과세 소득의 규모를 제한하여 역진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규정과 비과세 소득 규정의 정합성 문제가 있다. 법 제20조와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과 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비과세 소득을 비교해 보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의 성격이 비과세 소득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규정되어 세법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비과세하는 소득이 모두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국세행정의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주기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데 대한 정당성을 점검하고 제도 개편방안을 모색한다는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근로소득 개념의 포괄성 관점에서 보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 중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비과세하는 항목과 유사한 성격이 있는 항목은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비과세 기준의 설정 및 그에 따른 비과세 항목 정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이는 포괄적 과세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조세체계의 단순화, 소득재분배, 경제의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기준을 적용하여 비과세 항목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문헌에서는 어떤 종류의 소득을 비과세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기한 연구결과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본고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근로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 중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비과세하는 항목과 유사한 성격이 있는 항목은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세소득에 포함된 후에  
소득공제를 하는  
방식이 번거롭거나  
과세 자체가 행정적으로  
번거로운 반면 세수입은  
많지 않아 과세의 실익이  
없는 경우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비과세 유지 기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근로소득을 종합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국가들에서도 대부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각 국가들이 비과세 규정을 유지하는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고에서는 이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로 정리한다.

첫 번째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부이긴 하지만 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논리적으로 비과세가 정당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항목이 실비변상적 급여이다. 급여의 형태로 주어지기는 하지만 근로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급여로 보기 곤란한 것을 말한다. 고용주가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에서 그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그것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고용주가 실비변상적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그 급여를 소득에 포함시킨 후에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도 있으며, 비과세 급여로 규정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의 비과세 항목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 실비변상적 급여가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① 특정 직종이나 특정 업무에서만 사용되는 제복 등, 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행경비 등, ③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업주가 지불한 교육훈련비, ④ 그 외 실비변상적 지급으로서 실물로 제공되어 그 혜택을 개별 근로자에게 분할하여 귀속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한 두 번째 경우는 행정의 효율성 관점에서 비과세하는 경우이다. 과세소득에 포함된 후에 소득공제를 하는 방식이 번거롭거나 과세 자체가 행정적으로 번거로운 반면 세수입은 많지 않아 과세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회사 내에서 현물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회사 내 숙소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다른 국가에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비과세한다. 우리나라에서 의무복무 중인 병사의 소득은 비과세되는데, 이 경우에도 행정적 필요성의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의무복무 중인 병사의 소득이 작아 모두 면세점 이하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모든 병사의 소득에 일정비율을 적용

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불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될 수 있다. 의무복무 중인 병사 급여는 과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득이 모두 면세점 이하이므로 정책적 지원의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과세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감소되었으므로 행정적 필요에 의한 비과세 필요성도 상당히 축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과세하는 것이 정당한 세 번째 범주는 정책적 목적에 의한 비과세이다. 정책적 목적의 비과세는, 특정 부문이나 특정 업종 또는 특정 계층의 납세자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당시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책적 목적에 의한 비과세는 사회적 배려의 관점에서 비과세하는 항목과 특정 근로 등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비과세하는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 관점에서 비과세는 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근로 능력이 낮은 자에게 귀속되는 급여를 비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대체로 면세점 이하의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대상이 되므로 앞서 언급한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의 비과세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특정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지원의 경우에는 비과세와 소득공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가능하면 소득공제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에 포함된 후에 공제하는 것에 비해 비과세는 처음부터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당국이 모니터링에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여 비과세의 지속 여부를 평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실비변상적 성격 또는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의 비과세 등의 성격과 복합되지 않고 특정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데만 목적이 있다면 비과세보다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과세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일몰기한을 두어 주기적으로 비과세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특정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의 비과세가 많은 편이다. 최근에 도입된 사례를 보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지원금 등이 있다.

**실비변상적 성격 또는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의 비과세 등의 성격과 복합되지 않고 특정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데만 목적이 있다면 비과세보다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항목 수가 많고  
그 성격도 다양하여 항목마다  
비과세 목적과 효과를  
분석하여 비과세 유지 및  
제도개편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 재검토 필요항목**

비과세 항목 중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항목은 다시 검토하여 과세로 전환하거나 비과세 규모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과세 근로소득은 항목 수가 많고 그 성격도 다양하여 항목마다 비과세 목적과 효과를 분석하여 비과세 유지 및 제도개편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를 고려하여 개별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비과세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제도 개편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의 특징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앞서 제시한 비과세 필요성에 부합하는지 평가한 후, 다음에서 정리하는 재검토 필요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재검토의 필요성과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는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의 방법으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할 수도 있고, 필요경비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필요경비 소득공제는 항목별 공제와 개산공제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항목별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라는 이름으로 개산공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로소득공제는 공제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므로, 비록 비용의 특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근로자가 보편적으로 지拂하는 비용은 근로소득공제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자가용 승용차 운영비의 경우, 상당히 많은 근로자에게 이 비용이 발생하며, 자가용 승용차를 운영하지 않는 근로자도 대중교통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국가에서는 출퇴근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교통비를 별도 항목으로 소득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개산공제인 근로소득공제의 공제율이 상당히 높으므로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특정 업종이나 그 외 특정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더라도, 비용을 특정할 수 없고, 해당 비용의 지출 여부나 지출의 구성에 근로자의 자의적 판단이 많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을 고려하여 특정 급여(예, 수당)를 지拂하더라도 그 급여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면, 특별한 위험을 고려하여 특정한 제복이나 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위험

을 고려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 등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험수당’과 같이 포괄적인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그 급여의 사용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의 보전이라기보다는 특정 근로에 부수되는 ‘추가적인 급여 또는 보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자들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인센티브 목적으로 제공하는 수당은 급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비과세’가 아닌 ‘세전 급여의 조정’을 통해서 사용자가 일정한 수준의 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정 직종의 위험수당, 벽지수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정책적 지원 목적의 비과세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제도를 도입할 때는 사회정책적 배려나 특정한 근로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의 비과세가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적 환경이 변화되어 지원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지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비과세 형태로 지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비과세 항목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면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무수당 비과세의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세계화된 사회에서 국내 근무와 국외 근무를 차별하여 국외 근무를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실업과 근로자의 과도한 근무시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근로장려세제라는 보편적인 근로장려 목적의 지원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무수당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 항목은 비과세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일몰기한을 두어 정기적으로 비과세 필요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정책적 지원 목적의 비과세는 다른 조세지출 항목이나 재정지출 항목과 중복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들 유사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개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면 비과세 항목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혜의 대상 등 요건과 수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비과세는 이러한 측면에서 다른 정책수단에 비해 비효율적이다. 또한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비과세는 다른 정책수단에 비해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는 적용대상자의 과세소득에서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같은 금액을 비과세할 때 받는 세부담 절감 혜택이 고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근로자들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인센티브 목적으로 제공하는 수당은 급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비과세’가 아닌 ‘세전 급여의 조정’을 통해서 사용자가 일정한 수준의 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산직 근로자  
야근수당과 국외 근로소득을  
비과세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일몰기한을 두어  
정기적으로 비과세  
필요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두지 않으므로 적절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특례나 재정지원에 비해 비효율적이다.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통계자료의 수집, 분석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지원의 효과가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다섯째, 납용의 가능성이 큰 경우 또는 세부담 절감효과가 과도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세로 전환하거나 비과세 금액을 최저한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특정 직종에 적용되는 수당을 비과세하면서 비과세 한도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수당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세부담을 낮추는 행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외에 사회적 배려나 특정한 정책적 지원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비과세 혜택이 그러한 배려의 필요성이 낮은 고소득층이나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항목을 비과세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비과세 항목의 경우에는 비과세의 필요성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과세 유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3.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규정의 개편

「소득세법」은 제20조에 근로소득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38조에서 예외규정을 통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조에서는 소득세 비과세 소득을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근로소득 중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의 예외규정과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의 비과세 소득이 모두 큰 범위로 보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제적 성질의 관점에서 시행령 제38조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한 것들이 법 제12조 제3항의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된 항목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중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의 경우 실비변상적 비용 지

급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으며, 행정적 편의성 관점에서도 비과세하는 것이 편리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용자가 종업원을 위해 가입한 단체 순수보장성보험이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70만원 이내, 임직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료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정책적 지원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담하고 직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의 합리성, 단순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행령 제38조의 근로소득 예외 규정을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 항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분석』, 2016.

김재진·박수진·이형민, 『주요국의 근로자와 사업자 소득세 공제제도 차등적용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조선일보』, 「법 개정 않고 정부, 근로시간 단축하나」, 2017. 5. 12.

Australia Tax Office(ATO), “Individual tax return instructions 2015–2016,” 2016. 6.

OECD, “OECD Factbook 2015~2016,” 2016.

####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http://www.law.go.kr)

미국 국세청, [www.irs.gov](http://www.irs.gov)

영국 국세청, [www.gov.uk](http://www.gov.uk)

일본 국세청, [www.nta.go.jp](http://www.nta.go.jp)

호주 국세청, [www.ato.gov.au](http://www.ato.gov.au)

IBFD, [www.ibfd.org](http://www.ibfd.org)

〈부표 1〉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별 도입 연도(「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법조문	비과세항목	시행연도 <sup>3)</sup>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1949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나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1957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1949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라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1975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1996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1975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사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1975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	비과세 학자금 <sup>1)</sup>	1949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sup>1)</sup>	1968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차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1972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1975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1975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파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1975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하	중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1975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	국의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975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1996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1990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현물 급식 <sup>2)</sup>	1978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2004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버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2006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2011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2017년

주: 1) 여비·학자금·가족부양료로 규정되어 1949년부터 시행

2) 1996년 이전의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속하던 식사 또는 식사대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자의 경우 비과세되었으나, 1994년 12월 법 개정시 비과세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등 개정법을 부칙에 의거 1996년부터 과세. 그러나 1996년 8월 법 개정시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1996년 8월 22일 시행령 제17조의 2를 신설하였으며 5만원 내의 식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

3) 시행연도는 조문신설 연도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공공정책포럼

## ■ 제51회 공공정책포럼

###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및 정부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격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유형 및 대응방안 모색

### 개요

- 주 제            공공기관 채용비리 유형 및 대응방안 모색
- 일 시            2017년 12월 13일(수), 07:30~09:30
- 장 소            서울 팔레스호텔 로얄볼룸A(1F)
- 진행순서
  - 07:30~08:00    조찬  
                  송대희    좌장
  - 08:00~08:40    주제 발표  
                  홍길표    백석대학교 교수
  - 08:40~09:30    자유토론
  - 09:30            폐회

\* 본 원고는 2017년 12월 13일 서울 팔레스호텔 로얄볼룸(1F)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유형 및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개최한 제51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발표 및 토론요약입니다. 주제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 기관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말씀

송대희/좌장

홍길표 교수님은 서울대 경영학 박사 출신으로 국내 인사경영 전문 분야의 대가입니다. 인사조직 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시고 2006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삼성, KT 등 민간 그룹 인사경영전략 컨설팅을 해오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유형 및 대응방안 모색입니다.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도 깊은 토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제발표 요약

공공기관 채용비리 유형 및 대응방안 모색

홍길표/백석대학교 교수

이 주제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보니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종 연구 결과물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연구된 중간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은 주제인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의 조언을 통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안이 모색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나타나면서 전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조사 후,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정책과제가

대두됐습니다.

본 연구는 어떻게 하면 채용비리 재발을 방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채용 프로세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공공기관에 가이드라인으로 배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담당 부처에서 채용비리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것인지, 공공기관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부분이나 우수사례(best practice)는 무엇인지 등을 소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채용 본연의 목적에 따라 공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관이 원하는 적격자를 선발해야 한다는 기능을 미리 예방 때문에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채용비리를 가장 많이 발표하는 곳이 감사원이지만 그 이외에 자체감사나 상위기관 등에서 감사 결과를 여러 개 발표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분석을 통해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공공기관’과 ‘비리’라는 키워드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2006년, 2010년 2011년에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근래에 다시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리’도 비슷한 시기에 관심도가 높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상관계수는 0.55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공공기관이 좀 더 좋은 이야기로 회자되면 좋겠으나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듯합니다.

채용비리 문제에 접근할 때는 크게 3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2014년도의 권익위 자료, 2015년도에 부처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조사된 국무조정실 자

료, 올해 8월에 있었던 감사원 조사입니다. 바로 이 감사원 조사가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나 문제인식을 폭발시킨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사들을 기반으로 이번에는 채용의 전체 프로세스 관점에서 접근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8일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입니다. 약 2,23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었는데 이 중 부정지시·채용비리 혐의 사례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상기관은 275개인데 지적사항이 2,000건이 넘는다고 한다면 기관당 평균 10건 가깝게 나타난 것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 엉망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이런 조사에서 단 한 건의 비리도 적발되지 않은 공공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몇몇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추후 현실감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채용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에 따라 접근하고 있습니다. 8월에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로 프로세스에 따라 분석해 보았습니다. 프로세스는 ‘인력계획 → 실행계획 → 모집공고 및 접수 → 서류전형 → 필기시험(직무능력, 인적성) → 면접시험(실무, 임원면접) → 채용’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각 단계별로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인력계획 단계에서 인사 결정권자가 임의적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하는 문제점, 실행계획 단계에서는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거나, 형식상으로만 계획이 수립되는 문제, 모집공고 단계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 공고를 생략하고 진행하거나 수립된 채용계획을 변경하여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문제, 서류전형에서도 평가기준을 무시하고 채점하는 경우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필기시험은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필기시험이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인재가 가지고 있는 잠재역량을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면접이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면접 단계에서는 면접점수의 임의 조작이나 내부위원으로만 면접을 진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채용 의사결정단계에서 결과가 뒤바뀌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채용절차를 ‘모든 공공기관들이 적용하는가’라고 하면, 공채는 모든 절차를 거치지만 소규모로 진행되는 특채나 비정규직 채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략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3가지 트랙을 가지고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우선 가장 대규모로 진행되는 공채 즉, 일반채용이 있을 수 있고 둘째로 긴급수요에 따른 소규모 긴급채용이 포함된 특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간과되어 온 부분이 비정규직 채용입니다. 최근까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서 비정규직 트랙이 또 다른 채용비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잠정적 가설을 두고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려 합니다.

먼저 대안모색을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접근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투명성 제고와 위험관리(risk management)관점, 인적 개입으로 인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실패요인에 대한 합리적 장치 마련, 마지막으로 처벌 및 불이익 장치·제도 마련입니다.

기존의 자료 중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감사원에서 조사된 내용으로 채용비리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총 335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되었는데 내용이 공개된 것은 '13년 이후 자료로

186건의 자료를 가지고 집중 분석을 하였습니다. 중복되거나 내용이 부실하여 분석이 어려운 경우 39건을 제외하고 147건으로 채용 프로세스 중 어디에서 채용비리가 발생되었는지 복수로 체크하여 보니 실제 체크된 건수는 555건이었습니다. 통상 하나의 비리 사건에 3건 정도가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공기업,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자치단체, 공기업이 제외된 공공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보니, 예상보다 정부부처의 건수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는 인사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일반직 채용에서는 시험지가 유출되는 특이 케이스가 아닌 이상 비리가 잘 발생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 같은 경우 공관 근무자 채용과 같은 사각지대에서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교육자치단체의 경우도 건수가 굉장히 적은데 이는 대상기관이 적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상 기관 수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공기업 146건, 지자체 168건, 공기업 제외 공공기관이 176건으로 이 세 개의 파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로 보면 채용공고, 서류진행, 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비리 발생 비중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면접전형에서 채용비리가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오히려 면접 전형 자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미 특정인을 뽑기 위해 면접 이전 단계에서 준비가 진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관장 개입 여부에 따른 채용비리 비중, 실무자의 실수 등 다른 요소에 의한 채용비리가 어느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관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여 실제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공공기관 유형별 조사결과를 보시면 준정부 및

기타공공기관에서는 채용계획 수립단계부터 논란이 있었고 서류전형과 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비리 발생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를 보시면 채용계획,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높은 비중이 나타남으로써 준정부 및 기타공공기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는 조금 특이합니다. 채용계획, 채용공고, 서류전형에서 높게 나타나면서 채용 초기단계에서 채용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변수와 사례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며, 도출된 결과를 보고해 기관에서 자체적인 시사점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의 가장 큰 시사점은 채용비리라는 것이 1건 적발 비리당 3.8개의 비리 유형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비리 적발은 10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37개의 비리에서 복합적인 비리가 발생했으며, 1건의 비리에서 최대 10개의 비리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한 분야(단계)만 잘 진행한다고 해서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응책을 단편적으로 매칭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유형별로도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생성된 제도 내에서 기관별로 활용할 때 수준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종합대응책이라고 하여 1~10까지 틀을 만들고 모든 기관에 적용하기보다는 기관별로 자신들의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 전통적 관점을 따르느냐, 최근의 트렌드를 따르느냐의 문제에서 미국 내부통제의 최근 추세는 4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준법감시(compliance), 중요사항 검증(assurance), 성과창출 지원(performance improve-

ment)기능이 있어야 하고, 위험징후를 포착(risk identifications)하여 예방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채용에서는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시 알리오를 통해서 공시하고 있는데 채용계획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공시해야 할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채용은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공시자료를 모두에게 공개할 것이 아니라 감시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부로 공개되어야 할 때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 프로세스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잡알리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데 이를 좀 더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위험징후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각 프로세스별로 어떤 위험 요소가 있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한국 현실에 맞도록 제안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초점입니다. 통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극 행정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팁도 함께 최종 연구 결과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기계약직과 청년인턴 문제를 간과할 수 있는데, 무기계약직 채용의 공정성이 과연 정규직에 준할만큼 이루어지는지, 청년인턴운영 상황 등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기계약직과 인턴채용의 공정성 강화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1년간 인턴으로 생활하다 채용에서 떨어진 분들의 경우에는 1년을 헛되어 보낸게 돼버렸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청년인턴제도가 대학생들의 교육 목적이 아니라 대학 졸업 후 취업 예비과정처럼 운영이 되다보니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

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블라인드·심층 면접, NCS 등을 도입하게 되면 채용업무는 2~3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의 업무로 변하게 됩니다. 내부에서 진행할 수 없어서 외부 기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출도 많고 규모가 큰 기관은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 기타공공기관을 보면 100억원 규모도 안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기관에 1,000만원 이상의 돈은 운영경비를 아껴도 나오기 쉽지 않은 액수입니다.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의무를 자꾸 기관에 요구할수록 어려운 기관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연구 범위에서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정규직 및 비정규직 채용비리 이외에도 임직원 승진 및 배치 문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성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청탁자 처벌, 기관장·고위임원 처벌은 관련 법규에 의해 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업무실행 실무자를 어떻게 처벌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당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해주지 않고 업무를 따랐다는 행위만 가지고 처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이러한 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질의응답

**강우희**/한국관광공사 부사장

**Q:** 최근 정규직화 경로 중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안내센터 근무자 등 특별한 직무가 주어지는 이들이 특별 채용에 해당되는데 그동안 과거 경력과 면접을 통해 채용해 왔습니다. 무기계약직도 NCS 등 채용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기관에서 아웃소싱 인원을 내부로 전환할 때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편입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규직 트랙 안에서 무기계약직 채용이 편입되는 것이 현재 정책의 큰 방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규직에 준하는 방향에서 선발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경규**/동국대학교 교수

**Q:** 제가 교수이다 보니 학생들 진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발제자께서 잠깐 말씀 하셨지만 저도 크게 동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1년 동안 채용형 인턴십을 하다가 탈락하는 학생들은 내 인생이 어디갔느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외국 학부 학생들을 보면 보통 3학년 여름쯤에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에서 인턴십을 하고 계약서를 받아 나옵니다. 이 경우 마지막 학년에 공부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입도선매 형식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취업생 입장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도 고민해 주면 좋겠습니다.

**A:**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박문규 과장) 저희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체험형과 채용형 인턴 두 가지가 있는데 채용형 인턴십에 선발된 학생들 중 3~40%가 탈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에서는 ‘노예계약이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후에 취업 불이익으로 연결되거나 시간 낭비라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태호**/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Q:** 인사담당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분이 말할 경우 환경상 안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청탁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기관의 경우에는 이를 막기 위해 면접 당일 임원을 추첨하여 그룹 배정을 하고 아침에 알려줍니다. 단계별 비리유형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비리유형 연구보다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A:**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외부청탁을 물리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어느 기관분으로부터 팁을 들었습니다. 내가 한 것으로 흔적이 남는 시스템이면 난 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흔적이 남지 않도록 어느 정도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는 큰 기관으로 보입니다. 사실 작은 기관들은 외부위원을 두 명 모시는 것도 힘든 경우가 많

습니다. 해당 기관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기관의 규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 책임감이 높아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사회 총체적 문제가 공공기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러한 주제가 한국사회를 새롭게 다듬어가는 길목, 여정이 되길 바라면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IPF

## 마무리말씀

**박문규**/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장

채용비리 관련하여 전수조사 진행 이후에 제도 개선 방안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현재 법사위에 있는데 곧 개정 작업이 될 것이고 모든 국민의 관심 분야라 어깨가 무겁습니다. 연구진들과 기관 의견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대국민 공모도 병행할 예정인데 좀 더 내실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충모**/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오늘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도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만큼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고 오늘 기관에서 주신 의견들 참고하여 현실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대희**/좌장

우리 반도체 등의 분야는 선진국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관행이나 의식구조는 좀 더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외부청탁 관련 말씀이 우리 문화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의식수준



#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이번 호 「재정동향」은 쉽니다.

---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7-12

### > 아메리카

#### [미국-2018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 최종 통과]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2월 22일 2018년부터 개정되는 세법개정안을 최종 승인함<sup>1)</sup>
  - 미 하원과 상원은 이견이 발생하는 법안에 대해 합의 절차를 거친 최종 세법개정안을 2017년 12월 20일 통과시킴<sup>2)</sup>

#### 1. 개인소득세<sup>3)</sup>

- 개인소득세는 과세제도 단순화를 위해 일부 공제항목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과세표준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를 제시함
  - 소득세 개정내용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 가. 개인소득세율 인하 및 최저한세 폐지

- 개인소득세율은 현행 7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계속 유지하며, 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에서 37%로 인하함
  - 미 하원은 누진세율 구조를 4단계로 개정하고 최고세율은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미 상원은 10~38.5%의 7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제안한 바 있음

〈표 1〉 미국의 소득세율 개정안(개인 단독신고 기준)

(단위: 달러, %)

현행 세율(2017년 기준)			개정된 세율(2018년 기준)		
이상	이하	세율	이상	이하	세율
0	9,325	10	0	9,525	10
9,326	37,950	15	9,526	38,700	12
37,951	91,900	25	38,701	82,500	23
91,901	191,650	28	82,501	157,500	25
191,651	416,700	33	157,501	200,000	32.5
416,701	418,400	35	200,001	500,000	35
418,401	-	39.6	500,001	-	37

1) 미 하원, <https://waysandmeans.house.gov/signed-law-first-overhaul-nations-tax-code-31-years/>, 접속일자: 2017.12.26.  
 2) United States-Tax reform bill passed by US Congress, News IBFD, 2017.12.21.  
 3) 최종 세법개정안 내용은 미 상원, 하원이 최종 합의하여 발표한 보고서(conference report)를 참고하여 작성함(출처: <http://docs.house.gov/billssthisweek/20171218/CRPT-115HRPT-%20466.pdf>, 접속일자: 2017.12.26.)



- 개인소득세의 최저한세 제도는 계속 유지하며, 최저한세 공제금액(AMT exemption)을 인상함
  - 최저한세 공제금액은 최저한세 과세표준 산출 시 공제하는 금액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공제한도를 현행 54,300달러(단독신고 기준)에서 70,300달러로 인상함
    - 부부 합산신고 시 현행 84,500달러에서 109,400달러로, 부부 개별신고 시 현행 42,250달러에서 70,300달러로 인상함

- 자녀세액공제는 현재 17세 미만 자녀 1인당 1,000달러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던 것에서, 자녀 1인당 2,000달러로 인상함
  - 또한, 자녀세액공제액을 감소시키는 소득기준을 인상하여 조정된 총소득이 40만달러(부부합산 신고기준) 초과 시 자녀세액공제액이 감소됨
    - 현행 규정에서는 조정된 총소득이 11만 1천달러(부부합산 기준) 초과 시 자녀세액공제액이 감소됨

나. 각종 공제제도 정비

- 미국은 과세제도 단순화 목적으로 각종 공제제도 중 일부를 폐지하였으며, 공제제도 폐지로 발생하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 표준공제, 부양가족공제를 확대함(〈표 2〉 참조)

- 부양가족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1인당 500달러의 세액공제를 허용함
  - 인적공제제도 폐지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임

1) 인적공제

- 각종 공제제도 폐지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표준공제금액을 현행 6,350달러(단독신고 기준)에서 1만 2천달러로 인상함
  - 홑벌이 신고자의 경우 표준공제금액은 1만 8천달러로, 부부합산 신고자의 경우 2만 4천달러로 인상됨
- 인적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부양가족 세액공제를 신설함
  - 인적공제는 납세자,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4,050달러를 소득공제하는 것임

2) 소득공제

- 총소득 공제항목(Above the Line Deduction; ALD)<sup>4)</sup> 중 위자료 지급액, 이사비용의 소득공제를 폐지함(〈표 2〉 참조)
  - 현행 규정에서 위자료 지급액은 지급자의 소득에서 공제하고, 수령자의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새로운 직장으로서의 근무로 발생한 이사비용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위자료 지급액, 이사비용공제 외에 총소득 공제항목 중 학자금 대출이자, 학비지급액, 의료비 저축계좌 납입액 등의 소득공제는 계속 허용함
    - 미 하원은 대부분의 총소득 공제항목(ALD)을 폐지하도록 제안한 바 있으나, 미 상원의 개정

4) 납세자의 총소득에서 조정된 총소득(AGI: Adjusted Gross Income)을 산출하기 위해 공제하는 항목임

안에 따라 대부분 유지하도록 함

- 의료비공제의 경우 완화된 공제 허용 기준을 201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함
  - 현재 의료비가 조정된 총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공제를 허용하며, 2018년부터 조정된 총소득의 7.5% 초과 시 의료비공제를 허용할 예정이었음
  - 미 하원은 의료비공제 폐지를 제안하였으나, 최종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음
- 미국의 주·지방정부에 납부한 세액의 소득공제는 폐지하나, 예외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재산세, 판매세액의 공제는 계속 허용함
  - 사업과 관련한 납부세액으로 사업용 자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이 있음
  - 단, 주·지방정부에 납부한 재산세액의 경우 사업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1만달러(부부합산 신고 기준)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허용함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공제를 폐지함
  - 현행 규정에서는 주택담보대출금액 1백만달러를 한도로 이자비용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미 하원은 주택담보대출금액 50만달러를 한도로 이자비용을 공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미 상원의 개정안에 따라 이를 폐지함
- 현금 기부금의 소득공제율을 50%에서 60%로 인상함
  - 또한, 기존에 대학 스포츠 경기 관람권 구입비용

도 기부금공제를 허용하던 것에서 허용하지 않도록 개정함

- 재해·도난 손실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비상상태로 선포한 재난<sup>5)</sup>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소득공제를 계속 허용함
- 조세지문 수수료, 업무관련 비용공제 등 기타 항목별 공제를 폐지함
  - 현행 규정에서는 기타 항목별 공제로 분류된 총지출액이 조정된 총소득의 2%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미 하원은 이를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미 상원의 개정안에 따라 이를 폐지함
- 또한, 고소득자의 항목별 소득공제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함
  - 현행 규정에서는 조정된 총소득이 261,500달러(단독신고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3%만큼 소득공제 허용액을 감소시키거나 이를 폐지하도록 개정함

### 3) 세액공제

- 미 하원이 제안한 장애인·경로자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비용 세액공제 폐지,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 일원화는 상원과 협의 결과 최종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기존의 장애인·경로자 세액공제, 전기차 구입비용,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기존 제도를 유지함

5) 스태프포드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에 따라 대통령이 비상상태로 선포한 재난이어야 함



〈표 2〉 미국의 소득세 과세체계

	총소득 (Gross Income)	항목	하원	상원	최종
(-)	총소득 공제항목 (Above the Line Deduction)	개인연금 납입액	유지	유지	유지
		학자금대출이자	폐지	유지	유지
		의료비저축계좌 납입액	폐지	유지	유지
		인정되는 학비	폐지	유지	유지
		이사비용	폐지	폐지	폐지
		위자료 지급액	폐지	유지	폐지
		정기예금 조기 해약 시 부과금, 자영업세의 50%, 자영업자가 납부한 의료보험료, 자영업자가 불입한 연금액	유지	유지	유지
		교사비용, 인정되는 학비	유지	유지	유지
	총조정소득 (Adjusted Gross Income: AGI)				
(-)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액 (Itemized Deduction) 중 큰 금액	표준공제액	6,350 → 12,200 달러로 인상	6,350 → 12,000 달러로 인상	6,350 → 12,000 달러로 인상
		*항목별공제액:			
		의료비	폐지	유지	유지
		주·지방정부 세금납부액	폐지	폐지	폐지 <sup>1)</sup>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지급액	이자비용 공제 축소	폐지	폐지
		공익성 기부금	현금기부금 공제율 50%에서 60%로 인상	현금기부금 공제율 50%에서 60%로 인상	현금기부금 공제율 50%에서 60%로 인상
		재해·도난 손실	폐지	폐지	폐지
		기타 항목별 공제	유지	폐지	폐지
(-)	인적공제 (Exemption)		폐지	폐지	폐지
	과세소득 (Taxable Income)				
(×)	세율	7단계, 10, 15, 25, 28, 33, 35, 39.6%	4단계 12, 25, 35, 39.6%	7단계 10, 12, 23, 25, 32.5, 35, 38.5%	7단계, 10, 12, 23, 25, 32.5, 35, 37%
	산출세액 (Income Tax)				

〈표 2〉의 계속

	총소득 (Gross Income)	항목	하원	상원	최종
(-)	세액공제 (Tax Credits)	자녀세액공제	1,000 → 1,600 달러로 인상	1,000 → 2,000 달러로 인상	1,000 → 2,000 달러로 인상
		부양가족 세액공제 (신설)	부양가족 명당 300달러 세액공제	부양가족 명당 500달러 세액공제	부양가족 명당 500달러 세액공제
		연로자 혹은 장애인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입양비 세액공제	폐지(단, 교육비 세액공제는 AOTC만 유지하고 모두 폐지)	유지	유지
		자녀보육비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 세액공제, 최저한세 세액공제, 저소득 세액공제, 초과납부 사회보장세	유지	유지	유지
	부담세액 (Income Tax)				
(+)	기타 소득세액 (Other Tax)				
	총부담세액 (Total Tax)				
(-)	원천징수세액 (Tax Withheld)				
(-)	추정납부세액 (Estimated Payments)				
	납부세액 (Amount you Owe)				

주: 1) 단, 사업관련하여 납부한 재산세, 판매세액은 공제 허용, 사업 관련하지 않더라도 개인 재산세액은 1만달러(부부합산신고 기준) 한도로 공제 허용  
출처: 김영수, 『미국세법 2016』 참조하여 저자 수정

4) 도관회사 소득세부담 감소

- 도관회사 소득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관회사 소득의 20%를 소득공제함
  - 도관회사 소득은 자영업자(sole proprietorships),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S법인[이하 “도관회사(pass through entity)”]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임
  - 미 하원은 도관회사 소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5%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미 상원의 개정안에 따라 도관회사 소득에 소득공제를 시행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양원 간 합의 후 공제율을 20%로 인하함

- 도관회사 소득공제의 한도를 규정하였으며, 과세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도관회사 소득공제의 한도금액은 도관회사가 지급한 총급여(W-2 wages) 지급액에서 각 파트너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50%와 사업목적으로 구입한 자산금액의 2.5% 중 큰 금액임
  - 단, 총과세소득이 15만 7천달러(부부합산 신고 시 31만 5천달러) 미만인 경우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또한, 고소득자가 법률, 회계, 컨설팅, 금융자문과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도관회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은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예외적으로 엔지니어링, 건축서비스업 관련 도관 회사 소득은 공제를 허용함
  - 총소득이 15만 7천달러(부부합산 신고 시 31만 5천달러) 미만인 경우 인적용역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이더라도 소득공제를 허용함

5) 각종 비과세소득제도 정비

- 주거주지 부동산 양도소득의 비과세 요건은 현행 규정을 계속 유지함
  - 현행 규정에서는 양도 이전 5년 중 2년 이상 주택을 보유 및 거주한 경우 25만달러(부부합산 신고 시 50만달러)를 한도로 양도소득의 비과세를 허용함

- 미 상원과 하원 모두 양도 이전 8년 중 5년 이상 주택을 보유 및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에 비과세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이 사비용은 과세소득으로 전환함

- 이외에 미 하원은 고용주가 종업원에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 중 일부를 과세소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최종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음

- 미 하원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집 임대료, 식사비용과 보육시설비용(dependent assistance program), 입양비용도 과세소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표 3〉 소득세 상·하원 개정안 및 최종 개정안 비교

소득세	현행	미 하원	미 상원	최종
소득세율 인하	7단계, 10, 15, 25, 28, 33, 35, 39.6%	4단계, 12, 25, 35, 39.6%	7단계, 10, 12, 22, 24, 32, 35, 38.5%	7단계, 10, 12, 22, 24, 32, 35, 37%
최저한세 폐지	유지	폐지	유지	유지
인적공제	납세자, 배우자,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1인당 4,050달러 공제	폐지	폐지	폐지
표준공제	개인 6,350달러, 홑벌이가장 9,350달러, 부부공동신고 12,700달러	개인 12,200달러, 홑벌이가장 18,300달러, 부부공동신고 24,400달러	개인 1만 2천달러, 홑벌이가장 1만 8천달러, 부부공동신고 2만 4천달러	개인 1만 2천달러, 홑벌이가장 1만 8천달러, 부부공동신고 2만 4천달러
자녀세액공제	17세 미만 자녀 인당 1천달러씩 세액공제 (총소득이 11만달러 초과 시 세액공제금액 감소)	자녀세액공제 1,600달러로 인상 (총소득이 23만달러 초과 시 세액공제금액 감소)	자녀세액공제 2천달러로 인상 (총소득이 50만달러 초과 시 세액공제금액 감소)	자녀세액공제 2천달러로 인상 (총소득이 40만달러 초과 시 세액공제금액 감소)
부양가족 세액공제 (신설)	-	17세 미만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인 당 300달러씩 공제허용	17세 미만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인 당 500달러씩 공제허용	17세 미만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인 당 500달러씩 공제허용

〈표 3〉의 계속

소득세	현행	미 하원	미 상원	최종
교육비공제	공제 허용	폐지	유지	유지
학자금대출 이자공제	공제 허용	폐지	유지	유지
의료비공제	공제 허용	폐지	유지	유지
재해손실공제	공제 허용	폐지	폐지	폐지
위자료 지급액	공제 허용	폐지	유지	폐지
의료비 저축계좌	공제 허용	폐지	유지	유지
주택 담보대출 이자공제	대출금 1백만달러 한도로 발생한 이자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대출금 50만달러 한도로 발생한 이자부분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2017년 11월 2일 이후 발생하는 대출금액)	폐지	폐지
주·지방정부 납부세액 공제	주정부, 지방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공제 가능	폐지(예외: 사업과 관련한 재산세, 판매세 공제 허용, 사업관련 되지 않아도 개인 납세자의 재산세액은 1만달러(부부합산신고 기준) 한도로 공제 허용)	하원과 동일	좌등
기타 (납세자 세무서 신고비용, 이사비용)	공제 허용	폐지	폐지	폐지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총액에 대해 AGI의 50%(사적단체인 경우 AGI의 30%)를 한도로 공제가 가능함	현금기부 시 공제율 인상 (현금기부는 AGI의 60%를 한도로 공제 허용)	하원과 동일	좌등
고소득자 공제 제한규정	조정된 총소득이 261,500달러를 (단독신고 기준)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항목별 공제액 감소시킴	폐지	폐지	폐지
세액공제	- 경로자, 장애인 세액공제 허용 - 임양비 세액공제 허용 - 전기차 구입비용 세액공제 허용 -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AOTC, HSC, LLC 운영	모두 폐지 (단, 교육비 세액공제는 AOTC로 일원화하고 나머지만 폐지)	유지	유지
도관회사 소득과세	-	도관회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최대 25%의 소득세율을 적용함	도관회사 소득 23%로 공제허용	도관회사 소득 20%로 공제허용



〈표 3〉의 계속

소득세	현행	미 하원	미 상원	최종
주거주지 부동산 양도소득 비과세	주거주지에 양도일 이전 5년 중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25만달러(부부합산 신고 시 50만달러)까지 비과세 허용	거주, 보유요건 개정하여 8년 중 5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 거주해야 비과세 허용 (5년마다 1번 사용 가능) AGI가 50만 초과시 비과세한도금액 초과금액만큼 감소	최종, 고소득자 한도규정 없음	현행 규정 유지
시행시기	-	2018년부터 시행	2018년~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2018년~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2. 법인소득세

- 법인세는 기업의 미국 이전, 미국 내 투자 증대 목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설비투자금액 전액 공제, 해외소득을 미국으로 송금 시 비과세하도록 개정함
  - 법인세법 개정안은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또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해외자회사(CFC) 소득 과세 강화, 계열사간 대금지급 거래 시 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함

### 가. 법인세율 인하

- 법인세율은 2018년부터 기존 15~35%의 4단계 누진세율구조를 21%의 단일세율로 개정하는 동시에 법인의 최저한세는 폐지함
  - 이전에 납부한 최저한세는 향후 발생하는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미공제 세액은 환급을 허용함

-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미공제 세액의 50%를 환급하며, 2021년부터는 미공제 세액의 100%를 환급함

### 나. 각종 공제제도 개정

- 주요 개정내용으로 1) 유형자산 구입비용의 전액 감가상각 허용, 2) 소규모사업자로 보는 소득기준 인상, 3) BEPS Action 4 권고사항에 따라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 개정, 4) 이월결손금의 소급적용 규정 폐지 등이 있음
- 사업용 자산 구입비용 공제를 현행 50만달러에서 1백만달러로 인상하며, 공제한도가 감소되는 기준 금액도 현행 2백만달러에서 250만달러로 인상함<sup>6)</sup>
  - 현행 규정에서는 사업용 자산 구입 시 구입비용의 50만달러까지 비용공제를 허용하며, 자산 구입가액이 2백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큼 공제금액을 감소시킴

6) 미국 세법(IRC) §179

- 또한, 향후 5년간 적격 유형자산 구입 시 자산 구입 비용의 100%만큼 추가상각(bonus depreciation)이 가능하며, 2023년부터 추가상각률은 단계적으로 축소함
  - 현행 규정에서는 자산가액의 50%만큼 추가상각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가상각률을 100%로 인상한 것임
    - 자산가액은 정규 감가상각 전 자산가액이며, 사업용 자산 구입비용 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추가상각 공제를 적용함
  - 적격 유형자산은 동산이고, 내용연수가 20년 미만인 자산이며, 2017년 9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한 자산이어야 함
    - 적격 유형자산에 미국에서 75% 이상 제작되고, 2017년 9월 27일 이후 상영되는 영화, TV 프로그램, 라이브공연, 전시회와 같은 작품도 포함함
  - 추가상각률은 2023년부터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2027년부터는 자산구입액의 추가상각을 허용하지 않도록 개정함
- 소규모사업자 판단 소득기준 금액은 현행 5백만달러에서 2천 5백만달러로 인상함
  - 소득기준금액은 지난 3년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되면 현금주의 회계기준, 장기계약 완성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며,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BEPS Action 4의 권고사항에 따라 이자비용이 조정된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함
  - 현행 규정에서는 부채비율이 150%를 초과하고, 이자비용이 조정된 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고 있음
  - 조정된 소득은 이자수익, 이자비용, 도관회사 소득공제, 이월결손금 반영 전 과세소득임
  - 또한, 미공제 이자비용은 미 상원의 개정안에 따라 기간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함
- 이월결손금 공제는 소급공제를 폐지하고, 기간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함
  - 이월결손금 공제는 과세소득의 90%를 한도로 공제 가능함
  - 예외적으로 농업에 한해 소급적용 1년을 허용하며, 자산 및 재해손실 관련 보험회사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소급공제 2년, 이월공제 20년을 계속 적용함
- 이중과세 방지 목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배당소득 공제율'을 축소함
  - 미국기업이 20% 이상 지분 보유 시 배당소득의 80%를 공제하던 것을 65%로 축소하며, 20% 미만 지분 보유 시 배당소득의 70%를 공제하던 것을 50%로 축소함
- 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 동종자산 교환 시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하지 않음
  - 현행 규정에서는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 한 사업용 혹은 투자 목적의 동종자산 교환 시 자본이익에 과세이연을 허용함



- 연구개발비(R&D)는 자본화하여 일정 기간 동안 상각하며, 국내 R&D비용은 5년간, 해외 R&D비용은 15년간 상각함
  - 현행 규정에서 법인은 연구개발비를 1차 연도에 전액 상각하거나, 지출에 대한 효익이 발생하는 달로부터 60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상각이 가능함
  - 이 개정안은 미 상원과 하원의 협의 결과 2022년부터 시행됨
- 일부 자본출연금(contribution to capital)은 과세 소득으로 전환함
  -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자본출연금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공사보조금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액임
  - 현행 규정상 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현금, 자산 등 자본출연금을 받거나, 자본출연금을 받는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자본출연금은 비과세함
  - 이는 각 주정부, 지방정부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국내생산 활동에 대한 소득공제, 특정 채권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함
  - 국내생산활동 공제는 국내생산으로 발생한 매출 총이익과 해당연도의 과세소득 중 작은 금액의 9%만큼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며, 이를 폐지함

- 신재생에너지 채권(new clean renewable energy bonds), 에너지 절감시설 채권, 교육기관 건설 채권(qualified school construction bonds)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함
- 이외에 미 하원이 폐지를 제안한 세액공제제도 대부분<sup>7)</sup>은 유지하도록 합의하였으며, 오래된 건축물 재건비용의 세액공제만 폐지함
  - 단,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재건비용의 세액공제는 계속 유지함

#### 다. 해외소득 및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 규정

- 주요 개정내용으로 1) 해외소득에 대해 원천지 과세제도(territorial tax system)<sup>8)</sup>로 전환, 2) 누적된 해외소득에 12%의 세율로 일회성 과세, 3)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일부 CFC소득에 과세, 4) 다국적기업의 계열사 간 대금지급 시 법인세 추가 과세가 있음
- 1) 해외소득 과세제도 원천지 과세제도로 전환
  -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원천지 과세제도로 전환하여, 미국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비과세(이하 '배당소득 면제제도')할 것을 제안함
    - 해외소득의 비과세가 허용되는 미국기업은 일반 법인(C법인)으로 부동산투자 신탁 및 투자전문회

7) 미 하원이 폐지를 제안한 세액공제 항목은 회귀의약품 제조업자의 테스트비용 세액공제, 고용주가 종업원에 지급한 자녀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세액공제, 고용창출 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 신시장 세액공제 등이 있음

8) 속지주의 과세체계 또는 영토주의 과세체계라고도 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제도임.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전 세계소득 과세하는 'Worldwide tax system'이 있으며 전 세계소득 과세체계, 속인주의 과세체계라고도 함

사는 제외함

- 해외자회사는 미국주주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이하 “CFC”)임
- 현행 규정은 해외자회사 소득을 미국에 배당형태로 지급 시 미국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하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 발생하는 해외 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 됨

- 향후 해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비과세함에 따라 개정 이전 과세되지 않은 해외소득에 일회성 과세하며, 누적된 해외소득 중 현금 보유분은 15.5%, 현금 이외에 자산 및 설비에 투자된 경우 8%의 세율로 과세함
  - 과세대상 소득은 1986년 이후부터 2017년 11월 2일 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누적된 ‘과세되지 않은 세무상 배당가능이익(earnings & profit)<sup>9)</sup> 중 큰 금액에서 미국법인이 보유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소득임
    - 누적된 해외소득금액 계산 시, 1986년 이후부터 누적된 이월결손금도 반영함
  - 현금은 현금, 외상매출금, 유동자산의 시장가치,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단기대출금을 포함함
- 누적된 해외소득에 일회성으로 과세되는 세액은 8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공제함

- 분할납부 시 5년차까지는 총납부세액의 8%를 균등납부해야 하며, 6년차에는 15%, 7년차에는 20%, 8년차에는 25%를 납부해야 함
- 미 상원의 개정안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기간 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최종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음

## 2)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규정

### 가) 해외자회사 소득의 일부 과세

- 해외자회사(CFC) 소득 중 저세율 과세 무형자산 소득(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은 미국 법인의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함
  - 과세대상인 ‘저세율 과세 무형자산 소득’은 해외자회사 과세표준에서 유형자산을 통한 수익을 제외한 금액임
    - 저세율 과세 무형자산 소득(GILTI)=[해외자회사 과세표준-(해외자회사의 사업활동에 사용된 평균 유형자산 합산금액<sup>10)</sup>×10%-해외자회사 이자비용 합산금액]×미국주주 지분율<sup>11)</sup>
  - 이는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저세율국에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고 무형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통해 미국 내 소득을 이전하고, 소득을 해외 자회사에 유보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9)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은 재무회계상 이익잉여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세법에 따라 계산된 법인의 배당능력을 의미하며, 과세표준에 면세소득, 배당소득공제 등을 가산하고, 비용불공제 항목 등은 차감하여 계산함

10) 평균 유형자산가액은 과세연도의 각 분기별 유형자산 장부가액(유형자산-감가상각비)의 평균값임

11) 해외자회사가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이 많은 경우 또는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 과세대상 소득은 더 커지게 됨



- 저세율 과세 무형자산 소득(GILTI)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50%의 소득공제를 허용하며, 2026년부터 공제율을 37.5%로 감소시킬 예정임

나) 다국적기업의 계열사 간 대금 지급 거래 시 법인세 추가 과세(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BEAT tax)

- 미국 법인이 해외계열사에 감가상각 자산과 관련된 대금(base erosion payments) 지급 시, 해당 지급액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함
  - 과세대상 미국 법인은 소규모법인, 투자법인을 제외한 일반법인으로 지난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억달러 이상이거나, 계열사에 지급한 금액이 총 비용 공제액의 3% 이상인 법인임
  - 감가상각 자산과 관련된 대금은 자산 구입액, 로열티 지급액 등이 있으며, 매출원가 관련 대금을 제외한 모든 지급액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12) 13)**
  - 이는 다국적기업이 해외자회사의 자산을 높은 가격에 구입하거나, 로열티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미국 내 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법인세 과세액은 해외 계열사에 지급한 금액을 가산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정상적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임
  - 정상적 법인세액은 일반 법인세율 21%를 적용한 세액이며, 법인세액 산출 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않음

- 해외 계열사 대금지급액에 대한 과세율은 2026년부터 12.5%로 인상될 예정임

해외계열사 대금 지급거래에 대한 추가 과세액 (BEAT tax)=①-②

- ① (미국법인의 과세표준+해외 계열사에 지급한 금액(감가상각 자산 관련한 지급액만)×10% (2026년부터 12.5%로 인상)
- ② 미국법인의 과세표준×21%-세액공제(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외)

- 즉, 해외계열사에 지급한 금액을 가산한 과세표준에 10%를 적용한 세액과 미국의 법인세율 21%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과세하는 것임

- 따라서, 미국법인이 해외계열사에 로열티, 자산구입액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클수록 추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이 커지게 됨

다) BEPS Action 2에 따른 혼성불일치 권고사항 도입

- 미 상원은 BEPS Action 2 권고사항에 따라 혼성실체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혼성거래에 따른 대금 지급 시 비용공제를 제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시행령은 향후 발표할 예정임

12) 미 하원은 원자재, 재고자산 구입대금 등 매출원가와 관련된 대금 지급 시 해당지급액에 과세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최종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음  
 13) KPMG, "Conference Agreement for H.R.1, Tax Cuts and Jobs Act—Initial Observations," 2017.12.18., p. 128.

〈표 4〉 상속 · 증여세 상 · 하원 개정안 및 최종 개정안 비교

	현행	미 하원	미 상원	최종
법인세율	4단계, 15, 25, 34, 35%	20%의 단일세율 (2018년부터 시행)	20% 단일세율 (2019년부터 시행)	21% 단일세율 (2018년부터 시행)
사업용 자산 구입비용 공제금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용자산 구입비용 기본공제: 사업용자산 구입 시 50만달러를 한도로 기본공제 허용 (자산구입액 200만달러 초과 시 초과금액만큼 공제금액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제허용금액 5백만달러로 인상 (자산구입액 2천만달러 초과 시 초과금액만큼 공제금액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제허용금액 1백만달러로 인상 (자산구입액 250만달러 초과 시 초과금액만큼 공제금액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제허용금액 1백만달러로 인상 (자산구입액 250만달러 초과 시 초과금액만큼 공제금액 감소)</li> </ul>
설비투자금액 전액공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허용</li> <li>추가 감가상각 (bonus depreciation) 허용: 정규상각 전 자산가액 (사업용자산 구입비용 공제 시 공제금액 반영)의 50%만큼 추가공제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5년 (2017/09/27~2022/12/31) 간 구입한 적격자산 (동산, 내용연수가 20년 미만, 납세자가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함)에 대해 추가상각 100%를 허용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동, (단, 적격자산 범위 확대하여 미국에서 75%이상 제작된 작품에도 100% 추가상각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 상원의 안과 동일, 2023년부터 추가상각율을 20%씩 감소시켜 2027년에는 추가상각을 허용하지 않음</li> </ul>
이자비용 공제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채비율 기준 이자공제 제한 규정</li> <li>부채비율이 150% 초과하고, 이자비용이 조정된 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공제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손익기준 이자공제 제한 규정</li> <li>조정된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함</li> <li>조정된 소득=당기순이익에 감가상각비, 이자수익, 이자비용, 이월결손금이 반영되지 않은 소득</li> <li>미공제금액 5년간 이월공제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손익기준 이자공제 제한 규정</li> <li>조정된 과세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경우</li> <li>조정된 과세소득= 이자수익, 이자비용, 도관회사 소득공제, 이월결손금이 반영되지 않은 소득 (미 하원의 개정안과 달리 감가상각비를 반영함)</li> <li>미공제금액 제한없이 공제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 상원의 개정안과 동일</li> </ul>
소규모 사업자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사업자, 파트너십, S법인의 경우 총소득액이 지난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백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규모 사업자로 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규모사업자로 보는 소득기준금액 25백만달러로 인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규모사업자로 보는 소득기준금액 15백만달러로 인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규모사업자로 보는 소득기준금액 25백만달러로 인상</li> </ul>
이월 결손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급공제 2년, 이월공제 20년 허용, 한도: 최저한세 과세표준의 9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급공제 적용 폐지 (단, 소규모기업, 농업, 재해로 인한 손실의 경우 소급적용 1년 허용),</li> <li>이월공제 20년 계속 허용</li> <li>한도: 과세소득 (결손금 공제전)의 9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급공제 적용 폐지 (단, 농업의 경우 1년 소급적용 허용)</li> <li>이월공제 기간제한 없이 허용</li> <li>한도: 과세소득 (결손금 공제전)의 8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급공제, 이월공제 규정 미 상원의 개정안과 동일</li> <li>한도: 과세소득 (결손금 공제전)의 90%</li> </ul>



〈표 4〉의 계속

	현행	미 하원	미 상원	최종
R&D 비용 공제	연구개발비 1차연도에 전액공제 or 지출에 대한 효익이 발생한 날로부터 60개월 이상 상각 가능	국내연구개발비용 5년간 상각, 해외연구개발비용 15년간 상각 (시행시기: 2023년부터 시행)	국내연구개발비용 5년간 상각, 해외연구개발비용 15년간 상각 (시행시기: 2026년부터 시행)	국내연구개발비용 5년간 상각, 해외연구개발비용 15년간 상각 (시행시기: 2022년부터 시행)
배당소득 공제 축소	기업의 이중과세방지 목적으로 지분율에 따라 배당소득의 70%(지분율 20%이하), 80%(지분율 20% 이상), 100%(지분율 80%) 공제함	-	• 공제율 70% → 50%로 축소 • 공제율 80% → 65%로 축소	• 공제율 70% → 50%로 축소 • 공제율 80% → 65%로 축소
국내생산활동 공제	국내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국내생산 매출액 - 매출원가)과 과세소득 중 작은금액의 9%를 소득공제 가능함 *국내생산활동: 제조, 광산, 전기, 수도공급, 영화산업, 국내건설 등 • 한도: 임금지급액의 50%	폐지	폐지	폐지
법인 세액공제	희귀약품 제조업자의 테스트비용 세액공제, 고용주가 종업원에 지급한 자녀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세액공제, 역사적 건축물 재건비용 세액공제, 고용창출 세액공제(WOTC), 신시장 세액공제	폐지	유지	역사적 건축물 재건비용 세액공제만 폐지, 나머지 모두 유지
동종자산 교환 시 과세이연	사업용, 투자목적의 부동산, 유형자산을 동종자산과 교환 시 자본이익 과세이연	사업용 부동산 제외한 동종자산 교환 시 과세이연 허용 폐지	사업용 부동산 제외한 동종자산 교환 시 과세이연 허용 폐지	사업용 부동산 제외한 동종자산 교환 시 과세이연 허용 폐지
자본출연금 과세	• 비주주로부터 현금, 자산으로 받은 자본출연금 (contribution to capital) 과세하지 않음 • 현금, 자산을 출연받고 주식발행하는 경우, 대가를 받지 않는 한 이익, 손실 인식하지 않음	자본출연금 과세소득으로 전환 (단, 주식 공정가치만큼 주주가 출한 경우 자본출연금에 계속 비과세 함)	-	• 자본출연금의 비과세소득 규정은 유지하고, 자본출연금에 과세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 •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본출연금 및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보조금은 과세대상 자본출연금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포함

〈표 4〉의 계속

	현행	미 하원	미 상원	최종
해외소득 과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세계소득 과세제도</li> <li>• 해외 사업소득 미국 내 송환 시 과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지소득 과세제도</li> <li>• 해외 사업소득 미국 내 송환 시 과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지소득 과세제도</li> <li>• 해외 사업소득 미국 내 송환 시 과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지소득 과세제도</li> <li>• 해외 사업소득 미국 내 송환 시 과세</li> </ul>
누적된 해외소득에 일회성 과세	-	1986년 이후 누적된 소득 중 현금보유분은 12%, 설비에 투자된 금액 5%	1986년 이후 누적된 소득 중 현금보유분은 10%, 설비에 투자된 금액 5%	1986년 이후 현금 누적액 15.5%, 설비에 투자된 금액 8%
해외 자회사 소득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자회사(CFC)의 수동소득(subpart F) 과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자회사(CFC)의 수동소득(subpart F) 외에 저세율 무형자산 소득 (foreign high return)도 과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자회사(CFC)의 수동소득(subpart F) 외에 저세율 무형자산 소득 (Global Income Low-Taxed Income; GILTI)도 과세 (미 하원의 개정안과 저세율과세 무형자산 소득 계산방법에 차이)</li> </ul>	해외자회사 수동소득 (Subpart F)외에 저세율 무형자산 소득에도 과세 (미 상·하원의 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GILTI소득 계산방법 합의) *GILTI=[해외자회사 과세표 - (해외자회사의 사업활동에 사용된 평균 유형자산 합산금액 × 10% - 해외자회사 이자비용 합산금액)] × 미국주주 지분율
다국적 기업의 이자비용 공제 추가 제한	-	도입	도입	도입 안함
다국적 기업 계열사 간 대금지급액에 과세 (BEAT세)	-	매출원가, 감가상각자산 관련 대금 해외계열사에 지급 시 20%의 세율로 소비세 과세	조정된 과세표준의 10%와 조정된 법인세액 중 큰 금액 *조정된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감가상각 자산관련 해외계열사 지급액 + 조정된 법인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외)	미 상원의 안과 동일 (단, 2026년부터 세율을 조정된 과세표준의 12.5%로 인상)
혼성불일치 방지 규정	-	-	Action 2 권고사항인 우선규정 도입	Action 2 권고사항인 우선규정 도입

### 3. 상속 · 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기본공제(basic exemption) 금액을 현행 500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2배 인상함
  - 단,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된 공제액을 적용함

- 미 하원은 상속세 및 세대생략세를 폐지하며, 증여세는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35%로 인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최종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음



〈표 5〉 법인세 상·하원 개정안 및 최종 개정안 비교

	현행	미 하원	미 상원	최종
상증세 기본공제금액 인상	5백만달러	1천만달러로 2배 인상, 2018년부터 시행	1천만달러로 2배 인상, 2018년~2025년까지 한시적 적용	1천만달러로 2배 인상, 2018년~2025년까지 한시적 적용
상속세 및 세대생략세 폐지	운영	폐지, 2024년부터 시행	유지	유지
증여세 최고세율	40%	35%, 2024년부터 시행	40%	현행세율 40% 유지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 유럽

**[덴마크-법인 및 개인사업소득 관련 세제 개편안 확정]**

- 덴마크 정부는 법인 및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제 개편안을 2017년 11월 12일자로 확정함<sup>14)</sup>
  - 사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의 연구개발(R&D) 활동 및 개인의 투자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
  - 개정안은 늦어도 2019년 이전까지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법인세는 R&D 비용 공제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개정됨
  - 현행 R&D 비용 공제율은 100%나 이를 2026년 110%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함
    - 2019년(101.5%) → 2020년(103%) → 2021년(105%) → 2023년(108%)
-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들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함
  -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 투자액의 일정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허용
    - 2019년~2022년: 연간 40만덴마크크로네(DKK) 한도 내에서 투자액의 50%까지 공제
    - 2023년부터: 연간 80만덴마크크로네(DKK) 한도 내에서 투자액의 50%까지 공제
  -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특정펀드에 출자한 개인들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 허용
    - 2019년~2022년: 연간 12만 5천덴마크크로네(DKK) 한도 내에서 투자액의 50%까지 공제
    - 2023년부터: 연간 25만덴마크크로네(DKK) 한도 내에서 투자액의 50%까지 공제
- 개인의 주식관리계좌 및 주식 현물급여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함
  - 개인의 주식관리계좌(Share Savings Account)

14)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7-11-22\\_dk\\_2.html&WT.z\\_nav=crosslinks&hash=tns\\_2017-11-22\\_dk\\_2](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7-11-22_dk_2.html&WT.z_nav=crosslinks&hash=tns_2017-11-22_dk_2), 접속일자: 2017.12.26.)  
KPMG(<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7/11/flash-alert-2017-176.html>, 접속일자: 2017.12.27.)

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17%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동 계좌의 투자자산 규모에는 한도를 두되 2022년에는 20만 덴마크크로네(DKK) 수준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인상

-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주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비중 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 인상함
  - 스타트업 기업의 종업원에 대해서는 연봉의 50%까지 주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도를 높힘
  - 급여로 제공된 주식은 양도 시점까지 과세가 지연되고 주식양도세율(최고 42%)이 개인소득세율(최고 56%)보다 낮다는 점에서 세제혜택이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 [룩셈부르크-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에 관한 과세당국 고시]

- 룩셈부르크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에 대한 고시(Circular L.G.-A. No.61)를 2017년 12월 8일자로 발행함<sup>15)</sup>
  - 룩셈부르크의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fund)가 제한세율 등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서, 과세당국으로부터 거주자증명(certificate of residence)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음

- 이번 고시에서는 적용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명시하고, 조세조약상 거주자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조약 체결 사례들을 제시함

- 동 고시에서는 거주자증명 발급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들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함

- 처분가능증권에 대한 집합투자단위(Units for Collective Investments in Transferable Securities, UCITS)<sup>16)</sup>
- 특별투자펀드(Specialized Investment Funds, SIF)<sup>17)</sup>
- 유보대체투자펀드(Reserved Alternative Investment Funds, RAIF)<sup>18)</sup>

- 동 고시에서는 거주자증명을 바탕으로 집합투자구에 대해 조세조약상 혜택이 가능한 상대방 체결 국가 리스트를 제시함

- 고시일 기준으로 총 55개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대해 룩셈부르크 집합투자구에 대한 조약상 혜택이 부여될 수 있음을 명시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15)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7-12-11\\_lu\\_1.html&WT.z\\_nav=Navigation](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7-12-11_lu_1.html&WT.z_nav=Navigation), 접속일자: 2017.12.26.)

Deloitte(<https://www.taxathand.com/article/8921/Luxembourg/2017/Guidance-on-certificate-of-tax-residence-for-investment-funds-updated>, 접속일자: 2017.12.26.)

16) 공모로 조달된 지분증권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투자기구

17) 투자위험 분산 및 자산 운용에 따른 투자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로서, 계약형펀드(contractual fund) 및 투자회사형 기구(SICAV 또는 SICAF)로 구분됨

18) 투자위험 분산 및 투자결과 배분을 위해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당해 지분이 1인 이상의 경험있는 투자자들에 의해 소유되는 펀드



**[아일랜드-애플에 제공한 조세혜택금액 환수 관련 합의결과 발표]**

-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2017년 12월 4일 아일랜드가 애플로부터 환수하는 조세혜택금액 130억유로는 에스크로 계좌(escrow fund)에 예치하기로 애플과 합의하였음을 발표함<sup>19)</sup>
  - 2016년 8월 3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아일랜드가 애플에 부당한 조세혜택을 주어 다른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세율로 과세되었기 때문에 조세혜택 금액을 환수하도록 명령한 바 있음<sup>20)</sup>
  - EC는 2017년 1월까지 조세혜택금액을 환수하도록 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일랜드를 유럽 사법재판소(CJEU)에 제소하였고, 이에 대한 압박으로 애플과 아일랜드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임
- 따라서, 애플은 2018년 1분기부터 미납세액을 아일랜드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할 예정임
  - 에스크로 계좌는 애플과 아일랜드가 EC의 조세혜택 환수명령에 대한 항소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애플이 송금하는 조세혜택금액을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계좌임<sup>21)</sup>
  - 애플과 아일랜드의 항소결과에 따라 에스크로 계

좌에 예치된 금액은 애플에 다시 귀속될 수도 있음<sup>22)</sup>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영국-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에 대한 설명자료 발간]**

- 영국 국세청(HMRC)은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에 대한 설명자료(factsheet)를 2017년 12월 8일자로 발행함<sup>23)</sup>
  - 납세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참고 목적으로(compliance check) 발행한 것으로, 아래에서와 같이 GAAR의 기본 개념, 적용 조건 및 대상, 적용 방법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GAAR는 세무거래(tax arrangement)의 ‘남용(abusive)’을 통해 조세혜택(tax advantage)을 얻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도입됨
  - GAAR은 2013년 7월 17일에 도입되어, 동 일자 이후에 성립된 세무거래에 대해 적용됨
  - 2014년 3월 13일자로 국가보험 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 9월 15일 추가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음
  - GAAR은 납세자의 세무거래 남용에 따른 이득 추

19) TaxNotes, "Ireland and Apple Agree to Escrow Account for State Aid fund," 2017.12.11.  
 20)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17-1호)-아일랜드 EC의 애플 부당지원 조사결과에 반박하는 성명 발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01.16.  
 21) WSJ(<https://www.wsj.com/articles/apple-agrees-deal-with-ireland-over-15-billion-unpaid-tax-issue-1512392552>, 접속일자: 2017.12.26.)  
 22) RTE(<https://www.rte.ie/news/business/2017/0202/849541-noonan-defends-apple-ruling-appeal-decision/>, 접속일자: 2017.12.26.)  
 23)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7-12-11\\_uk\\_5.html&WT.z\\_nav=Navigation](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7-12-11_uk_5.html&WT.z_nav=Navigation), 접속일자: 2017.12.26.)  
 HMRC(<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mpliance-checks-information-about-the-general-anti-abuse-rule-ccfs34a>, 접속일자: 2017.12.26.)

구 행위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 세무거래 남용의 개념은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 행위과정(resaonable course of action)인 것’이라고는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를 뜻함
  - 이는 이른바 ‘이중의 합리성 테스트(double reasonableness test)’라고도 불리며, 아래와 같은 제반 상황들을 고려하여 판단함
    - 관련된 세법 규정의 기본 원칙 및 목적
    - 해당 세무거래의 결과가 세법 규정의 기본 원칙과 부합하는지 여부
    - 그러한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럽거나 비정상적 거래단계가 개입되었는지 여부
    - 해당 세무거래가 세법 규정의 허점을 이용하려 한 것인지 여부
    - 거래의 결과로 인한 세무상 손익이 경제적인 손익 규모에 비해 크거나 작은지 여부
    - 해당 거래로 인해 세액 환급이나 공제를 적용 받게 되었는지 여부
    - 해당 거래가 국세청에 의해 인정된 과세 관행과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
- GAAR의 적용과 관련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과세당국은 외부 독립기구인 GAAR 자문패널(GAAR Advisory Panel)로부터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음
  - GAAR 자문패널은 독립적인 조세 전문가들로 구

성되어 있으며 국세청 인력은 포함되지 아니함

- 국세청은 쟁점 세무거래가 관련 세법 규정들에 비춰 볼 때 합리적 행위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해 GAAR 자문패널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를 참고하여 GAAR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결정함

- GAAR은 법인세 및 소득세 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세목과 관련된 세무거래에 대해 적용 가능함
  - 법인세, 소득세, 자본이득세, 상속세, 우회이득세(Diverted Profits Tax), 국가보험 기여금, 인지세, 석유수입세(Petroleum Revenue Tax), 견습세(Apprenticeship Levy), 및 회사보유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Annual Tax on Enveloped Dwellings)등에 대해 효력이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영국-간접세 관련 조세회피 혐의 신고의무 확대]**

- 조세회피 혐의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간접세 모든 항목으로 확대한 규정이 2017년 12월 7일자로 확정됨<sup>24)</sup>
  - 관련 규정들<sup>25)</sup>은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조세회피 혐의에 대한 신고 의무를 VAT뿐만 아니라 간접세 모든 항목으로 확대하고, 간접세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제공할 정보의 내용 및 적용 대상 등을 규정함

24)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7-12-11\\_uk\\_8.html](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7-12-11_uk_8.html), 접속일자: 2017.12.26.)  
Tax Journal(<https://www.taxjournal.com/articles/disclosure-indirect-taxes-avoidance-13122017>, 접속일자: 2017.12.26.)

25) The Indirect Taxes (Disclosure of Avoidance Scheme) Regulations SI 2017/1215 및 The Indirect Taxes (Notifiable Arrangements) Regulations, SI 2017/1216



■ 영국은 조세정보의 사전확보를 목적으로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음<sup>26)</sup>

- 기본적으로 동 제도는 표준화된 조세상품이나 금융상품 등 신고대상으로 지정된 항목에 대해 그 조장자(promoter)나 납세자가 사전에 거래내역을 사전에 국세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임
- 2004년 8월부터 소득에 대한 직접세 및 VAT를 대상으로 동 제도를 도입한 이래 신고대상 세목을 확대해 왔음
- 이번에 도입된 간접세 관련 규정으로 인해 VAT 이외의 모든 간접세 항목들 (관세 제외)도 적용 대상이 됨

■ 간접세 모든 세목과 관련하여, 표준화된 조세상품 등 신고대상 거래항목이 규정됨

-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
  - 특별수수료(premium fee)가 있는 거래
  - 조장자(promoter) 관련 비밀 거래: 당해 계약 거래를 조장한 자가 그 내용을 국세청이나 다른 자에게 비밀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
  - 기타 당사자 관련 비밀 거래: 당해 계약거래의 당사자 또는 이용자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당사자가 그 내용을 국세청이나 다른 자에게 비밀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
- 표준화된 조세상품(standardised tax products): 최소 2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세무거래계약으로서 그 상품의 주목적이 조세

혜택을 얻는데 있다고 판단되는 것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폴란드-이자 및 로열티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 최종 승인]**

■ 폴란드 재무부는 2017년 11월 27일 이자비용 및 로열티 지급액의 공제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최종 승인함<sup>27)</sup>

- 폴란드 재무부는 2017년 9월 26일 이자비용 및 로열티 지급액의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으며, 제안규정에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최소기준금액을 인하함
- 위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자비용의 경우 조정된 과세표준(EBITDA)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며, 최소기준을 두어 이자비용의 12만즈위티까지는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개정안 초안과 달리 2017년 예산안에서 3백만즈위티로 인상하여 제시하였으나, 120만즈위티(약 3억 6천만원)로 인하한 최소기준 금액을 최종 승인함

■ 로열티 지급액이 EBITDA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지급액의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로열티 지급액은 회계 및 법률 자문, 시장조사, 광고, 관리 등과 무형자산 서비스 이용료와 라이선스, 상표권과 같은 권리를 이용하고 지급하는

26) 안종석·구자은·정경화, 『금융상품 과세자료 사전확보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8, pp. 25-37.

27) EY(<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poland-passes-2018-corporate-income-tax-reform>, 접속일자: 2017.12.26.)

금액을 말함

-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과 같이 최소기준금액을 두어 비용이 120만즈위티 미만이면 비용을 전액 공제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품목들에 준하여 조정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저가형 시가 제품의 경우 과세가격이 약 2배 정도로 인상될 수도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 [핀란드-담뱃세 개정안 국회 승인]

- 핀란드 국회는 2017년 11월 30일자로 담뱃세에 대한 개정안을 승인함<sup>28)</sup>
  - 담뱃세를 향후 2년간 평균적으로 약 21%가량 인상하며, 다양한 담배 품목들에 대한 과세 취급상 차이를 줄이고 과세체계를 조정함
  - 담뱃세 인상은 아래와 같이 4단계의 시기에 걸쳐 이루어지며 각 시기별 인상폭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임
    - 2018년 1월~2018년 6월
    - 2018년 7월~2018년 12월
    - 2019년 1월~2019년 6월
    - 2019년 7월 이후
- 담뱃세 인상 효과는 세부 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시가(cigar)의 경우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됨
  - 일반담배(cigarette)의 과세가격은 약 18%, 파인 컷담배(fine cut cigarette)의 과세가격은 약 19% 가량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시가(cigar)에 대한 담배세 과세구조는 다른 담배

### > 아시아

#### [중국-증치세 집행조례 발표]<sup>29)</sup>

- 중국 국무원은 증치세 집행조례를 12월 1일 발표하였으며, 본 조례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 증치세는 재화 등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치액(부가가치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거래세임<sup>30)</sup>
- 중국 증치세 납세의무자는 중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공, 수리 정비 용역 등의 제공,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 및 수입상품을 판매하는 자이며, 구체적인 세율은 다음과 같음
  - 납세자가 상품, 용역, 유형자산 임대서비스 또는 수입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세율은 17%임
  - 교통운송, 건축, 부동산 임대서비스를 판매하거나 부동산 판매, 토지 사용권 양도, 다음의 상품을 판매 또는 수입할 경우에는 11% 세율을 적용함
    - 식량 등 농산품, 식물성 식용유 및 식용 소금
    - 상수도, 난방, 냉방, 온수, 가스, 액화가스, 천연가스 등
    - 도서 신문 잡지, 비디오 제품 및 전자출판물

28)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7-12-06\\_fi\\_1.html&WT.z\\_nav=Navigation](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7-12-06_fi_1.html&WT.z_nav=Navigation), 접속일자: 2017.12.26.)

핀란드 재무부([http://vm.fi/artikkelit/-/asset\\_publisher/halitus-esittaa-muutoksia-verolakeihin](http://vm.fi/artikkelit/-/asset_publisher/halitus-esittaa-muutoksia-verolakeihin), 접속일자: 2017.12.26.)

29) 국무원([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12/01/content\\_5243734.htm](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12/01/content_5243734.htm), 접속일자: 2017.12.14.)

30)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거의 유사한 세목임



-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등

- 서비스, 무형자산 판매 시 6% 세율을 적용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중국-수자원세 시범지역 9개 지역으로 확대]31)**

- 중국 재정부는 12월 1일부터 수자원세 시범지역을 9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함
  - 수자원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고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자원세를 부과하며, 기존 허베이성에서 북경, 산서, 내몽고, 서난, 산둥 등 총 9개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임
- 수자원세의 납부할 세액은 실제 물사용량에 용도별 각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며, 기본적으로 지표수는 m<sup>3</sup>당 0.1~1.6위안, 지하수는 0.2~4위안의 세율이 부과됨
  - 냉각 및 용수 사용을 위한 수력발전 및 화력발전 용수에 대한 세금은 실제 발전량×각 세율로 산정됨

〈표 6〉 중국 수자원세 세율

(단위: %)

지역	지표수	지하수
북경	1.6	4
톈진	0.8	4
산서	0.5	2
내몽고	0.5	2
산둥	0.4	1.5
허난	0.4	1.5
쓰촨	0.1	0.2
산시	0.3	0.7
닝샤	0.3	0.7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오세아니아**

**[호주-혼성불일치 해소를 위한 입법 초안 발표]32)**

- 호주 재무부는 2016/17 예산안을 통해 혼성불일치 방지규정(anti-hybrid rules)을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BEPS 권고사항을 국내법에 포함하기로 함
  - 재무장관은 입법안이 승인되면 다국적 기업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혼성불일치 거래로 인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함
- 혼성불일치 해소를 위해 다음의 유형에 따른 OECD의 권고사항을 채택하여 입법안을 공개하였으며, 다만 재가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31) 국무원([http://www.gov.cn/xinwen/2017-11/29/content\\_5243046.htm](http://www.gov.cn/xinwen/2017-11/29/content_5243046.htm), 접속일자: 2017.12.14.)

32) 호주 재무부(<https://www.ato.gov.au/General/New-legislation/In-detail/Other-topics/International/Implementation-of-the-OECD-hybrid-mismatch-rules/>, 접속일자: 2017.12.15.)

하여 세부입법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임

- 지급자의 관할국에서 해당 지급이 비용으로 공제되나, 지급 수취자의 소득에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Deduction/No Inclusion outcome: D/NI): 지급자 관할국은 D/NI가 발생하는 지급에 대해 비용공제를 부인하는 우선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지급자 공제부인), 지급자 관할국에서 우선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수취자 관할국에서 후속 규정을 적용하여 수취금액을 경상소득(수취자 익금산입)에 포함시켜야 함
- 두 관할 지역의 동일한 납세자가 이중 공제되는 경우(Double Deduction outcome: D/D): 모법인의 관할국에서 이중공제를 부인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자의 관할국에서 차감한 지급을 부인하도록 함
- 이전 혼성불일치(imported mismatches) 거래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D/DI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조직화된 거래를 통해 불일치가 이전되어 간접적으로 D/DI의 결과가 발생하는 거래로서 지급자의 지급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며 지배그룹의 구성원, 불일치를 의도한 구조화된 약정에 적용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 국제기구

### [EU-전자상거래 관련 새로운 부가가치세 규정 채택]

- 유럽연합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017년 12월 5일 전자상거래 관련 새로운 부가가치세("VAT") 규정을 채택함<sup>33)</sup>
  - 본 규정은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EU's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의 일환으로 온라인 사업자의 VAT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는 한편 EU회원국의 VAT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됨
  - EU의 새로운 VAT규정은 사업자 등록의 일원화, VAT 징수 효율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VAT 간소화 규정 도입, 소액공급에 대한 면세 폐지 등과 관련된 방안을 규정함
- 현재 온라인 용역에 대해 적용하는 'MOSS(mini-one-stop shop)'제도를 온라인 재화 공급에 확대 적용함
  - MOSS는 EU회원국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국가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 없이 자국에서 한 번의 온라인 등록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간소화 제도로 2015년에 시행됨
- 제3국으로부터 공급받는 150유로 미만의 거래에 대한 별도의 온라인 포탈을 신설함

33) European Council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7/12/05/vat-on-electronic-commerce-new-rules-adopted/#>, 접속일자: 2017.12.26.)



- 제3국에서 EU내로 공급되는 온라인 매출에 대해서는 관련 온라인 마켓(거래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VAT가 징수되도록 함
- 다른 EU국가로의 총공급가액이 연간 1만유로 미만인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거래를 국내공급으로 간주하여 자국에서 VAT를 신고·납부하도록 함
  - EU내 다른 국가에 대한 총 공급가액이 연간 10만유로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소화제도를 적용함
- 제3국으로부터 EU내로 공급되는 22유로 이하의 소매거래에 대한 면세를 폐지함
- 본 규정은 2021년까지 두 단계로 도입될 계획임
  - 1차적으로 2019년까지 EU내 온라인 용역에 대한 간소화 조치 도입
  - 2단계로는 2021년까지 간소화 규정을 제3국과의 온라인 재화 거래로 확대 적용하고, 소매 재화에 대한 면세를 폐지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Plan)의 일환으로 EU회원국의 원천징수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시됨

- 본 행동강령은 구속력이 있는 지침(directive)은 아니며, EU회원국은 행동강령의 권고사항을 선택하여 도입할 수 있음
- 동 행동강령은 배당, 이자, 사용료 등 수동소득(passive income)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에 적용되며, 지급시점에서의 원천징수 절차와 함께 과다징수된 원천징수세액 관련 환급절차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방안을 제시함
  - 소액투자자를 위한 원천징수세액 환급 절차의 간소화
  - 투자자 편의를 위한 원천징수 환급 신청 서식의 디지털화
  - 원천징수 환급의 기한 설정
  - EU회원국별 원천징수 관련 투자자의 질의응답을 위한 단일 창구 마련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 [EU-원천징수 절차 효율화를 위한 행동강령 발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7년 12월 11일 EU회원국의 원천징수 절차 효율화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발표함<sup>34)</sup>
  - 본 원천징수 행동강령은 EU의 자본시장통합 실행계획(EU's Capital Markets Union Action

34) European Commission([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X-17-5206\\_en.htm](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X-17-5206_en.htm), 접속일자: 2017.12.26.)

**[OECD-BEPS프로젝트 Action 5 상호검토 보고서 발표]**

- OECD는 2017년 12월 4일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 관련 조세예규의 의무 교환 이행현황에 대한 제1차 상호검토(peer review) 보고서를 발표함<sup>35)</sup>
  - Action 5는 BEPS프로젝트 15개 Action 중 모든 BEPS참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으로 상호검토 대상에 해당함
  - Action 5는 (i) 조세특례제도의 유해성 평가와 (ii) 조세예규의 의무 교환 등 두 개의 이행과제를 포함하며, 본 상호검토는 조세예규의 의무 교환 이행에 대한 첫 상호평가 결과보고서임
    - 조세특례제도의 유해성평가에 대한 제1차 상호검토 보고서는 지난 10월에 발표된 바 있음<sup>36)</sup>
- 본 제1차 상호검토 보고서는 BEPS참여국 중 44개국의 조세예규 교환(compulsory spontaneous exchange of information on tax ruling) 이행현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담음
  - 본 상호검토는 OECD 및 G20의 모든 회원국 및 콜롬비아를 포함한 44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음
  - 교환 대상 예규는 2010년 1월 1일부터 발행된 것으로 조세특례, 일방적 사전승인 또는 기타 일방적 이전가격, 과세소득 감액 조정, 고정사업장,

도관회사를 통한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예규 등 크게 5가지로 분류함

- 평가항목으로는 교환 대상 조세예규와 교환 대상 국가를 과세당국이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정보 교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여부, 교환되는 정보의 비밀유지를 위한 장치 마련 여부 등이 있음
- 동 상호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검토 대상 국가에서 2010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조세예규는 1만여 개를 초과하며 그 중 6,500여 개의 예규가 교환된 것으로 파악됨
  - 한편, 검토 결과 모든 검토 대상 국가에서 예규 교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거나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착수한 것으로 확인됨
  - 우리나라는 조세예규 교환을 위한 법적 근거와 지적재산권 관련 조세특례를 받는 납세자 정보의 확인 및 관련 정보교환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 외에는 최소기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 Action 5에 따른 조세예규 교환 이행현황에 대한 상호검토는 2020년까지 매년 지속될 예정임
  - 2018년에는 본 상호검토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본 상호검토 보고서에 기술된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계획임

35) OECD ([http://www.oecd.org/tax/oecd-releases-first-peer-reviews-of-the-beps-action-5-minimum-standard-on-spontaneous-exchange-on-tax-rulings.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Read%20the%20press%20release&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04-12-2017&utm\\_term=demo](http://www.oecd.org/tax/oecd-releases-first-peer-reviews-of-the-beps-action-5-minimum-standard-on-spontaneous-exchange-on-tax-rulings.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Read%20the%20press%20release&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04-12-2017&utm_term=demo), 접속일자: 2017.12.19.)

36) OECD(2017), Harmful Tax Practices-2017 Progress Report on Preferential Regimes: Inclusive Framework on BEPS: Action 5,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 다만, 검토 시기에 대한 유예 요청을 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상호검토는 2019년에 처음으로 수행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OECD-BEPS프로젝트 국가별보고서 이행 관련 추가 지침 발표]**

- OECD는 2017년 11월 30일 BEPS프로젝트 Action 13 국가별보고서의 이행과 관련한 추가지침을 발표함<sup>37)</sup>
  - Action 13의 국가별보고서는 모든 BEPS참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으로 본 지침은 국가별보고서 이행과 관련하여 과세당국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행정 및 납세의무의 확실성 제고를 위해 제시됨
  - 본 지침은 공정가치회계 사용 시 보고, 결손 상태에서의 보고, 간주 상장 규정, 연결기준 그룹 매출액 정의, 1년 미만의 사업연도에 대한 보고방법, 합병·인수·분할에 대한 처리 방법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시함
- 공정가치회계(fair value accounting)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별도 조정 없이 재무제표 상의 금액을 국가별보고서에 사용하여야 함
- 국가별보고서 보고 대상 법인 중 결손(negative accumulated earnings) 법인이 있는 경우, 별도 조정 없이 결손 금액을 국가별보고서에 기입하여야 함
  - 같은 조세관할지역에 복수의 보고 대상 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관할지역 법인의 결손금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순이익잉여금으로 작성하며(〈표 1〉 조세관할지역별 재무현황), 이에 대해 특기사항으로 기술함(〈표 3〉)
- 국가 Action 13 최종보고서 상 ‘간주 상장 규정(deemed listing provision)’은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모회사의 거주지국에서 비상장 다국적기업에게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 Action 13 최종보고서는 국가별보고서 관련 모델 법규(CbCR Model Legislation)에서 ‘간주 상장 규정’을 제시함<sup>38)</sup>
  -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와 같이 상장 법인에게만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신고의무가 있는 다국적기업은 상장을 가정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포함되는 관계회사 모두를 국가별보고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함

37) OECD

([http://www.oecd.org/tax/oecd-releases-further-guidance-for-tax-administrations-and-mne-groups-on-country-by-country-reporting-november-2017.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Read%20the%20press%20release&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30-11-2017&utm\\_term=demo](http://www.oecd.org/tax/oecd-releases-further-guidance-for-tax-administrations-and-mne-groups-on-country-by-country-reporting-november-2017.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Read%20the%20press%20release&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30-11-2017&utm_term=demo), 접속일자: 2017.12.20.)

38) OECD(2015),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and Country-by-Country Reporting, Action 13-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p. 39.

- 국가별보고서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최종모회사 또는 대리모회사(surrogate parent entity)의 연결기준 매출액을 따르는 것임
    - 최종모회사 또는 대리모회사의 거주지국 회계기준에 따른 연결기준 매출액 산정이 Action 13에 부합하는 경우, 동 매출액으로 국가별보고서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상기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 다국적기업의 현지 법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과세당국은 별도의 기준으로 현지법인에게 국가별보고서의 현지신고(local filing)를 요구할 수 없음
  
  - 다국적기업그룹의 직전 사업연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국가별보고서 신고기준인 직전 사업연도 연결기준 매출액 7억 5천만유로 해당 여부 판단 시 아래의 세 가지 접근법을 각 국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① 1년 미만의 사업연도 매출액을 그대로 준용, ②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을 가정하여 추정하여 판단, ③ 기준 매출액 7억 5천만유로를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에 맞게 안분하여 판단하는 등 세 가지 접근법을 제안함
    - 최종모회사 또는 대리모회사와 현지법인의 거주지국의 접근법이 다른 경우를 고려하여 최종모회사 국가에서 자발적 신고를 허용할 것을 권고함
  
  - 합병 · 인수 · 분할 등 다국적기업그룹 내 조직변경이 발생한 경우 국가별보고서 신고 대상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의 연결기준 매출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 OECD-2017 세수통계(Revenue Statistics) 보고서 발표]**
- OECD는 2017년 11월 23일 『2017 세수통계(Revenue Statistics 2017) 보고서』를 발표함<sup>39)</sup>
    - OECD의 세수통계 보고서는 1965년부터 OECD 회원국의 조세수입과 관련된 현황과 동향을 매년 분석하여 제시함
  
  - 2016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은 34.3%로 1965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임
    - 2014년과 2015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세수비중은 각각 33.9%와 34.0%를 기록함
    - 전년 대비 2015년의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이 증가한 국가는 18개국이며, 이 중 1%p 이상 증가한 국가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그리스, 라트비아,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등 6개국이 존재함
    - 반면, 전년 대비 조세수입 비중이 감소한 국가는 총 14개국이며, 이 중 1%p 이상 감소한 국가는 오스트리아가 유일함

39) OECD([http://www.oecd.org/tax/tax-policy/social-security-contributions-and-consumption-taxes-give-way-to-personal-income-taxes-as-corporate-income-taxes-fail-to-recover.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Social%20security%20contributions%20and%20consumption%20taxes%20give%20way%20to%20personal%20income%20taxes%2C%20as%20corporate%20&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23-11-2017&utm\\_term=demo](http://www.oecd.org/tax/tax-policy/social-security-contributions-and-consumption-taxes-give-way-to-personal-income-taxes-as-corporate-income-taxes-fail-to-recover.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Social%20security%20contributions%20and%20consumption%20taxes%20give%20way%20to%20personal%20income%20taxes%2C%20as%20corporate%20&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23-11-2017&utm_term=demo), 접속일자: 2017.12.20.)



- 덴마크는 전년과 같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호주와 일본 등 2개국은 2016년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 OECD 회원국의 전체 세수 대비 평균 소득세(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포함) 비중은 2015년 기준 34.1%를 기록하여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모두 17개국에 있으며, 이 중 호주,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 등 9개국에서는 소득세 비중이 40% 이상을 기록함
- 2015년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의 세수비중은 24.4%로 금융위기 이후 계속 증가한 가운데, 덴마크에서는 비중이 55.2%인 반면, 슬로바키아와 칠레에서는 10% 미만을 보이는 등 국가별로 큰 편차를 나타냄
- 2015년 OECD 회원국의 법인세의 세수비중은 8.9%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1.2%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법인세 비중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여 멕시코와 칠레에서는 20% 이상인 반면, 독일과 프랑스 등 5개국에서는 5% 미만의 비중을 보임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득세 비중은 30.3%로 OECD 평균보다 낮은 가운데, 이 중 개인소득세 비중(17.2%)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반면, 법인세 비중(13.1%)은 OECD 평균을 상회함

■ OECD 회원국에서 소비세(consumption tax)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32.4%로 소득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금

융위기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소비세가 OECD 회원국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3.0%, 2014년 32.5%, 2015년 32.4%를 나타내 그 비중이 감소함
  - 소비세의 세수 비중은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여, 칠레(54.1%)는 50% 이상, 그 밖에 터키,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등 5개국에서 40% 이상을 보인 반면, 미국에서는 17.0%의 비중을 기록함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세 비중은 28.0%로 OECD 평균보다 낮음
- 한편, 기타 세목 중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비중은 감소한 반면, 재산세는 소폭 상승함
- 사회보장세의 세수 비중은 2007년에서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급증한 이래 2010년 26.4%, 2014년 26.0%, 2015년 25.8%의 비중을 보이며 감소함
  - 재산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5%, 2014년 5.7%, 2015년 5.8%의 비중을 나타내며 증가함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세와 재산세 세수 비중은 각각 26.6%와 12.4%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의 2016년 GDP 대비 세수 비중은 26.3%로 OECD 평균(34.3%)보다 8%p 낮았으나, 2000년 이후 GDP 대비 세수비중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세수 비중은 OECD회원국 가운데 멕시코(17.2%), 칠레

- (20.4%), 아일랜드(23.0%), 터키(25.5%), 미국(26.0%)에 이어 여섯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세수 비중 증가폭은 4.85%p로, 그리스(5.20%p)와 일본(4.97%p, 2015년 기준)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같은 기간 OECD의 평균 GDP 대비 세수비중 증가율은 0.35%p임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 조세 · 재정 정책 및 연구 동향

■ 정책 및 연구 동향: 12.10.~1.9. 세미나 등: 1.1.~1.31.

\* 이 자료는 국내외 조세 · 재정과 관련한 정책 및 연구 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세미나

세미나 개요	주최(주관)기관	개최일
<p>■ 국가 R&amp;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공청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18. 01. 18.(목) 14:00~16:00</li> <li>•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대회의실</li> <li>• 주제: R&amp;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li> <li>•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심사 과장</li> </ul>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p>	18-01-18
<p>■ 2018년 국제조세협회 동계학술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18. 01. 18.(목) 16:00~18:00</li> <li>•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2층 국제회의실</li> <li>• 주제: 2018 국제조세의 동향</li> <li>• 발표: 박수진 회계사(세무학박사), 윤지현 교수(서울대)</li> <li>• 토론: 조규변(딜로이트 안진), 최정희(건양대)</li> </ul>	한국국제조세협회	18-01-18
<p>■ 2018년 개정세법해설 Workshop 및 정기총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18. 01. 13.(토) 08:30~11:10</li> <li>• 장소: 동국대학교 본관 중강당</li> <li>• 주제: 2018년 개정세법해설</li> <li>• 발표: 김병규 국장(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길 과장(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li> </ul>	한국세무학회	18-01-13
<p>■ 2018년 국회 시대개혁 토론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18. 01. 11.(목) 14:30~</li> <li>•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li> <li>• 주제: 보유세 도입과 시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li> <li>• 발표: 정세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li> <li>• 토론: 정준호 교수(강원대), 강병구 교수(인하대), 김유찬 교수(홍익대) 외</li> </ul>	<p>민주연구원 박광은 국회의원실</p>	18-01-11
<p>■ 2018 한국경제전망 토론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18. 01. 11.(목) 09:00~</li> <li>• 장소: 대한상공회의소</li> <li>• 주제: 국내 산업 현황과 2018년 전망 외</li> <li>• 발표: 유병규(산업연구원 원장), 이채원(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 외</li> </ul>	<p>매일경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p>	18-01-11



▶ 정책 및 연구

(1) 정책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p>◇ 공공부문 부채 현황 및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D3)는 1,036.6조원으로 GDP 대비 63.3% 수준이며, 이는 전년에 비해 33.0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GDP 대비 비중은 0.9% 감소한 것임</li> <li>•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D2)는 2016년 717.5조원, GDP 대비 43.8%로 조사되었으며,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16년 386.4조원, GDP 대비 23.6% 수준으로 전년 대비 12.5조원 감소하였음</li> <li>•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D3)는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비중이 높고, 일반정부 부채(D2)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공공부문 부채(D3)에 대한 선제적, 효과적인 재정위험 관리가 요구됨</li> </ul>	국회입법조사처	18-01-11
<p>◇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 재정정책과 강도 높은 재정개혁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지침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 방향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는 이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할 예정</li> </ul> </li> <li>•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선제적 재정투자확대: '18~'2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중기지출계획을 상향 조정 검토 (2018년 경제정책방향, '17.12)</li> </ul>	기획재정부	18-01-02
<p>◇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성과를 국민 눈으로 평가”하도록 평가체계, 지표, 사후관리 등 평가 숲 단계를 4가지 큰 틀에서 개편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 가치 배점 확대, 메뉴방식 도입</li> <li>2) 자율 혁신 기반 맞춤형 평가: 공기업/준정부 평가단 분리 및 지표 차별화, 성과 협약제 도입, 지표 통폐합 및 간소화</li> <li>3) 참여·개방·소통: 평가단 구성 다양화, 계량지표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li> <li>4) 책임·윤리경영: 컨설팅 강화, 경영진단 및 기능조정과 연계, 사회적 책무 위반시 등급 조정, 기관장 및 감사평가 개편</li> </ol> </li> </ul>	기획재정부	18-12-28
<p>◇ 2018 할당관세·조정관세 대상 품목·세율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에 따른 할당관세 규정 등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 관련 설비·원재료 및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 계속 지원</li> <li>-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한 조정관세는 현행 기초 유지</li> </ul> </li> </ul>	기획재정부	17-12-26

(2) 국내외 연구(Papers & Briefs)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p>◇ 2017 조세개요 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세개요」를 정기적으로 발간</li> <li>• 제1장 '조세체계 및 세입구조'부터 제5장 '지방세제'까지는 현행 조세체계의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알기 쉽게 설명</li> <li>• 제6장 '폐지된 세법'에는 과거에 시행한 바 있으나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폐지된 주요 조세제도를 정리하여 과거 조세제도의 역사적 고찰이 가능</li> </ul>	기획재정부	18-01-05
<p>◇ 미국 세제개편 주요 내용과 각 국의 대응현황 / 심해정, 강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세제개혁안(Tax Cuts and Jobs Act)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감</li> <li>• 법인세 인하, 해외소득 환류 감세 등의 조치로 미국 기업의 세금부담이 대폭 줄어들며 각국 해외자본의 이탈 및 美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 국가별 세율인하 경쟁도 심화될 전망</li> <li>• 금번 세제개혁으로 단기적으로는 미국 달러화 강세가 더욱 힘을 받고, 미국의 경기호조세가 탄력을 받아 대미국 수출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나, 미국에 자회사(현지법인)를 둔 국내 기업의 경우, 관계사 지급액에 과세되면서 오히려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존재함</li> </ul>	한국무역협회	18-01-04
<p>◇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 류건식, 김동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연금의 근본적 한계인 재정문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임</li> <li>• 우리나라에서도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포함한 가입대상자 확대, 수급권 보호 강화, 연금화 유도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2014년 7월에 발표함</li> <li>• 동 대책 이후 퇴직연금의 가입 및 수급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퇴직연금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연금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에 대해 검토함</li> </ul>	보험연구원	17-12-31
<p>◇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 소득법인세분석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및 주요 항목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을 정리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고민과 향후 과제들을 공유하고, 2017년 세법개정안 심사에서 국회의 제안·수정사항을 분석하여 세법개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조명하고자 하였음</li> </ul>	국회예산정책처	17-12-12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p>◇ <b>Who Will Pay for the Tax Cuts and Jobs Act?</b> / by William G. Ga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Tax Cuts and Jobs Act (TCJA) will cut taxes by almost \$1.5 trillion over the next decade, largely benefiting corporations, pass-through businesses such as partnerships, and people who inherit large estates. The bill will also provide modest tax reductions for most wage and salary earners. ... (후략)</li> </ul>	Tax Policy Center	18-01-02
<p>◇ <b>Income Redistribution through Taxes and Transfers across OECD Countries</b> / by Orsetta Causa, Mikkel Hermanse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is paper produces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income redistribution to the working-age population, covering OECD countries over the last two decades. Redistribution is quantified as the relative reduction in market income inequality achieved by personal income taxes, employees'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cash transfers, based on household-level micro data. A detailed decomposition analysis uncovers the respective roles of size, tax progressivity and transfer targeting for overall redistribution, the respective role of various categories of transfers for transfer redistribution; as well as redistribution for various income groups. ... (후략)</li> </ul>	OECD	17-12-15
<p>◇ <b>The Effects of the Tax Mix on Inequality and Growth</b> / by Oguzhan Akgun, Boris Cournéde, Jean-Marc Fourni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n reforms that shift the balance among different taxes in the revenue mix lastingly influence the overall prosperity of an economy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across households? The present study takes this question to the data, using the experience of 34 OECD countries over 1980-2014 to assess the effects of changes in the tax structure on the long-term level of average output per capita and the distribution of disposable income across households. ... (후략)</li> </ul>	OECD	17-12-11
<p>◇ <b>The Long-Run Effects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on Women's Earnings</b> / by David Neumark, Peter Shirle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e use longitudinal data on marriage and children from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to characterize women's exposure to the federal and stat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during their first two decades of adulthood. We then use measures of this exposure to estimate the long-run effects of the EITC on women's earnings as mature adults. We find some evidence indicating that exposure to a more generous EITC when women were unmarried and had young (pre-school) children leads to higher earnings and hours, and perhaps wages, in the longer run. ... (후략)</li> </ul>	NBER	17-12

# 정책흐름



-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2018년 경제정책방향

#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본 자료는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 I. 개요

### 1. 추진배경

- '17년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 2. 개정대상 및 주요 개정내용

#### ■ (개정대상) 총 17개 법률의 시행령\*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과세자료제출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 주요 개정내용

- ① 일자리 창출 및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 ② 창업·벤처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 ③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 강화
- ④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 ⑤ 세입기반 확충 및 개인사업자·역외소득 세원 관리 강화
- ⑥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

- ⑦ 공익법인·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⑧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보완

### 3. 추진일정(안)

- 부처협의·입법예고(1.8~1.29),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 예정

## II. 주요 개정내용

### 1. 일자리 창출 지원

#### (1) 일자리 창출 및 질(質)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 확대

- 사회보험 신규 가입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구체화(조특령 §27의4)

#### 법률(§30의4) 개정내용

-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2년간 50% 세액공제 적용(중소기업 및 근로자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신설)** 대상 기업, 근로자 범위 구체화
  - (대상) 조특법상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
  - (근로자 범위) 최저임금의 100~120%를 지급 받는 근로자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 (소득령 §17①)

- **(현행)**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개정)**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하여 월정액 급여 기준을 150만원 → 180만원으로 상향조정

■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조정 (조특령 §26의4)

-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대비 초과 증가분의 5%(중견 10%·중소 20%)를 법인세에서 공제
- **(현행)** 임금증가분 계산시 총급여 1.2억원 이상 근로자 임금 제외
- **(개정)** 총급여 7천만원 이상 근로자 임금은 제외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조특령 §100의32)

**법률(§100의32) 개정내용**

- ◇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신설
  - **(과세방식)** A, B 중 선택
    - ① [기업소득\* × ①(60~80%) - {투자(1) + 임금증가(2~3) + 상생지원(3)}] × 20%
    - ② [기업소득\* × ②(10~20%) - {임금증가(2~3) + 상생지원(3)}] × 20%

- ①, ② 세부기준을, 기업소득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구분	개정안
① ①, ②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α=65%, β=15%</li> <li>* 종전 제도: α(80%), β(30%) → 배당제외에 따른 세부담 변동 최소화</li> </ul>
② 기업소득 계산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소득 계산시 3천억원 초과분은 제외</li> <li>• 기업소득 계산시 다음 금액을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에게 배당한 금액 (배당소득 공제액)</li> <li>- 외국기업지배 주주회사가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li> </ul> </li> </ul>
③ 투자·상생 협력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 토지는 제외</li> </ul> </li> <li>• (임금증가) 임원, 총급여 7천만원 이상 근로자 제외</li> <li>• (상생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 협력 중소기업 보증을 위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신탁업자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을 위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li> <li>-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협력 지출액 추가</li> </ul> </li> </ul>

**(2)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조특령 §5)

**법률(§6) 개정내용**

- ◇ 신성장서비스업(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
  - \* 5년간 50% →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 **(신설)**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신성장 서비스업 준용

산업	주요 업종
SW	-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SW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콘텐츠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영화 ·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방송업
관광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물류	-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등
사업서비스	-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교육	- 직업기술 교습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조특령 §5)

법률(§6) 개정내용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50%)시 고용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고용증가율×1/2) 추가 감면  
다만,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시행령에 위임) 요건 충족시 적용

- (신설)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 (그밖의 업종) 5인

■ 사내벤처 등 분사시 창업 지원세제 적용 (조특령 §5)

법률(§6) 개정내용

◇ 사내벤처 등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일정 요건 (시행령에 위임)을 갖추어 분사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50%) 적용

- (현행)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으로 불인정
- (개정)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직원이 경영상 독립성을 갖추어 분사시 창업으로 인정
  - 기존 사업자와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
  - 사업개시자가 분사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 & 최대주주

■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가 적용되는 투자 대상 확대(조특령 §14)

- (현행)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R&D투자 3천만원 이상 기업, 창업 3년 이내 기보 · 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 기업
- (개정)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 우수 기업,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 추가
  - \* ① 기보 · 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 기업, ②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 ③ R&D투자 3천만원(지식 기반서비스분야 2천만원) 이상 기업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및 투자한도 신설(조특령 §14)

- (현행)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0% 소득공제
- (개정) 벤처 · 코스닥기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요건 완화(①+②)\*. 다만, 1인당 투자금액 한도(3천만원) 신설
  - \* ①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 ② 신탁재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 · 중견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

## 2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 (1)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소득령 §157)

구분	현행		개정안
	'18.4.1. 이후	'20.4.1. 이후	'21.4.1. 이후
① 유가증권	지분율1%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1% 또는 10억원 이상	1% 또는 3억원 이상
② 코스닥	지분율2%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2% 또는 10억원 이상	2% 또는 3억원 이상
③ 코넥스	지분율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4% 또는 3억원 이상

\* 비상장 주식은 '18.4월 종무별 15억원, '20.4월 10억원, '21.4월 3억원 이상

- 기업상속공제 적용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상증령 §15)

#### 법률(§18) 개정내용

- ◇ 중견기업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19년 시행)
  - 기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기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에 일정 비율(시행령에 위임)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기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 (신설) 기업상속인의 기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기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기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 당초 상속세액의 1.5배로 발표

### (2) 서민·중산층·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의 범위 확대 (소득령 §118의4)

- (현행) 생명·상해·손해보험 등의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공제율 12%, 연간 100만원 한도)
- (개정)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보험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 K-OTC를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 (소득령 §157, §157의2)

#### 법률(§94) 개정내용

- ◇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한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소액주주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 Korea Over The Counter: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시장

- (소액주주)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코넥스와 기준 일치)
  - \* ('21.3월까지) 지분율 4% 또는 10억원 이상
  - (\* '21.4월부터) 지분율 4% 또는 3억원 이상
  - \*\*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 판정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소득령 §155)

- (현행) 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과세
- (개정)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 동거분양 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 (소득령 §155, §156의2)

- **(현행)** 동거분양 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 **(개정)** 동거분양 합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양도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공공주택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비과세(부가령 §26)

- 공공주택사업자(국가·지자체·LH 등)가 부동산투자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 \*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공임대주택을 제공

■ SLB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중부세 합산 배제(중부령 §4)

- **(현행)** 장기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등 중부세 합산 배제
- **(개정)** 세일엔리스백(SLB) 리츠\* 등이 한계·연체 주택담보대출 차주로부터 매입하여 다시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합산 배제
- \* 주택도시기금 및 LH에서 출자하여 1세대1주택자로부터 주택을 매입하여 5년간 임대

■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 확대(국기령 §48의2)

-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확대를 위해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불복청구 기준금액 확대 (1천만원 이하→3천만원 이하)

\* (요건) ① 개인, ②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재산평가액 5억원 이하, ③ 청구금액 1천만원 이하, ④ 상속세·증여세·종부세 아닌 세목일 것

■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세기관 추가 (조특령 §106)

- **(현행)**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기관에 농·수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등 포함
- **(개정)** 농수산물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금정산조직\*을 면세기관에 추가
- \* 농어민이 도매시장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중도매인을 대신하여 농어민에게 판매대금 정산 등 지불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37)

- 일반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을 '18.3.31.에서 '20.12.31.까지 연장

■ 소규모주류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주세령 별표3, §20)

구분	현행	개정안		
① 유통경로	• 제조장,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 등에 대해 판매	•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을 통한 판매도 허용		
② 시설기준(맥주)	• 저장조 용량: 5kl~75kl • 음식점, 주점 등 영업장 설치(영업허가 취득)	• 저장조 용량: 5kl~120kl  <삭제>		
③ 주세 적용률(맥주)	출고량	적용률	출고량	적용률
	100kl 이하	40%	200kl 이하	40%
	100kl 초과 300kl 이하	60%	200kl 초과 500kl 이하	60%
	300kl 초과	80%	500kl 초과	80%
	<신설>		• 쌀 함량이 20% 이상: 30%	
④ 주세 적용률(탁·약·청주)	출고량	적용률	출고량	적용률
	-	80%	5kl 이하	60%
			5kl 초과	80%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세입기반 확충 및 세원투명성 강화

■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소득령 §133)

\*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위반시 가산세 5% 및 세무조사)

구분	현행	개정안
농업, 도·소매업 등	2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등	10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 당초 '20년 이후 적용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추후 검토

■ 부동산임대 가족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법인령 §97의4)

법률(§60의2) 개정내용

◇ 부동산임대 가족법인 등(범위는 시행령에 위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신설

• (신설) 부동산임대주업 가족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

\* 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거나 임대·이자·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대상 확대(부가령 §68, 소득령 §211의2)

구분	현행	개정안
전자 세금계산서	과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	과세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
전자계산서	과세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과세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

\* '19.7.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 (소득령 별표 3의3)

-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현행 58개)에 5개 업종\* 추가('19. 1. 1. 이후 거래분)

\* ①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② 기타미용업, ③ 약기 소매업, ④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⑤ 골프 연습장 운영업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관련 과태료 인상 (국조령 §51)

구분	현행	개정안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미제출·거짓제출시 과태료	보고서별 1천만원	보고서별 3천만원

\*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 관련 정보(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용, 조직 구조, 재무활동, 국가별 사업활동 내역 등)를 담은 보고서로 매년 과세관청에 제출

■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확대(국조령 §49)

구분	현행	개정안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 10억원 초과	5억원 초과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소득령 §179, 법인령 §132)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장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25% 이상 보유시 과세 → 5% 이상 보유시 과세('18.7월 시행\*\*)

\* 조세조약상 과세대상 제한이 없거나 과세대상 주식비율이 5% 이상인 경우 및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과세 가능

\*\* 증권사의 투자자별 지분율, 취득가액 정보 수집 등 준비기간 감안

■ 해외 신용카드 사용 및 인출내역 제출대상 확대 (관세령 §263의2, 별표3)

-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 및 인출금액 기준을 분기별로 총액 5천달러 이상 → 건당 600달러 초과로 확대(실시간으로 통보하여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직구물품 등 과세자료로 활용)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규정 정비 (조특령 §106의14)

법률(§106의10) 개정내용

- ◇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결제액의 4/110)를 납부하는 제도를 '19년부터 도입(대상업종 등 시행령 위임)

- (대상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 (간이과세자 제외)
- (사업자의 세액공제액) 대리납부 금액의 1%

■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축소(조특령 §104조의5)

- (현행)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 납세자: 건당 소득세·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
  - 세무대리인: 납세자와 공제액 동일(한도: 개인 400만원, 법인 1,000만원)
- (개정)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신고율 92~99%)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구분	현행	'19~'20년	'21년 이후
세무대리인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세무대리법인	1,000만원	750만원	500만원

\* 당초 '19년부터 200만원(법인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발표

■ 군 골프장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부가령 §46)

-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 군 골프장·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과세전환
  - \* 국군복지단 등이 운영하는 호텔, 콘도 등
  - \*\* '18.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제도 합리화

■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소득령 §4)

- (현행)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
- (개정)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령 §167의9)

- (현행) 탄력세율 5%(기본세율 20%)
- (개정) 금융소득 과세정상화를 위해 탄력세율 인상(5% → 10%)
  - \*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강의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령 §87)

- (현행) 기타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시 원고료, 강의료, 자문료 등은 8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
- (개정) 필요경비율(80%)을 동종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60%)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 조정('18.4월 70%, '19년 이후 60%)

■ 사전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소득령 §155, §156의2)

- (현행)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 상속시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 (개정) 사전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1주택 상속 전 2년 이내에 사전증여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범위 합리화(소득령 §163)

-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범위
  - 자본적 지출액: (현행) 적격증빙 → (개정) 적격증빙, 금융거래증빙
  - 양도비: (현행) 사실상 지출비용 → (개정) 적격증빙, 금융거래증빙

■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 변경(상증령 §13)**

\*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의 이사 현원 1/5 이하, 외부회계 감사 등 일정요건 충족하는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없는 성실공익법인은 주식보유 비율 상향(5% → 10%)

- (현행) 기획재정부에서 성실공익법인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을 받아 5년마다 확인
- (개정)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확인기관을 국세청으로 변경

■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개소령 §2의2)**

**법률(§1) 개정내용**

- ◇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1kg당 6원 상향조정(30 → 36원/kg)

구분	현행	개정
저열량탄(5,000kcal/kg 미만)	27원/kg(탄력)	33원/kg(탄력)
중열량탄(5,000kcal/kg 이상, 5,500kcal/kg 미만)	30원/kg(기본)	36원/kg(기본)
고열량탄(5,500kcal/kg 이상)	33원/kg(탄력)	39원/kg(탄력)

\* '18.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보완**

■ **분양권 양도시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소득령 §167의6)**

**법률(§104) 개정내용**

-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시 50% 세율 적용
- 다만, 무주택세대로서 일정요건(시행령에 위임) 충족시 예외 인정

- (신설) 양도 당시에 ① 다른 분양권이 없고 ② 30세 이상인 자(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자 포함)로서 무주택자는 중과 제외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되지 않는 주택범위 (소득령 §167의3, §167의4, §167의10, §167의11)**

**법률(§104) 개정내용**

-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추가과세[기본세율(6~42%)에 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는 20%p 가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중과 등에서 제외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	2주택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①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 *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즉, 해당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 이상 여부 판단)	①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 제외 주택 ②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군 소재 주택 등 *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② 장기임대주택 * 준공공임대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 (단, '18.3.31까지 등록시 5년 이상)	③ 혼인합가일부터 5년 이내, 동거봉양합가일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③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사원용주택	④ 소송 진행 중인 주택 또는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 확정판결일부터 3년 이내 양도
④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⑤ 조특법상 감면대상 미분양·신축주택 등	본문

■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강화 (종부령§3)

- **(현행)**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주택(매입임대주택 기준)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시 종부세 합산 배제(비과세)
  - **(개정)** '18.4.1일 이후에는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 \* '18.3.31일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5년 이상 임대시 합산 배제

(4) 납세편의 제고

■ 세무조사 결과통지 보완(국기령 §63의13)

법률(§81의12) 개정내용

- ◇ 세무조사 결과의 설명 의무 및 통지사항\*을 법률에 신설(기타 사항은 시행령 위임)
- \* 세무조사 결과통지시 세무조사 내용, 결정·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 **(신설)**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사유, 수정신고·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정보 등을 결과통지에 추가

■ 법인세법상 자산 감정평가기관 범위 확대 (법인령 §89)

- **(현행)** 법인세법상 자산에 대한 감정가액 평가는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만 수행
- **(개정)** 감정가액 5억원 이하 자산에 대해서는 개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도 인정

■ 하나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 인정(상증령 §49)

법률(§18) 개정내용

- ◇ 일정금액(시행령에서 규정) 이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시가로 인정

- **(현행)**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
- **(개정)**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III. 기타 개정내용

1 소득세법 시행령

■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 원천징수 대상 확대 (소득령 §207의10)

법률(§156의7) 개정내용

- ◇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인상(17% → 19%)

구분	현행	개정안
① 근로대가총액	근로자를 국내 파견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 초과	연 20억원 초과
② 업종	항공운송, 건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선박 및 수상부유 구조물 건조업, 금융업 추가

\* '18.7.1. 이후 용역대가 지급분부터 적용

■ 배당소득 과세대상인 파생결합증권 범위 (소득령 §26의3)

법률(§17) 개정내용

◇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이익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명시(파생결합증권·사채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  
\* 금 또는 은의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실버뱅킹 포함

■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대상의 범위 (소득령 §37의2)

법률(§19) 개정내용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시행령에 위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추가

- (신설)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영제62조 제2항 제1호 규정 자산)

■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 (소득령 §68, §143, 법인령 §30)

- ① 추계과세시 감가상각 의제 적용(소득령 §68, 법인령 §30)
- (현행)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

- (개정) 가장 신고자 등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추계로 신고·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 의제 적용

②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소득령 §143)

- (현행)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과세 가능

\* (농업, 도소매업 등) 6천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등) 3천 6백만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2천 4백만원

\*\*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

- (개정) 증빙 수취 및 가장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과세('19년 시행)

\* (농업,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등)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7천 5백만원

\*\* 주요비용(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은 적격증빙만 인정하고, 기타 비용은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

2 법인세법 시행령

■ 업무용승용차 비용 손금산입 제도 개선 (법인령 §50의2)

- (현행) '16년의 경우 일부 기간만 업무용승용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기간의 업무용승용차 비용은 손금 산입
- (개정) '17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범위(법인령 §23)

**법률(§21의2) 개정내용**

◇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신설) 다음 법률\*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손금불산입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간주 규정 합리화(법인령 §56)

- (현행)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고정자산(부동산, 의료기기 등)을 취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적립 후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 미사용시 익금산입
- (개정) 고정자산 등을 취득한 후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적격합병·분할시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법인령 §80의2)

- (현행) 적격합병·분할 등으로 승계받은 자산을 다시 적격구조조정, 회생절차 등에 따라 50% 이상 처분시 과세이연\* 받은 법인세 전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

\* 법인이 적격합병·분할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 (개정) 원활한 2차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 50% 이상 처분시에도 전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자율협약 등

■ 공익법인 및 기부금단체 제도 합리화

- ① 상중세법상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 범위 일치(법인령 §36, 상중령 §12)

- (현행) 상중세법상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가 달라 기부시 세제 지원\*이 일부 불일치

\*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법인(손금산입), 기부받는 공익법인(증여세 비과세)

- (개정) 기부금단체간 형평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의 범위를 기부금단체 기준으로 정비(19년 시행)

\* (경과조치) '18.12.31일 현재 공익법인은 '20.12.31일까지 공익법인 지위 유지

- ②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적용대상 확대(법인령 §36, 국기령 §66)

- (현행) 법인령에 열거된 일부 법인\*은 별도 심사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며, 의무이행\*\*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정부인허가 받은 학술·장학·환경단체 등

\*\* 수입의 공익목적사용, 기부금 내역 공개, 의무이행 점검 보고서 제출 등

- (개정) 사회복지·학교·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주기적(매2년) 의무이행 점검, 의무위반시 불성실기부금단체로 명단공개(19년 시행)

-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는 심사를 거쳐 지정고시

\* (경과조치) '17.12.31일 이전 설립 단체는 '20.12.31일까지  
 지 현재대로 인정

③ 기부금단체의 공익수행 등 의무이행 요건 강화  
 (법인령 §36)

- (현행) 기부금단체는 공익사업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의무 위반시 지정취소 및 재지정 (3년간) 제한

\* 공익목적 사업 수행,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 (개정)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사항에 외부회계 감사,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사용의무\*를 추가하여 지정취소 사유 확대('19년 시행)

\* 현재도 기부금단체의 상증세법상 의무이행사항이며, 위반 시 가산세 부과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상속·증여세 결정기한 연장(상증령 §78)

- (현행)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액 결정
- (개정)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로 결정기한 3개월 연장

■ 상속세 물납요건 강화(상증령 §73, §74)

- (현행)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물납 허용

\* 물납 한도=상속세 납부세액× $\frac{\text{부동산+유가증권 가액}}{\text{총상속재산가액}}$

- (개정)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금융부채 차감), 상장주식·채권으로 상속세 납부 가능한 경우 물납제의 되도록 물납 한도 축소\*

\* 물납 한도=MIN[①, ②]

① 현행 물납 한도

② 상속세 납부세액-순금융재산 가액-상장주식·채권가액

사례

상속세 납부세액 30억원, 상속재산 100억원(부동산 80억원, 금융재산 20억원)

(현행) 24억원\*까지 물납 가능

(개정) 10억원\*\*까지 물납 가능

\* 30억원×[부동산 80억원/상속재산 100억원]=24억원

\*\* 30억원-금융재산 20억원=10억원

- 비상장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납 불허

\*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상속세액-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

사례

상속세 납부세액: 20억원,

상속재산: 토지 40억원(저당권 1억원 설정), 비상장주식 20억원

(현행) 국유재산법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물납 불가능하여 비상장주식 물납

(개정) 저당권 설정액을 제외한 토지가액 39억원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여 비상장주식 물납 불허

####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수탁자의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관련 인적책임 배제(국기령§66, 국징령§2 등)

##### 법률(§3의2 등) 개정내용

◇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하되, 위탁자 체납시 신탁재산을 한도로 수탁자가 보충적으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

- (신설) 수탁자가 보충적 물적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미이행에 따른 인적책임\*은 배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관허사업 제한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 (현행) 국가·지자체가 직접 공급하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개정) 국가·지자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사업을 하는 단체(국가·지자체가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46)

- (신설) 국가·지자체가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 이전가격 사전승인 신청자료 사용범위 확대(국조령 §9)

- (현행)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이전가격 사전승인 신청자료는 사전승인심사 및 사후관리 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
- (개정)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국과 정보교환 허용

####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영세개인사업자의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조특령 §99의5)

##### 법률(§99의5) 개정내용

◇ '17.12.31. 이전 폐업하여 '18.1.1.~'18.12.31.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의 체납액 면제제도 신설(적용 대상 시행령 위임)

구분	개정안
수입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 기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미달자</li> <li>*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부동산업 등 5억원</li> </ul>
소멸대상 체납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 평가금액의 140%를 초과하는 체납액 추가</li> </ul>

-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요건(조특령 §109의2)

- \* '14.4.1~'15.3.31까지 시행 후, '18년부터 1년간 다시 시행
- (과거) 전년 동기(분기) 대비 숙박요금 인상률이 5% 이하인 관광호텔

- **(개정)**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분기) 대비 숙박요금 인상 요건을 10% 이하로 요건 완화

## 7 국세징수법 시행령

### ■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대상자 확대(국징령 §28의2)

- **(현행)** 지방국세청장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체납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가능
- **(개정)** 체납처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체납발생 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독촉장·납부최고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허용

## 8 국세기본법 시행령

### ■ 탈세 제보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 및 지급구간 세분화(국기령 §65의4)

(단위: %)

현행		개정안	
탈루세액	지급률	탈루세액	지급률
5천만~5억원	15	5천만~5억원	20
5억원~20억원	10	5억원~20억원	15
20억원~	5	20억원~30억원	10
		30억원 ~	5

### ■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국기령 §63의16)

#### 법률(§81의18) 개정내용

◇ 세무서·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를 위해 국세청(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위원 구성은 시행령에 위임)

- **(신설)**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하고, 기재부장관 및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변호사회 등이 추천하는 민간위원(15인)\*으로 구성  
\* 기재부장관 추천 5인,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변호사회 추천 각 2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4인

## 9 세무사법 시행령

### ■ 세무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확대(세무사령 §16)

- **(현행)** 기재부·법제처·국세청 공무원(5명)과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변호사회 지명 각 1명, 민간 조세전문가(1명)로 구성
- **(개정)**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조세전문가 2명으로 확대

## 10 관세법 시행령

###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산정\*시 이의제기 기간 설정(관세령 §27)

- \* 당해물품 수입 후 판매가격에서 이윤·경비, 국내 운임, 조세공과금을 차감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 **(현행)** 납세자는 과세가격 산정시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 수입물품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에 대해 기간의 제약 없이 이의제기 가능

- **(개정)** 과세가격의 조기 확정을 위하여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설정(30일)

#### ■ 원상태 재수출 자가사용물품 환급청구권 기산일 명확화(관세령 §7)

- **(신설)**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 반송 시 관세환급 청구권\* 기산일을 수출신고 수리일 또는 운송수단(항공기, 선박 등) 적재일로 명확화  
\* 관세환급 청구권은 행사할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 가능

####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취소 사유 신설(관세령 §184)

- \* 일정 요건 충족시 운영인이 자율적으로 보세화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신설)** 보세사 채용 등 지정요건 불충족, 관세납부 능력 미비, 보세사 아닌 자의 직무수행, 자율관리 역량 부족 등의 경우 지정취소

### 11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특례법 시행령

#### ■ 수출용원재료 환급을 위한 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대상 명확화(환특령 §14)

- **(신설)** 정액 환급률표\*의 적용 또는 비적용 승인에 대해 그 승인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하도록 명확화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수출물품별로 환급액을 정해 놓은 것

# 2018년 경제정책방향

\* 본 자료는 2017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 일자리 · 소득주도 성장

### 1. 청년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갈 것입니다

- 청년 일자리 확대
  -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 각종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 · 신산업 중심 지원방향으로 개편
    - 고용유발형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애로 사항 신속 지원(정부합동지원반 구성)
    -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도입(1천명에게 3년간 취업보장)



- 청년일자리정책 제작소운영  
(청년 참여단 100명~200명 등이 일자리 정책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 ·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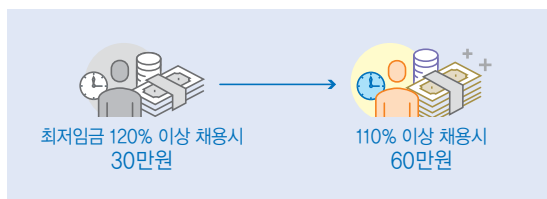
- 민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및 세제 지원 강화

### <예산>

- '18년 청년 일자리 예산 대폭 확대  
'18년 청년 일자리 예산 증가율 14.7% > '18년 예산 증가율 7.1%
- 일자리 예산을 1/4분기 중 역대 최고수준 집행 ('18년 34.5% 이상)
-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확대 ('17년 681억원, 9.5만명 → '18년 1,728억원, 19만명)
- '중소기업 추가고용(2+1) 장려금' 지원 요건 대폭 개선

연도	현행	개선
① 대상	233개 성장유망 업종	100개 이상 업종 추가
② 방식	3.6.9인 고용시에만 지원	인원비례 지원 (예: 4인 고용시 1.33명분)
③ 한도	기업당 최대3명	기업 현원의 최대30%

- 중견기업 시간선택제 채용시 인건비 지원 한시 확대



〈세제〉

- 고용증대세제 신설, 청년 정규직 고용시 지원금액 우대

고용증대세제세액공제금액

(단위: 1인당, 만원)

	중견기업(2년간)		중소기업(2년간)	대기업(1년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1,400)	770(1,540)	450(900)	
청년 정규직	1,000(2,000)	1,100(2,200)	700(1,400)	300(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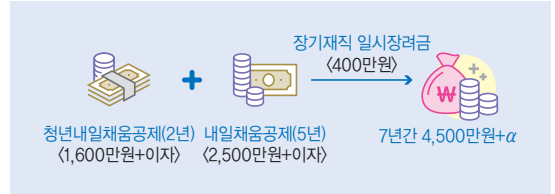
- 청년 고용시 사회보험료 100%세액공제 기간을 1년 → 2년으로 확대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상당액 × 100%

- 청년 중소기업 창업시 5년간 법인세 · 소득세 감면 (초기 3년 75%+이후 2년 50%)
  -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 공무원 · 공공기관 채용확대 · 선발기간 단축 · 조기발령 추진
    - 청년 적합 일자리 사업 (글로벌 청년 리더 등 17개, 2.6만명의 청년우대선발 비율 확대(최소 50% → 70%))
    - 청년 인력 수요가 높은 사업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10개, 4.5만명)에서 청년 20% 우대 선발
  - 청년해외취업 지원확대
    - 韓商 · 해외진출 기업 등과 연계한 인턴십 활성화
    - 한 · 일 대학간 3+1 제도(국내대학 3년+일본 대학 1년 일본 취업) 실시, K-Move 스쿨 집중 지원 등을 통해 일본 · 아세안 1만명 취업 지원

■ 자산형성 · 주거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에 일시장려금 추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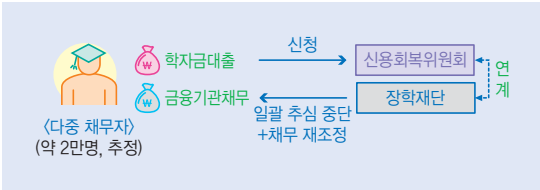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도입 (연간 600만원 한도, 금리 최고3.3% 적용,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공적임대주택 25만실 공급 (공공임대 13만호, 공공지원 12만실)
  - 세어하우스(5만실) 등 청년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공급
-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대학가 주변 임대주택을 청년 기숙사로 공급(18년 시범사업 200실)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노후주택 수리 개선 비용을 저리(1.5%) 용자지원하고, 대학이 추천하는 청년 학생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공급

- 학자금대출 연체자 중 금융기관 채무도 보유한 다중채무자(약 2만명, 추정)에 대해 금융채무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채무조정 추진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시 금융회사 추심은 중단되나, 장학재단은 예외  
 (개선) 신용회복위원회에만 신청하더라도 장학재단도 연계하여 추심 중단 및 채무조정 추진



## II. 여성 |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22년 55.3%)까지 높이겠습니다

### ■ 육아 부담 경감

-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한 육아 휴직(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추진('19년)

(현행)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 (개선안)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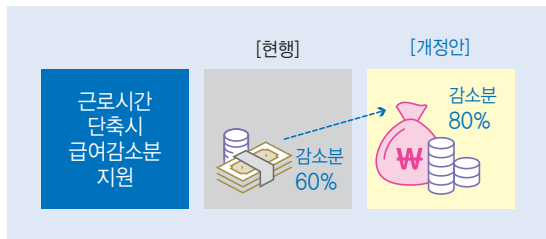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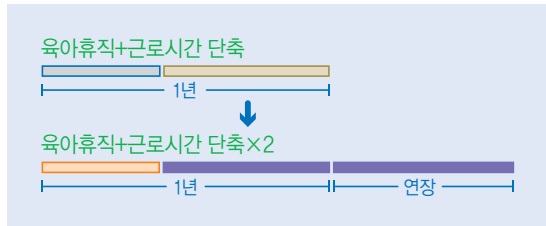
-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상생형 공동 어린이집 확대
  -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공동 운영 어린이집 신설, 은행·중소기업 공동 어린이집 모델 전파 등
-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한 '공영형 사립 유치원' 도입

학급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면서, 저소득층 우선입학, 법인화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공공성 확보

- 이동수당(0세~5세, 월 10만원 '18.91월~) 지급

### ■ 경력 단절 방지

- 육아기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 및 급여감소분 80% 보전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세제지원 확대 (대상) 중소 → 중소+중견, (공제율) 10% → 중소 30%/중견 15%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복직 후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육아휴직 복직 인원 1인당 일정금액 세액공제)
- 취업성공패키지 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특화과정 도입

### ■ 성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조성

- 임금·승진·퇴직·해고 등에서 성차별적 처우 시 처벌 강화  
시정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최대 3배) 도입

### III. 중장년·어르신 | 자립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 재취업 촉진

-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5,000명 확대  
(’17년 2만명 → ’18년 2,5만명)
- 사회공헌 일자리 약 2,000명 확대  
(’17년 4,500명 → ’18년 6,470명)
- 60세 이상 고용안정지원금 6만원 인상  
(분기당 18만원, 17년 일몰 → 분기당 24만원, ’20년까지)

#### ■ 어르신 일자리 재정사업 확대

- 지원대상 7.7만명 확대, 지원단가 5만원 인상  
(지원대상 43.7만명 → 51.4만명, 지원단가 22만원 → 27만원)

#### ■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 강화

-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수혜대상 노인 약 500만명, ’18.9월 시행)
- 국민연금 본인·유족연금 중복수령 수급액 확대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시, 배우자가 본인연금을 받고 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액 지급비율을 현행 30% → 50%로 상향 검토(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

-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現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선택가능)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납부된 적립금은 통합관리하고, 가입사업주 대상 재정지원 병행)
- 연금펀드·신탁 등에서 발생한 주식 매매손익 비교

(현행) 연금펀드·신탁 등에서 발생한 매매손익에 대해 연금소득세 과세(3.3%~5.5%) → (개선) 일반형 펀드 등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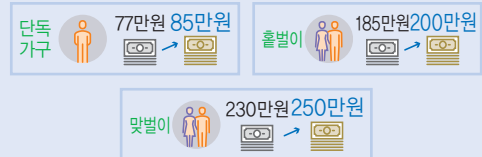
-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5만호 공급

문턱 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Barrier-Free) 설계를 적용

### IV. 저소득·취약계층 | 생활안정을 적극 돕겠습니다

#### ■ 가계소득 증대

-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 인상



- 생계급여 확대

(4인 가구 기준, 최대 134만원 → 136만원)

(단위: 4인가구 기준)



- 최저임금 인상 및 사회보험료 지원

(’17년 6,470원 → ’18년 7,530원)

- 취약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소액체당금 지원 요건 간소화, 신속지원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중 법원 확정 판결(통상 130일 소요) 요건을 폐지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신속한 체당금 지급 지원(現 7개월 → 2개월)

-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 추진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 및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 주거취약 계층 지원 확대
  - 저소득·취약계층 대상으로 임대주택 41만호(공공임대 27만호, 공공지원 14만호)공급
  - 주거급여 강화  
(20만원 → 21.3만원, 서울 1인 가구)

- 사회안전망 확충
  -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50% → 60%), 지급기한 연장(30일 이상)
  - 장애인 가구·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  
(장애인연금 지급액 인상(월 20.6만원 →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월 12만원 → 13만원))

- '교육희망사다리' 복원
  - 법·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기회균형 선발 확대  
(법: 정원내 5% → 7%, 의·치·한: 정원 외 5% 신설)
  - 교육급여 인상  
(年, 초등학생 4.1만원 → 11.6만원  
중·고등학생 9.5만원 → 16.2만원)

#### IV. 생계비(주거·의료·교육·교통·통신)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주거비 경감
  - '18년 공적주택 19만호 공급

**공적주택:**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주택+공공분양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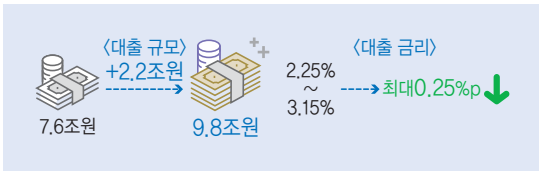
(공공지원주택: 민간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공공지원을 받아 임대료, 입주자격 등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1만호 추가 공급

노후공공청사(2만호), 대규모 유희 국유지 개발(1만호)을 통해 '22년까지 당초 2만호 → 3만호로 공급 확대

-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형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 임대주택 20만호(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부부 포함)
  - 신혼희망타운 7만호(시세 80%, 수요자 분양·임대 선택)
  - 분양주택 특별공급 확대(국민·공공 15% → 30%, 민영 10% → 20%)
- 디딤돌 대출 확대(7.6조원 → 9.8조원) 및 금리 최대 0.25%p 인하

**디딤돌 대출:** 시중금리보다 저리(2.25%~3.15%)로 서민(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 대상  
'주거안정 지원 3대 패키지' 신설(~'22년, 최대 2만호)

(연체전) ① 세일앤리스백 리츠(주택기금·LH 출자)를 통해 주택 매입·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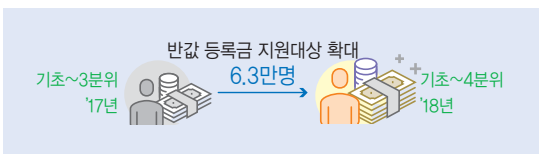
\* 리츠에 주택을 매각해 채무를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5년간 임차하여 거주 후 재매입 가능

(연체후) ② 담보권 실행유예기간 중 연체자주 채무조정 지원

③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운영

■ 교육·의료비 경감

- 반값 등록금 지원대상 확대 등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17년 8,600억원 → '18년 2조 586억원)
- MRI 등 의학적 비급여의 건보 편입, 선택진료 폐지, 2·3인용 병실 건보 적용 등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마련

- 예방치료 확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인 임플란트 부담률 완화(50% → 30%), 산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추진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개발·적용  
- 환자교육, 상담 등 관찰관리 서비스에 신설수가 지급,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 경감

■ 교통·통신비 경감

- 농촌지역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100원 택시' 도입 확대

지자체 대체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  
(('07년)18개 시군, 9억원 → ('18년) 160개 시군, 80억원)

- 광역급행버스(M-버스) 확충(노선확대: 32개 → 40여개) 및 광역급행철도 추진  
(양주·수원 노선 예비타당성 완료, 파주·삼성 노선 착공 목표)
- 저소득층 통신비 요금 감면 확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月 최대 22,500원 → 33,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月 최대 10,500원 → 21,500원
- 전국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11,000원 요금 감면시행('18년 상반기)
- 보편요금제 도입('18. 상반기, 법안 국회 제출)  
\*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 의무화

## 혁신 성장

### I. 핵심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 혁신성장을 견인·확산할 핵심 선도사업 추진에 정부 정책역량(R&D, 자금지원 등)을 집중

초연결 지능화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 확립 (공공·민간 빅데이터 전문센터 구축 등) 등
스마트공장	업종·규모별 시범공장 구축(~'22년, 50개), 스마트공장 기반기술 R&D 등
스마트팜	준비(스마트팜 보육체계 구축)/ 창업(농식품 벤처펀드 등 지원)/ 성장(R&D 바우처 등 기술지원)에 이르는 창업생태계 구축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확립(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등
에너지 신산업	공공기관 부지 등 활용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 조성(~'22년),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18년 중 5개 지역), 스마트시티 기반기술 R&D 강화('18년 77억원)
드론	실증 인프라 구축(비행시험장 확충), 시장창출 지원(드론부대 창설 등)
자율주행차	실증 인프라 확충(테스트베드(화성 K-CITY), 시범주행(판교·평창) 등)

### II.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혁신하겠습니다

- 핵심 선도사업 추진 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본격 추진
  - 4대 입법(ICT 특별법, 금융지원법, 산업융합법, 지역특구법) 완료
- 신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입법(시행령·규칙) 일괄 정비, 훈령·고시·내규·지침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림자 규제' 정비

**그림자 규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신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훈령·고시·내규·지침·가이드라인 등

- 유권해석제도(非조치의견서, No Action Letter)를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現 금융분야 적용 중)

**비조치의견서:** 新사업 진출可否 등 사업자 등 청구인의 개별적·구체적 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

- 빅데이터 활용 및 관련 신산업 육성 제도적 기반 구축
  - 비식별자료 활용·결합 등 법적 근거 명확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
  -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보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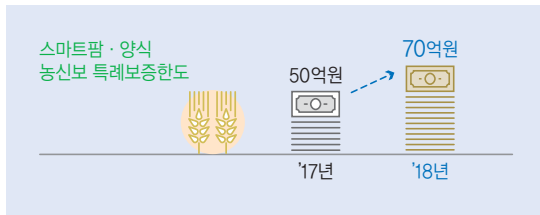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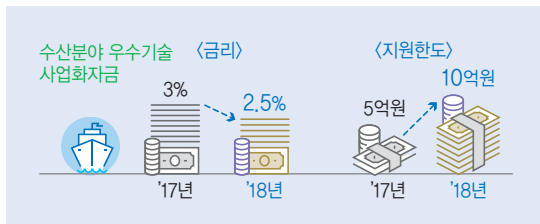
### III. 중소·벤처 혁신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창업지원 강화
  - 기술금융규모를 14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 ('07.3/4 분기 말 116.2조원 → '18년 140조원 수준, 잔액기준)
    -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더라도 미래 가치(기술력, 매출·수익전망 등)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기술 금융모델 개발, 신용·기술평가 통합
    - 지적재산권(IP) 투자펀드(800억원) 조성 및 IP 금융규모 확대('17년 3,500억원 → '18년 4,500억원)

•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

연도	현행	개선
① 재산세	창업 5년 內, 50% 감면	창업 3년 內, 100% 감면 창업 4~5년, 50% 감면
② 소득세 법인세	창업 5년 內, 50% 감면	고용증가시 추가감면 (최대 50%) 신성장서비스업 초기 3년, 75% 감면

• 농수산업 창업자금 지원 확대



• 엔젤투자시 소득공제 확대

현행	개선
~1,500만원 : 100%	~3천만원 : 100%
1,500만원~5천만원 : 50%	3천만원~5천만원 : 70%
5천만원~ : 30%	5천만원~ : 30%

■ 투자금 회수 및 재기 지원

• 코스닥 시장 활성화

(연기금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 유도, 코스닥 상장요건 개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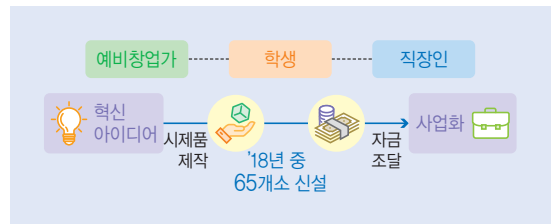
• 창업실패자 연대보증채무 조정 및 재창업 지원

- ① 금융공공기관, 민간 금융기관 보유 부실 연대 보증채권 매입
- ② 매입채권(10억원 이하)은 상환능력 심사 후 적극 채무조정
- ③ 재창업 촉진을 위한 유인장치 마련(예: 원금을 지분형태로 출자전환 방식 검토)

- 벤처 기업출자자의 법인세 체납세금 납부의무 한시적('18~'20년) 면제(최대 2억원)

■ 혁신 생태계 조성 가속화

- 메이커 스페이스(아이디어 발굴·시제품 제작·자조달 등이 일원화된 사업화 공간) 조성('18년 중 65개소 신설)



- '18년 중 약 2.7조원 내외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18년 재정 3,000억원(모태펀드 출자 2,000억원, 산은 출자 1,000억원) 투입)
- 벤처기업 지원제도 개편
  - 혁신성·성장성 높은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
  -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통합하여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 중소기업 지원 및 혁신역량 강화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244.1조원으로 확대



- 스마트공장 전용 정책자금인 '제조현장 스마트화 전용자금'(18년 3,300억원) 신설
- 중소기업간 협업 관련 「네트워크법」제정 (협업사업의 등록·관리, 지적재산권·수익분배 등 규정)
- 중소기업 협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여 창업기업 수준 지원 (기업 네트워크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투자, 경영컨설팅 등 종합 지원)

중소기업 협업전문회사: 협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협업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

IV. 산업·경제 혁신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 전방위 금융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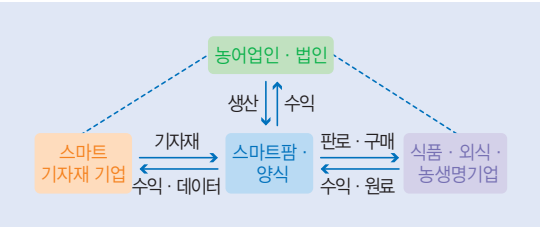
- 핀테크 기업을 '18년 250개, '22년까지 400개 육성
- 새로운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 공동 본인인증서비스 확대 도입(금투업권 → 은행·보험권)

공동 본인인증서비스: 한 번의 본인인증만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본인인증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서비스

-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내계좌 한눈에") 등 금융권으로 확대 제공
- 금융 진입규제를 개편하여 혁신적 금융사업자 출현 유도 (인가업무 단위 개편, 합리적 요건 정비, 인가 절차 투명성 제고 등)

■ 농축수산업 혁신

- 스마트 팜·양식과 연관산업간 동반성장형 영농모델 구축
  - 혁신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계획'(5년간 4개소) 마련, 첨단 양식기술 확산을 위한 스마트 육상 양식 단지 조성



- 농수산 분야 기술금융 체계 전면 적용('20년 10조원 공급 목표)

농수산업 전문기관 기술평가가 은행 기술신용대출에 활용되는 체계 구축

-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촘촘한 창업지원 체계 구축
  - 초창기 기업·혁신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농식품벤처펀드·수산펀드, 혁신모험펀드 공동투자('18년 400억원, 3년간 1,200억원)

-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기업에 대해 농신보 보증비율 상향(80%→90%)

■ 사회·문화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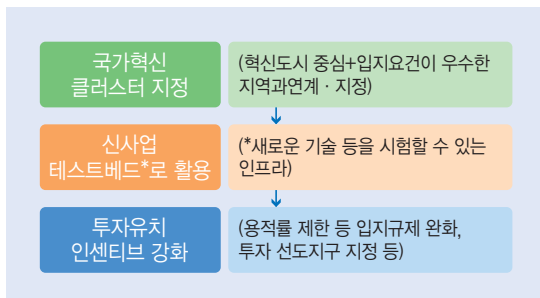
(문화)	게임·출판 등 부문별 펀드 조성(총 1천억원 이상), VR 종합지원센터 조성,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관광)	관광산업 육성펀드 확대 ('17년 270억원 → '22년까지 1,500억원), 관광서비스 기업 지원('18년 80개) 등
(교육)	실감형 디지털교과서 개발·적용(50종), 대학창업펀드(150억원) 확대 등
(환경)	환경산업전문펀드 조성('17년~'18년, 750억원), 환경산업육성 융자지원('18년, 455억원) 등
(보건)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신설, 공공기관 보유 빅데이터를 공공목적으로 활용 등

■ ICT 등 新기술 기반의 서비스업 혁신

- (스마트홈) 스마트 가전기기 개발('18년 IoT 가전 R&D 20억원) 등
- (헬스케어) 개인별 암 최적 진단·치료법 개발
- (공유경제) 유상 카풀 서비스 운영기준 및 택시·카풀업계간 공존방안 마련(3월)

■ 국가혁신·산업거점 클러스터 육성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정·육성
- 산업단지를 산업거점 클러스터로 육성 (산학연 R&D 협의체('17년 92개 → '18년 100개), 산학융합지구 확대 등)



■ 주력업종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 조선·해운·자동차 등 업종별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1/4 분기)
  - (조선) 국내화주·선사의 고부가 선박(LNG 추진선 등) 발주 지원 등
  - (해운) 친환경 선박 대체 보조금 제도 시행 등
  - (자동차) 전기차 구매 지원(개소세 감면 확대, 200만원 → 300만원) 등 미래차 경쟁력 강화
- 신 기업구조조정 방향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신속히 추진
  - '사전부실예방·경쟁력 제고, 시장중심, 산업·금융측면 균형있게 고려'라는 3대원칙 유지

공정 경제

I.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및 소비자 권리·피해구제 강화
  - 소비자 보호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집행 체계 개편
    - 과징금 부과기준 상한 2배 상향, 사인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가맹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상의 전속고발제 폐지 추진

사인 금지청구제: 불공정행위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중단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

- 4대 분야(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갑을관계 개혁
- 소액·다수 피해 가능성이 높은 담합 등에 집단 소송제 도입,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징벌배상제 시행(4월)

■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지배구조 확립

- 일감몰아주기 근절 (신고포상금제,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
- 주주의결권 행사 확대 및 이사·감사의 책임성 강화
- 스투어드십 코드 적극 도입·확산 (국민연금('18년 하반기)에 우선 도입하고 주요 연기금 도입 추진('19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관 → 적극적 주주권 행사 부담 완화, 일정요건 충족시 감사인 지정 신청 허용 검토

■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 등 골목상권 보호

-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방안 마련 및 소공인 특화 자금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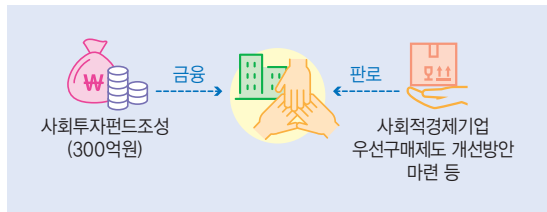


-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상권주체간 상생협약(임대료 인상 자제, 장기 임대 보장등)을 체결한 상권구역을 지정·지원하기 위한 「지역상권법」 제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現 5년)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現 90%)에 관한 특례 적용, 상권구역 상생발전을 위한 보조·용자 지원 등 규정

■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기본계획수립('18. 상반기)
- 사회적경제 관련 금융 등 핵심 인프라 지속 확충



II. 공공부문에서 공정경제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 국가균형발전·재정분권

- 지역별 특화 사업 중점 지원, 계획계약 제도 도입 검토

계획계약 제도: 시·도가 균형발전 사업의 내용·재원배분 등에 대해 중앙부처와 계약을 체결하면, 중앙부처는 필요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

-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중앙-지방간 기능조정 등을 포함한 「재정분권 종합대책」 마련(~2월)



#### ■ 공평과세 실현

- 공평과세 ·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

#### ■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 구현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 채용비리 혐의자 수사 · 감사 의뢰, 지급률 하향조정,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등 제도개선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1단계) 사회적 가치 중시 등 평가체계 개편('17년 말)

(2단계) 규제최소화 및 직무중심 보수체계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18년 말)

# 재정포럼

2018년 1월호 통권 제259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책임전문원)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 월간 재정포럼

2018년 1월 15일 발행 / 제22권 제1호(통권 제259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 414-2130~2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주)상일 E&P TEL: (02) 2269-6770

■ 인쇄 / (주)상일 E&P TEL: (02) 2269-6770

##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 414-2114
- FAX: (044) 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식정보팀

###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 구독료 납부방법

-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မ်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